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4 여름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정정길 cgchung@krei.re.kr

Tel. 02-3299-4368

송효원 xiaoyuan85@krei.re.kr

Tel. 02-3299-4139

중국농업동향

2014·여름(제7권 제2호)

Contents

농업정책 브리핑

2014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37

가격 동향 / 48

무역 동향 / 86

식량 수급 동향 / 121

양념채소시장 동향 / 130

정책자료

농촌개혁 심화, 식량생산 지원,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2014년 국가 정책 조치 / 141

국무원의 “삼농”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관한 의견 / 165

중국의 2013년 전국 농민공 실태 / 175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187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197



농업정책 브리핑

2014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4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2014년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업무 수행 방안>의 발표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 농업부(農業部辦公廳)는 2014년 4월 11일 《농업부의 2014년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업무 수행 방안(農業部2014年為農民辦實事工作方案)》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였음.
- <농업부의 2014년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2014년 제4차 농업부 상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발간하여 배포함. 말은 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시행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자원 및 역량의 배분과 관련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업무 추진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함.
- 농업부의 2014년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업무 수행 방안
 1. 농민에게 정책, 출판물, 정보 제공
 - － 사업 내용 : 2014년 중앙1호 문건 내에 강농(強農)·혜농(惠農)·부농(富農)과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중서부 지역의 주요 행정 촌, 동부지역의 주요 식량 생산 현 및 일부 지역의 주요 식량생산 농가, 농업과학기술 시범농가에게 총 30만 부의 <농민일보(農民日報)>를 제공하도록 함.
 2. 전업농(職業農民) 백만 명 양성 사업 전개
 - － 사업 내용 : “생산경영형, 전문기능형, 사회서비스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서로 협동하는 전업농 백만 명을 양성함. 농업부 농촌실용인재 훈련기지 200개

및 각 성의 훈련기지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총 117개의 훈련반(培训班)을 만들고, 농촌 지부위원회(支委会) 및 촌민위원회(村委会)의 구성원, 대형 식량생산농가, 소형 가족농장의 농장주, 농민전업합작사의 책임자, 대학생 촌민위원회 주임(村官) 등 농촌실용인재 리더 11,700명에 대해 시범훈련을 실시함.

- 시행 방식 : 햇빛프로젝트(阳光工程)¹⁾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1~2개의 성(省)을 선정하여 성 전체에서, 그리고 한 무리(一批)의 현급 시(地级市)를 선정하여 시 전체에서, 그리고 전업농 양성 시범사업 현 300개에서 전업농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함. 농업부와 재정부는 이전지급 방식을 통해 각 성 재정부서에 훈련자금을 지급하고, 각 지방의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의 임무 및 특성에 맞추어 프로젝트 시행 현 및 프로젝트 시행 기관에게 자금을 지급함.

3. 중국 전역에 걸쳐 300개의 일촌일품(一村一品) 시범마을을 구축한다.

- 사업 내용 : 중국 전역에 걸쳐 주도산업이 뚜렷하고,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고,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며, 농민 소득증대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촌일품 시범마을 300개를 새롭게 구축함. 이와 관련된 홍보 설명회를 강화하여 일촌일품 마을의 지명도 및 영향력을 높여 각 지역의 일촌일품 사업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농민 취업 및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함.
- 시행 방식 : 각 지역별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범마을의 우수 특산품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함. 이와 동시에 주요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시범사업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마을들이 일촌일품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전국 일촌일품 시범마을의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역별로 업무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일촌일품 사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확대함.

1) 주로 식량주산지, 노동력 주요 수출지역, 빈곤지역 및 혁명원로거주지에서 농촌노동력을 비농업 영역에 취업시키기 전에 실시하는 직업기능훈련시범프로젝트임.

◆ 2014년 농산물 산지 일차가공 시행 사업에 관한 통지

○ 농업부 재무국(財務司)은 2014년 4월 18일 《2014년 농산물 산지 일차가공 시행 사업에 관한 통지 農業部辦公廳財政部辦公廳關於做好2014年農產品產地初加工實施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중국 농산물 산지 일차가공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후의 손실을 감소시키며, 균형적인 시장공급 및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재정은 “농업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및 기술 보급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산지에서의 일차가공 시설 구축을 지원함. 그리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사항을 통지함.

1. 실시 원칙

“공급 증가, 출하 균형, 가격 안정, 품질 제고, 가공 보증, 소득증대 촉진”이라는 목표를 근간으로 하여 주요 농산품의 저장, 신선도 유지, 건조 등과 관련된 일차가공 시설 건설 추진을 가속화함.

- (1) 중점 지원 대상 : 감자 주산지를 주요 대상으로 삼되, 과일과 채소 산지를 함께 고려함.
- (2) 농민 위주의 건설. 정부 부처는 자금 지원, 기술지도 및 훈련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농민전업합작사 및 농가의 자금 및 노동력 출자를 독려함으로써 일차가공시설의 자주적 건설을 도모함.
- (3) 공개적이고 규범적인 시행. 프로젝트 관리 추진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중에게 더욱 편리하도록 함.

2. 실시 내용

- (1) 지원 범위 : 2014년에 새롭게 건설되는 감자 저장용 토굴, 과일과 야채 신선도 유지 창고 및 건조시설
- (2) 지원 대상 : 프로젝트 실시를 담당하는 농민전업합작사와 농가. 전업합작사당 지원 수량은 시설 5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농가당 지원 수량은

시설 2개를 초과해서는 안 됨.

- (3) 지원 기준 : 목록에 포함된 다양한 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정액 보조금을 중앙재정 자금으로 지급함.

3. 감독 관리 기준

- (1) 자금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 (2) 프로젝트의 합리적 기획
- (3) 기술 서비스 강화
- (4) 홍보와 지도 강화

◆ “삼농”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 국무원 판공청(國務院辦公廳)은 2014년 4월 20일 《 “삼농”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관한 의견 國務院辦公廳關於金融服務“三農”發展的若干意見 》 (국판발國辦發[2014]17號)을 발표함.
- 농촌 금융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문이며, “삼농”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임. 최근 몇 년간, 중국 농촌 금융은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으며,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다양한 단계를 갖춘 농촌 금융시스템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의 수준 또한 제고 되었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금융은 여전히 중국 전체 금융시스템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임.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와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會)의 정신 및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실시하고, 농업의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규모화 경영 및 도농 일체화 발전 등 새로운 추세와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농촌 금융서비스의 능력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농촌 금융과 “삼농”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농촌 금융시스템의 메커니즘 개혁을 강화
 - － 부문별로 금융기관 개혁 추진. 현(縣) 내 법인(法人) 지위를 안정화하고, 시스템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삼농”에 대한 서비스를 견지한다는 세 가지 전제 하에, 농촌 소비자신용조합(农村信用社)의 개혁을 심화하고, 농촌상업은행을 적절히 편성 조직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시장주체를 양성함으로써 농업 지원의 핵심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함. 농촌소비자신용조합 관리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하고, 성급 연합농업생산협동조합(省联社)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관리를 줄이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화로운 지도를 최적화하고, “삼농”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도록 함. 농업발전은행 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적 시행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정책성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성 업무의 범위 및 감독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자본금을 확충하고, 보다 완벽한 관리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촌 개발 및 농촌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장기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대형 은행들이 농촌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삼농”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함. 금융기관들은 2, 3선 중소도시까지 서비스 센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보다 농촌에 가까워지고 또 농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촌 금융 서비스 주체 다양화. 농업 산업투자기금, 농업 사모펀드 투자기금, 농업 과학기술창업투자기금 등의 구축을 장려하고, 특히 “삼농”에 대한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삼는 금융 리스회사의 조직을 지원함. 정부 출자를 위주로 하여 삼농과 관련된 담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현금 융자성 담보기구 및 담보기금의 구축을 장려하고, 기타 융자성 담보기구들 역시 농업 생산경영주체를 위해 융자 담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소액대출회사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긍정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융자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용조회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관리 정책을 개선하도록 함.
- 농촌합작금융의 발전 규범화. 회원제(社员制), 폐쇄성, 민주적 관리 등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 및 대부금 대출 금지, 고정수익의 비지급 등을 전제로 하는 농업합작금융의 발전을 도모함. 농민합작사(农民合作社)의 신용합작 업무를 지원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시범실시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관리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함.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합작사 및 공급합작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합작금융조직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함.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합작성 촌(村)급 융자 담보 기금을 구축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농촌에 널리 이익이 되는 금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현금 금융기관의 지점망 배치를 최적화 함. 대형 상업은행의 현금 지점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각 지점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 총량 규제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농업발전은행(农业发展银行)의 지점 배치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되, 주로 중서부 지역 및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지점이 새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농촌 기초금융서비스가 전국 모든 곳에서 제공 될 수 있도록 함. 보다 재정 지원정책을 완비하고 원가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기초로 하여, 벽지 향진 지역에서도 기초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특정 조건을 갖춘 행정촌에서는 금융서비스 “춘춘통(村村通)”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실시간 서비스, 셀프서비스단말기(自助服务终端) 등을 비롯하여 예금 인출, 송금, 계좌이체 서비스 및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통해 간단하고 이용이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금융 서비스를 통한 빈민구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정책 금융, 상업 금융 및 상호 금융의 장점들을 하나로 모아 농민공, 농촌 부녀자,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실히 개선함.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이자 지원 및 마이너스 대출 정책을 보다 완벽하게 하고, 농촌 빈곤지역에서 금융기관이 빈민구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 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함.

○ 농업 관련 자금 투입 확대 유도

- 자금 원천 확장. 농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투입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춘진은행 등에 대해 소액 재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삼농”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 발전 지원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함.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삼농”과 관련된 전문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업과 관련된 자산 증권화에 대한 시범실시 사업을 전개함.
- 정책 지도 강화. 현금 은행업 법인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이용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지의 정책을 적용하도록 함. 상업은행에서 새로 구축한 현금 지점망의 신용대출 제공과 관련하여 허가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감독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현금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함.

- 신용대출 메커니즘 완비. 농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업은행의 독자적인 농촌 관련 신용대출 계획을 장려하고, 대출 심사 및 비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최적화함.

○ 농촌 금융상품 및 서비스 방식 혁신

- 농촌금융상품 혁신. “1회심사결정(一次核定), 용도에 따른 대출(随用随贷), 잔액 통제, 전환 사용, 동태적 조정”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농가 신용대출 모델을 개발, 추진하고 대출 한도액, 대출의 진척 상황 및 상환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도록 함. 농촌 지역에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 기관 및 신용대출공장(信贷工厂)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 보급하도록 함.
- 농촌 저당 및 담보 방식 혁신.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용한 담보대출 시범실시에 관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비준을 거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서비스 방식 개선. 금융 서비스 관련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알기 쉬운 계약문서를 보급하는 동시에 심사 비준 공정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규범화하도록 함.

○ 주요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농업경영방식 혁신을 지원함. 금융 상품, 이자율, 상환기한, 대출한도, 절차, 리스크 통제 등의 측면에서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규모 가족농장, 대규모농장, 농민합작사 및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 등 새로운 농업 경영주체들의 금융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함.
- 농업 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지원함. 경지정리, 농지수리시설 건설, 곡물류·면화·유지류·설탕 등 4대 농작물의 생산성 제고, 축산업계의 표준화 사육, 수산업계의 표준화 양식, 우량종자의 생산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역량을 강화함.
- 농업 사회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함. 농산물 산지도매시장, 소매시장, 창고 및 물류시설, 프랜차이즈 등 관련 서비스 시설 구축을 지원함.
-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지원함. 녹색금융(绿色金融)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절수형 농업, 순환형 농업, 그리고 생태친화적 농업의 발전을 적극 촉진함.

- 신형 도시화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함. 신형 도시화 발전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정책성 금융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 개발 관련 융자 루트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

○ 농업보험의 범위와 강도 확장

- 농업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국가 경제, 국민 생활, 국가 식량안보 등과 관련된 주요 농작물에 대한 보험, 주요 축산물에 대한 보험, 주요 “장바구니(菜篮子)” 품종에 대한 보험, 그리고 산림(森林)에 대한 보험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 농업 보험 상품의 혁신. 주요 곡물, 돼지 및 채소 가격에 대한 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지역 특산품에 대한 보험 시범실시 사업 추진을 장려함.
- 보험료 보조 정책 개선. 주요 곡물 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중앙정부 및 성급 재정의 보조금 비율을 제고함으로써, 주요 생산지역의 현금 보험료 보조금 부담을 축소시키거나 없애도록 함.

○ 농촌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육성·발전

- 농촌 직접용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관련 기업이 다양한 단계의 자본시장에서 용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관련 기업이 중소기업 집합어음, 단기 용자권 등 비금융기업 채무용자수단의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촌 지역의 증권 선물 서비스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발전시키도록 함.

○ 농촌 금융 인프라 개선

- 농촌 신용 시스템 구축 추진. 신용 가정(信用户), 신용 마을(信用村), 신용 읍면(信用乡镇) 구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조회 홍보 교육을 강화함.
- 농촌 교역시장과 중개조직 발전. 《각종 거래소의 금융 리스크 근절 및 예방의 정리정돈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清理整顿各类交易场所切实防范金融风险的决定)》(국발 国发(2011)38호)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농촌 재산권 거

래시장을 기획, 구축하고 토지평가, 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중개조직을 적극적으로 양성함.

- 농촌 결제 서비스 환경 개선. 비현금성 결제수단 및 결제정산 시스템을 널리 보급하고, 보다 간편한 모바일 결제수단을 안정적으로 보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결제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제고하도록 함.
- 농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농촌 금융소비자 제소 통로를 원활히 하고 금융소비자 분규를 합당하게 처리함.

○ “삼농” 관련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정책지원 체계 개선.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가 엄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농촌 금융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함.
- 정책 지원 역량 강화.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운용 하는(政府引导、市场运作)” 원칙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 세수 혜택 등 각종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 특히 금융기관이 농가에 대한 소액대출, 새로운 농업경영주체에 대한 대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대출 및 주요 농산품에 대한 보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함.
- 농업 관련 융자 통계 제도 개선. 농림축수산업과 관련된 대출, 농가 대출, 농촌 소 규모 기업 대출 및 농민합작사의 대출 상황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제도를 마련함.
-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조치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삼농”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리스크 예방. 금융관리부문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함. 특히 리스크 식별, 모니터링, 평가, 조기경보 및 통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 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 각 지방, 유관 부처 및 관련 금융기관은 국무원의 일관적인 계획에 따라 “삼농” 관련 금융서비스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키우고,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2014년도 전국 레저농업(休闲农业)과 향촌관광 시범현(示范县) · 시범지점(示范点)의 건설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향진기업국(農業部鄉鎮企業局)은 2014년 5월 7일 《2014년도 전국 레저농업과 향촌 관광 시범현·시범지점의 건설 업무와 관련 통지(農業部辦公廳國家旅遊局辦公室關於開展2014年全國休閒農業與鄉村旅遊示範縣、示範點創建工作的通知)》(농기발 농企發 [2013] 1號)를 발표하였음.
- － 건설 수량 : 3년간 총 100개의 시범현과 300개의 시범지점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업부와 국가관광국에서는 2014년도에 전국 레저농업 및 향촌 관광 시범현 35개, 전국 레저농업 및 향촌 관광 시범지점 100개를 승인하기로 결정함.
 - － 서면보고 절차 :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레저농업 행정관리부서와 관광 행정주관부서에서는 공동 문서 발송의 형식으로 농업부와 국가관광국에 확정된 명단을 보고하도록 함.
 - － 서면보고 수량 :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2개 이하의 시범현, 5개 이하의 시범지점을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의 경우 1개 이하의 시범현, 2개 이하의 시범지점을 보고하도록 함.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 사항 및 절차를 엄격히 평가 결정함. 각 레저농업, 관광 행정 주관부서에서는 《생성통지》중 생성과 관련된 조건에 따라 평가 결정을 진행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엄격히 따르도록 하며, 보고 수량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함. 총괄평가를 진행함. 각 지역은 관할 구역 내 이미 인증 받은 전국 레저농업 및 향촌 관광 시범현(시범지점)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강화하고, 이미 시행된 주요 사업 및 성과, 그리고 존재하는 문제들을 종합하고, 상황을 총괄 평가하여 이를 서면보고 자료와 함께 농업부와 국가관광국으로 보고하도록 함.

◆ <농업부, 당 중앙 국무원의 “삼농” 중점사업 실시 철저 이행방안 (农业部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有关“三农”重点工作实施方案)>에 관한 통지

○ 농업부는 2014년 5월 8일 《당 중앙 국무원의 “삼농” 중점사업 실시 철저 이행 방안》(국판함(國辦函) [2014] 31호)을 발표함.

○ 중앙 1호 문건 내 정책조치 업무 구분

(1) 농업부가 앞장서서 실현시켜야 하는 임무

- “지방정부의 행정 속지 관리 및 생산경영주체의 책임 실현”, “표준화 생산, 주요 제품의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식품이력추적제도 수립 지원 및 도매시장 품질안전 검사 비용 지원 역량 강화”, “읍·면(县乡)의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품질 안전 검사 시스템 및 관리 감독 능력 구축 가속화”, “농산품 품질과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심사평가 제도 개선 및 시범 시(示范市), 시범 현(示范县) 구축 사업 전개”와 관련된 임무
- “기계화를 통한 심토 경지정리 및 농작물 대를 농경지로 환원하는 등 종합적 이용의 적극적 추진, 토양 유기물질 함유량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병해충 방지 및 통제, 병사한 가축 안전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농업지역 환경오염(面源污染) 방지 역량 강화, 효과가 뛰어난 비료와 잔류량이 적은 농약의 사용에 대한 지원, 대형 축사의 분뇨 자원화 이용, 신형 농업경영주체들의 유기비료 사용 및 농업용 비닐 및 폐비닐의 회수 등 시범사업 보급” 등과 관련된 임무
- “농업 환경과 관련된 주요 문제의 정비를 위한 종합 계획 및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편제”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천연초원지대의 초원 복원 프로젝트 실시 역량 강화, 남부 목초지 개발 이용 및 초원 자연환경 보호구역 구축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된 임무
- “조직적 지도 강화로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의 권리 확정(确权) 등록 및 증서 반포사업 시행, 농민들의 자주적 협상에 근거하여 분쟁 해결 업무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

들에 대해 권리 및 토지에 대한 확정으로 해결하거나, 권리와 주식(주권)은 확정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 권리 확정 등록 및 증서 반포 사업 경비를 지방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중앙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공상기업이 농업용지를 거래하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수립하고, 농업용지의 비농화(非农化)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재정 프로젝트 자금이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사에게 직접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고, 재정 보조금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합작사에게 넘어가 합작사가 보유·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보다 투명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자율권 보장 원칙에 근거하여 소규모 가족농장의 등록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촌 집단재산권 주주합작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민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별 농가에게 주어진 집체자산의 주식 점유, 수익, 유상탈퇴권한 및 저당·담보·상속권 등의 권리를 농민에게 부여하는 것, 그리고 농촌 재산권의 유통을 위한 교역시장을 건설하고 농촌집체 자금·자산·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체경제조직의 자산운용 관리 수준을 높여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임무

(2) 농업부가 여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 임무

- “나를 중심으로 하고, 국내 상황에 입각하여,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적절히 수입하고, 과학기술의 뒷받침을 받는 국가 식량안전 전략의 실시” 및 “곡물의 기본적 자급과 식량의 절대적 안전 확보”와 관련된 임무
- “경지 보호 마지노선(红线)을 엄격히 준수하고, 영구 기본경지(永久基本农田)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전 사회의 식량 절약 의식을 북돋우고,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량 절약 및 손실절감 설비와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시장의 가격 결정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산품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정

부 보조금 간의 연결을 끊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산물 목표가격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소비자를 돕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는 가격 차이만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의 수익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2014년 동북지역 및 내몽고 지역의 콩, 신장 지역의 면화에 대해 목표가격 보조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식량작물, 돼지 등 주요 농산물 목표가격과 관련된 보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대규모로 식량을 생산하는 경영주체의 마케팅 관련 대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삼농’ 관련 자금 투입 경로를 확장하고, 재정자금의 인도적 역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지원, 인센티브 지급, 리스크에 대한 보상,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 및 사회자금이 농업·농촌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총량은 증가시키고, 방법을 개선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업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한 시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식량 등 주요 농산품과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와 주산지 등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일부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실제 식량 파종면적 및 생산량에 따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보조금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기계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농기계의 폐기 및 갱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식량 주산지에 대한 재정 이전지급 역량을 강화하고, 식량 상품 주산지 성(省) 및 식량·유지류·돼지 주산지 현(縣)에 대한 장려 및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주요 소비지역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요 생산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식량생산기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식량비축 임무를 더욱 많이 담당하도록 하고, 식량 주요 생산지의 이익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업 관련 자금을 재정예산 편성 단계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하나로 통합조정”하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농업 관련 자금의 통합조정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기

존의 관련 경험들을 총괄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자금의 통합 조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빈민구제 특별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및 프로젝트에 대한 성·시 정부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현금 정부가 빈민구제 특별자금을 보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수리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수원지 건설 사업 및 홍수의 자원화 이용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가뭄 방지 계획을 시행하고, 수해 및 한해(旱害)에 대한 농업의 방어능력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업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강화하고,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책임제 및 전문요원제도를 실시하고, 농업 부문의 국가 과학기술 보고제도를 추진”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과학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명확히 하여 보호하고, 성과 전환 메커니즘을 새로이 개발하고, 농업 과학기술 성과의 위탁관리 센터 및 거래시장을 발전”시키고, “국가 농업과학기술원의 협동 혁신 전략 연맹(协同创新战略联盟)의 발전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을 위한 특별 파견 제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산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전국 농산품 시장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부문별 협조 메커니즘을 실현시키고,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을 핵심으로 삼고 전국의 시장을 모두 포함하는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공익성 농산품 도매시장의 구축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촌 유통시설 및 농산품 도매시장의 정보화 수준 제고 프로젝트의 추진, 농산품 전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 건설”과 관련된 임무
- “중금속으로 오염된 경지의 복원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심하게 비탈진 경지, 사막화가 심각한 경지, 주요 수원지 등에서 경작 금지를 통한 삼림 및 초원 복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베이 지역 내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깔대기 모양의 빈 동굴(漏斗)이 생겨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습지 생태계의 복구 및 경작금지를 통한 습지 복원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

관련 임무

- “도급받은 토지에 대한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유통권 및 도급경영권을 이용한 담보설정권한 등을 농민에게 부여”하고, “도급한 토지의 경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고, “관련 부처는 규범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저당 자산 처리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관련 법률 및 법규의 적절한 수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계획에 부합하고 용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농촌집체의 경영성 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주식(지분)매입 등을 허가하고, 이러한 건설용지가 국유토지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촌집체의 경영성 건설용지의 재산권 거래 및 자본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도 의견을 내놓고,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촌 택지 제도를 개선하고, 농촌 택지 분배 정책을 개선하며, 농민의 택지 수용권익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민 주택 재산권을 이용한 저당, 담보, 양도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시범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촌 택지를 포함하는 농촌 지적(地籍) 조사 및 농촌집체 건설용지 사용권의 권리 확정 등록 및 증서 반포 사업의 가속화”와 관련된 임무
-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수정하여 농민들이 토지로 인한 자본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에 대한 보상 방법을 개선하고, 수용된 집체 토지에 대한 보상 이외에 농민의 주택, 사회보험, 직업훈련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조건을 구비한 농가에게 도급된 토지의 경영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다 건전한 토지경영권 거래시장이 마련되도록 지원하며, 현·향·촌이 연계된 서비스 및 관리 네트워크를 보다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재정 지원을 통한 농민합작사의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민전업합작사 연합사(聯合社)의 발전을 지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들이 관련 보조설비를 구축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국가 연도별 건설용지 지표 가운데 일정 비율을 따로 열거”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관련 세제혜택 정책을 실현시키고 개선시킴으로써 농민협작사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촌 기상정보 및 재해예방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들에게 기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공동판매·구매협동조합이 농촌 지역에 보다 튼튼하게 자리 잡고, 농민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동구매·판매협동조합의 종합 개혁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스스로를 개조시키고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직 시스템과 서비스 구조를 개혁하고, 공동판매·구매협동조합이 농민들의 생산 및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기업이 주거래소시장(主板) 및 벤처시장(创业板)에서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장된 농업기업의 관리 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아직은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형 농업기업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에서 주식 공개상장 및 양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증권 선물 경영기관이 ‘삼농’과 관련된 특별 상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회원제, 폐쇄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입하거나 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며,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회성 농촌자금협동조직(农村资金互助组织)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지방 농촌 금융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촌 합작금융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리스크 보상기금을 마련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농촌합작금융 발전을 위한 관리 방법을 적시에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주요 식량작물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중앙정부 및 성급 정부의 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주요 생산현의 보조금 부담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없애도록 하고, 벼, 밀, 옥수수 등 3대 식량작물의 보험 적용 범위 및 리스크 보장 수준을 꾸준히

제고”하고, 보험기관들이 각자 특색을 갖춘 농산품 보험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중앙재정은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축산품 및 삼림 보험의 범위 및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식의 상호협동보험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업 보험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리스크 준비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농업 보험 중 대규모 재해에 대한 리스크 분산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시골마을 정비 계획의 편제를 가속화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관리 정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쓰레기, 오수 처리를 중점으로 삼아 시골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전통마을 보호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마을 및 민가를 보호명단에 포함시키고, 투입 및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국가장학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의 수요와 긴밀히 결합하여 농촌 직업교육 및 기능훈련을 강화”하고 “주요 고등 교육기관의 농촌 학생 입학 비율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빈민구제 개발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빈민구제 개발사업 중점현에 대한 심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빈민구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빈민구제 개발 중점사업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유동인구의 거류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거류증 보유자가 현지 거주민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농민공 역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농민합작사, 전업기술협회 등에서의 당 건설사업을 강화하고, 조직 설치를 개선하고, 종속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다양한 상황 속에서 촌민 자치의 효과적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 농촌 지역사회 건설 시범단위 및 촌민소조(村民小组)가 집체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농민소조를 기본 단위로 하는 촌민 자치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중소도시에서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효 범위를 확대하고,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관련 자원의 효과적 통합조정 및 시설의 공동구축 및 공동향유를 추진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

○ 《정부업무보고》 내 주요 업무 분업

(1) 농업부가 앞장서서 실현시켜야 하는 임무

-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모든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고, 국가 식량 안보 확보와 농민 소득 증대 촉진을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농업 현대화를 추진함. 농경지 한계선(耕地红线)을 지키고, 농경지의 품질을 제고하여 농업 종합생산성을 강화함. 곡물류의 기본적 자급(自給)과 식량의 절대적 안보를 확보함.
- 농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개선하고,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함. 농촌 토지도급관계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토지도 급경영권 및 농촌집체 건설용지 사용권 등의 확정 권리 등록 및 증서 반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급받은 토지경영권의 체계적 유통을 유도함. 또한 농촌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적절히 진행하도록 함. 가정경영을 기본으로 삼아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전업농(职业农民)을 양성함. 농업·축산업·임업 관련 국유농장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급수매합작사의 종합적 개혁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농촌개혁은 실재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농민의 자주적 의지를 중시하며,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2) 농업부가 여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 임무

-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출구조 개선 및 무역균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수출정책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통관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관련 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시업을 확대하도록 함.

- 밖으로 나가기(走出去)를 진행하면서 경쟁력 제고.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 구축을 계획하는 동시에,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경제벨트(孟中印缅经济走廊), 중국-파키스탄 경제벨트(中巴经济走廊) 개발도 함께 추진함.
- 다자간, 쌍무간 혹은 역내 개방협력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갖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미, 중-EU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 호주, 걸프협력위원회(海湾合作委员会) 등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 2)
- 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 강화. 밀, 벼 등에 대한 최저수매가를 제고하고 옥수수, 유채, 설탕 등에 대한 임시 저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농업 부문 신규 보조금이 식량 등 주요 농산품,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 주요 생산지역 등에 집중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빈민구제 개발 방식을 개선함.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태보호 및 기초 공공서비스를 강화함.
- 식품 및 약품 안전 관련 업무 강화. 생산·가공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관리 구조를 마련하고, 사회 공동관리제도 및 생산이력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기초기관에 이르기까지 식품 및 약품의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 개선하도록 함.

2) FTA라고 번역한 부분이 원문에서는 “自贸区”, 즉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Area)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상 “自由贸易协定”, 즉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가 맞기에 이에 맞춰 수정, 번역하였음

◆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³⁾

□ 개요

- 중국은 올해 《식품안전법(수정초안)(食品安全法(修訂草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거나 식품안전 중점업무를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한 정책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음.
- － 《식품안전법(수정초안)》은 2013년 5월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법률 수정을 언급한 이후 올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 2일부터 수정초안의 내용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곧 정식으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측됨.
- － 국무원은 《2014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안배(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2014年食品安全重點工作安排的通告)》를 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식품안전문제 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 내용을 발표하였음.
- － 농업부 역시 《농산물 품질안전검사체계 건설 및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農業部關於加強農產品質量安全檢驗檢測體系建設與管理的意見)》을 발표하고 농산물 품질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식품안전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식품안전 문제가 국가경제발전과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음.
- － 식품안전 문제는 일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폭리를 추구하기 위해 식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유독·유해한 비식품원료나 국가에서 금지한 식품첨가제의 사용, 유해한 식품포장재료의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서 변질된 식품을 판매하는

3) 본 내용은 國務院(2014.5), 《食品安全法(修訂草案)》; 國務院(2014.5),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2014年食品安全重點工作安排的通告》; 農業部(2014.6), 《農業部關於加強農產品質量安全檢驗檢測體系建設與管理的意見》; 陸來浩·鄭洪廣(2014.1), 〈食品安全的經濟分析〉, 《新東方》; 葛向華(2014.1), 〈我國食品安全現狀與保障措施〉, 《現代企業》; 《經濟日報》(2014.5.28) 〈食品安全治理現代化邁出重要一步〉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자료: 중국사무소 〈중국농업 브리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법원에서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 및 유해한 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에 대한 판결 건수는 2008년 84건, 2009년 148건, 2010년 119건, 2011년 333건, 2012년 1,081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식품안전사고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하수구 식용유’, ‘염색만두’, ‘포름알데히드 가짜 술’, ‘독분유’, ‘불법첨가제 고기’, ‘독콩나물’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임.

□ 식품안전사고의 주요 특징과 발생원인

- 최근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식품안전사고는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 외에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식품안전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수단도 지능화되고 있음.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인증은 주로 식품분류시스템에 의거하는데, 식품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새로운 식품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식품안전 범죄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기술적 수단도 점차 첨단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식품안전 범죄에 따른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중국 검찰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식품안전 범죄사건이 접수된 지역은 전체 33개 성(省)급 행정구역 중에서 28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 하남, 요녕, 중경, 광둥, 절강, 사천 등 6개 지역이 전체 발생건수의 60.94%를 차지하였음.
- 식품안전 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식품안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였음.
- 식품안전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용두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음.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생산·판매 원가는 매우 낮은 반면 매우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일부 대기업까지 식품안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 관리감독 능력의 부족) 주관 행정부문의 식품안전 생산에 대한 운용과 관리감독 능력이 미약하여 식품산업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중국은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단계별 관리를 위주로 하고 품목관리를 보조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각 주관부문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 (완비된 법률체계가 결여)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체계에 많은 폐단과 문제가 존재해 식품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식품안전 관련 법률의 규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법률·표준체계가 낙후되어 있으며, 일부 중요한 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거나 기준이 매우 낮은 폐단이 존재하고 있음.
- (언론의 감시기능이 부족)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할 때 많은 소비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일부 언론매체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나치게 사건을 과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 (식품산업 관련 표준의 결함) 중국의 식품안전 표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일부 표준은 너무 낙후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표준이 존재하기도 하며, 식품안전 표준 자체가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식품이나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상식과 인식 부족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낮아 안전식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음식물에 대한 과학적 상식 부족으로 인해 식중독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

-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수정하고 식품원산지 추적체계와 품질표지 제도를 수립하는 등 제도화와 법률·표준을 완비함.
- 《식품안전법(수정초안)》의 입법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일련의 법규와 조례, 규장

(rules) 등의 제정 및 수정을 촉진함.⁴⁾

- 농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즉 육류·채소 등 주요 농산물과 주류·유제품 등 주요 식품에 대해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식품원산지 추적체계를 구축함.
 - 식품품질표지제도를 완비함으로써 무공해농산물·녹색식품·유기농식품 등과 같은 농식품에 대한 인증업무와 인증표지 사용을 규범화하고,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 표지 사용의 규범화와 함께 소비자의 품질표지와 인증에 대한 식별능력을 제고함.
- 2014년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통해 영유아 조제분유, 육제품, 식용유, 어린이식품 등 중점제품과 중점산업에서의 경제 환경을 바로잡고 정비하는데(治理整頓)에 주력할 계획임.
-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농지의 중금속오염이나 농업용수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농업투입재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나 동물약품, 락토파민과 같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리함.
 -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과정에서 비식용물질의 불법첨가나 사용 범위 또는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첨가제의 사용 등과 같은 행위를 엄중히 처리하고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가축·가금 도축과 육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병사한 가축·가금의 수 집처리에 대해 속지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병사한 가축·가금에 대한 무해화처리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있음. 또한 돼지·소·양 등 가축도축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병사한 가축·가금을 가공하거나 불합격한 육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함.
 - 식용유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폐기한 기름을 불법적으로 구

4)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률·법규로 《식품생산경영허가관리방법(食品生產經營許可管理辦法)》, 《식품표지관리감독방법(食品標識監督管理辦法)》, 《식품첨가제생산관리감독방법(食品添加劑生產監督管理辦法)》, 《식원성질병관리방법(食源性疾病管理辦法)》, 《수출입식품안전조례(進出口食品安全條例)》, 《식품관련제품안전관리감독방법(食品相關產品安全監督管理辦法)》 등이 있음.

매·운수·가공하는 것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며, 동물내장과 화공원료를 이용하여 동물성 유지를 추출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함.

- 식품 생산·경영 기업의 자발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이 품질보증 기한을 초과한 식품에 대해 기업 스스로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보증 기한을 초과한 식품·회수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인터넷을 통한 식품거래와 수출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정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일자·품질합격증·생산공장명 등이 없는 식품, 검사검역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함.
- 관리감독과 산업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메커니즘이 식품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함.
- 현재 식품생산 기업은 약 45만 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2.6만 개(5.8%)에 불과하고 35만 개(77.8%)에 달하는 기업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임. 이는 식품산업에서의 산업집중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식품안전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중국에서 식품안전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강제성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식품안전책임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보험기구·기업·소비자 등이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정책을 강화하여 중점산업의 발전과 식품브랜드 구축을 촉진함. 농산물의 재배·사육단계에서 농업의 규모화·표준화 생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원예작물 표준농장·가축의 규모화 사육, 육류·채소·조란·우유 등 주요 식품의 생산기지 건설을 촉진하고, 소규모의 공장이나 기업이 식품가공산업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에 대해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실시를 촉진하고 산업진입·허가제도를 엄격히 하며, 기업의 M&A와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기

업으로의 발전을 장려함.

-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체계와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법규·표준의 완비와 제도화를 강화하고 있음.
 -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에는 《식품안전법》 외에도 10여 가지의 법률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용이 과도하게 원론적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충분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관리감독체계를 완비하고 기층 관리감독기관의 건립과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와 같은 IT기술을 이용하여 관리감독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제를 도입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업파산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지방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한 속지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식품안전업무를 지방정부의 민생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식품안전을 지방정부의 연간 종합목표·당정 지도인사의 정책업적 심사와 사회종합관리 심사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 《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서는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현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가공·생산과 같은 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 발전 계획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문책을 강화하였음.
- 사회 공동관리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제1의 책임주체는 기업임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우선책임제를 실

시하기로 함.

- 식품안전 문제는 특정 경제주체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 각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자율, 정부의 관리감독, 사회협동, 대중참여, 법치보장이 함께 작용하는 식품안전 사회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와 식품안전 사회공동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식품안전 정보발표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소비자가 우수제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양호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도록 함.
- 고발포상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식품안전 고발포상을 위한 전문 기금을 설립하고 포상범위를 적절히 확대해 정보제공자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였음.
- 《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서는 식품 생산·경영 기업이 식품안전의 제1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신의성실과 자율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화물진입 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전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유아 조제분유와 바이주(白酒)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식품품질안전권한위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품질안전 책임자가 생산원료에 대한 안전과 생산과정의 통제, 출고제품의 품질안전 검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식품 생산·경영 기업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HACCP 체계를 건립하고 식품안전사고보고·종업원 건강관리·교육훈련관리·식품생산경영조작규범 등의 제도를 건립하도록 함.
- 인터넷에서 구매한 식품에서 품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연대책임과 우선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식품광고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고를 제작·발표하여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광고 설계·제작·발표자는 식품 생산·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이 담당하며, 《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관련 국가의 식품안전표준 또는 국제표준, 식품검사결과, 생산국의 합법생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심사를 조직하고 심사동의를 거친 것에 대해 적용 표준을 지정하도록 함.
 - 수입상은 외국의 식품생산기업에 대해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수입된 식품이 본 법률 및 중국의 기타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수입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명기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국무원의 식품안전 관리감독부문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식품생산기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입된 식품이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대해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회수 및 처리 상황을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 보고하도록 함.
 -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서 수입물품 검사와 검사확인 기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관리감독과 샘플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 수입상, 제품목록을 공포하도록 함.
 - 수입 식용유제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생산기업에 대해 국외검사를 전개하여 안전표준과 품질표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용유의 중국 내 유입을 차단함.

□ 시사점

-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수정되어 입법될 예정인 《식품안전법(수정초안)》의 내용도 가장 엄격한 식품법으로 여겨지고 있음.
 - 현행 법률과 비교했을 때 수정초안은 55개 조항이 증가한 총 159개 조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대부분 관리감독체계와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식품안전 주체가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명확히 하고 처벌 강도를 강화하였음.

- 국무원에서 발표한 2014년 식품안전에 관한 중점업무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식품 안전의 문제에 대한 법치를 강조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속지책임주의가 강조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되었으며, 식품안전관리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키고 중장기적인 산업정책까지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무소홀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문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식품기업들은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점차 엄격해지는 경제환경을 잘 이해하고 변화된 법률규정과 행정부문의 관리감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현지진출 식품기업이나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기업의 경우 모두 시장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률이나 정책조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 등에 있어 내·외자 기업 간의 차별은 없으나 특정 품목에 대한 표준이 제정될 경우 수출입 기업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법규·표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서는 수입식품이 법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상 관 규정에 따라 처벌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기업의 세

5) 예를 들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검사합격 증명자료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심사 및 적용 표준의 지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식품종의 식품첨가제나 식품종의 식품관련 제품을 처음 수입시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출상이 본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한 경우 △관련 주관부문이 수입상에게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의 회수를 명령한 후 수입상이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수입된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설명서가 본 법률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이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수출상 혹은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

심한 주의가 요망됨.

◆ 제 12회 중국국제농산품박람회 개최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 농업부 시장 및 경제정보사(市场与经济信息司)는 2014년 6월 15일 《제 12회 중국국제농산품박람회 개최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農業部關於舉辦第十二屆中國國際農產品交易會的通知》를 발표함.
-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농업부에서는 2003년부터 연속적으로 총 11회의 중국국제농산품박람회(中国国际农产品交易会; 이하 ‘농산품박람회’로 약칭)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지난 11년 간 농산품박람회는 농민 소득 증대, 농업 효율성 제고,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의 농업 농촌 경제발전 성과를 전시, 홍보하고, 농산품의 교역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업 부문에서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부는 2014년 10월 산둥(山东) 칭다오(青島)시에서 제 12회 농산품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이번 농산품박람회는 “그간의 성과를 전시하고, 교류를 추진하며, 무역을 촉진한다”는 개최 목적 및 “명품, 개방, 실용”의 원칙을 삼가 받들고, “농촌 개혁의 심화, 현대 농업의 발전”을 박람회의 메인 테마로 삼아, 농산품박람회의 “전문화, 시장화, 브랜드화”를 추진함.

◆ 2014년 농민 부담 경감 사업에 관한 농업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사무처(法制办), 교육부, 신문출판방송총국(新闻出版广电总局)의 의견

- 농업부 농촌경제시스템 및 경영관리사(农村经济体制与经营管理司)는 2014년 6월 16일 《2014년 농민 부담 경감 사업에 관한 농업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판(法制办), 교육부, 신문출판광전총국(新闻出版广电总局)의 의견 农业部 财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政部 发展改革委 国务院法制办 教育部 新闻出版广电总局关于做好2014年减轻农民负担工作的意见》을 발표함.

- 최근 몇 년간, 도농 발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노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농민들의 부담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부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함. 그러나 일부 지방 및 부처의 경우,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져, 일부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불법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문제를 누차 금지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사일의(一事一议)⁶⁾를 통한 자금조달 시행에 있어 충분한 규범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촌(村)급 조직의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함. 올해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부문에서 군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패 문제 및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든 행위를 단호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유관부처에서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국판발國辦發[(2012) 22호] 문건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함.
- 농업과 관련된 가격 및 비용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정비, 관리함. 농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문서 “심사결정제(审核制)”를 마련, 시행하고 비용 항목 및 비용 징수 기준 등에 대한 불법적 발표를 엄격히 금지함. 농촌 의무교육, 산아제한계획(计划生育), 농민 주택건설, 농기계 관련 서비스, 장례 서비스, 농민들이 사용하는 수도 및 전기 등의 부문에서 가격 및 비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가격 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함. 위를 조사하여 바로 잡음으로써 농민 부담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 촌급 조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정리하고 바로잡도록 함. 촌급 조직의 부담이 가중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촌급 조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6) [역자 주] 농업세 폐지 이후 준조세성 부담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진정부의 예산확정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 과거 수리기초시설, 도로건설, 삼림조성, 농촌종합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던 것을 농업세 폐지와 함께 금지시킨 이후, 이들 재원에 대한 농민 출자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로 향진정부의 예산편성에 농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행위 및 상급 부서가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받아내는 등의 행위를 정리하고 바로 잡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함.

- 일사일의 자금조달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함. 자금 조달 상한액 기준 및 자본으로 노동 인건비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허위 자금조달을 방지하는 방안과 자본으로 노동 인건비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조치방안을 연구, 제정하도록 함.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심사 결정 및 전문적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사일의 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
- 농민 부담에 대한 감독 관리 범위를 확장하도록 함. 각 지역에서는 농민 부담에 대한 감독 관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널리 보급하고, 유관 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문제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감독관리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농촌 인프라 건설, 농촌 공공서비스 및 농업 기술 보급, 동식물 방역 사업,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등 공익성 농업 서비스 부문에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농민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거나 상급 부서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시행에 관련된 감독 검사를 강화함.
- 농민 부담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개혁을 추진함. 농업 농촌 인프라 구축이 중앙예산 내 투자 계획 중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공익성 건축 프로젝트에서 중앙정부의 투자 및 지원 비중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 농민 부담 경감 사업에 대한 조직적 지도를 강화함. 지방 당 위원회 및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스스로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해 총 책임을 지는 업무 제도를 견지함으로써, “주관하는 사람이 책임도 지는(谁主管、谁负责)” 전문적 관리 부문 책임제를 마련하도록 함.

◆ 제 3차 전국 주식 가공업 시범기업 인증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 농업부 향진기업국(農業部鄉鎮企業局)은 2014년 6월 27일 《 제 3차 전국 주식 가공업 시범기업 인증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农业部关于认定全国主食加工业示范企业(第三批)的通知 》를 발표함.
- 주식(主食)은 인체의 기본 에너지와 영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 식품이자, 국민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 식품임. 중국 주식 가공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날로 증가하는 도농 주민들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농민의 지속적 취업 및 소득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주식 가공업 발전 캠페인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 기업의 자주적 서면보고, 지방정부 내 관련 부처의 심사를 통한 추천, 전문가들 통한 평가 및 심사 및 공시(公示) 등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적 연구를 더해 베이징 라오장아타이 찬음관리유한공사(北京老江阿泰餐饮管理(北京)有限公司) 등 100개 기업을 제 3차 전국 주식 가공업 시범기업으로 선정함.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14년 1~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4%로 2013년 동기의 7.6%에 비해 감소하였음.
- － 동 기간 1차 산업의 GDP 증가율은 3.9%로 전년 동기의 3.0%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 GDP 증가율은 각각 7.4%, 8.0%으로 전년 동기의 7.6%, 8.3%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14년 1~6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7.2%로 2013년 동기의 7.3%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3월	1-6월	1-9월	1-12월
GDP 성장률	8.7	10.3	9.2	7.8	7.7	7.4	7.4		
1차산업	4.2	4.3	4.5	4.5	4.4	3.5	3.9		
－ 농업 전체	3.8	4.0	-	4.3	-	-	-		
·재배업	2.2	3.3	-	4.0	-	-	-		
·임업	4.9	9.9	-	7.0	-	-	-		
·축산업	4.9	2.3	-	4.2	-	-	-		
·어업	3.2	3.4	-	4.5	-	-	-		
2차산업	9.5	12.2	10.6	8.1	7.8	7.3	7.4		
3차산업	8.9	9.5	8.9	8.1	8.3	7.8	8.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을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3월	1-6월	1-9월	1-12월
부가가치성장률	11.0	15.7	13.9	10.0	9.7	8.7	8.8		
경공업	9.7	13.6	13.0	10.1	-	-	-		
중공업	11.5	16.5	14.3	9.9	-	-	-		
국유기업	6.9	13.7	9.9	6.4	6.9	4.5	5.5		
사영기업	18.7	20.0	19.5	14.6	12.4	11.7	11.4		
집체기업	10.2	9.4	9.3	7.1	4.3	3.1	3.2		
주식합작기업	10.3	14.0	14.7	6.5	6.9	11.7	10.8		
주식회사	13.3	16.8	15.8	11.8	11.0	10.0	10.2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동 기간 기업의 성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국유기업, 주식합작기업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고,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회사는 하락하였음.

2 고정자본 투자

- 2014년 1~6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17.3%로 2013년 동기의 20.1보다 하락하였음.
- 동 기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24.1%, 14.3%, 19.5%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모두 하락하였음.
 - 동 기간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음료제조업, 연초제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20.6%, 21.2%, 9.4%로 전년 동기의 25.9%, 38.6%와 10.9%에 비해 하락하였음. 반면 식품제조업의 증가율은 22.8%로 전년 동기의 15.7%에 비해 증가하였음.
 - 동 기간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8.9%로 2013년 동기의 25.0%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3월	1-6월	1-9월	1-12월
투자 성장률	30.5	24.5	23.7	20.6	19.6	17.6	17.3		
1차산업(농림목어업)	49.9	18.2	25.0	32.2	32.5	25.8	24.1		
2차산업	26.8	23.2	27.3	22.0	17.4	14.7	14.3		
이 중									
- 농부식품가공업	38.2	28.1	44.1	32.0	26.5	21.6	20.6		
- 식품제조업	32.4	28.8	23.1	28.1	20.7	21.9	22.8		
- 음료제조업	22.4	25.6	40.7	36.2	30.4	27.7	21.2		
- 연초제조업	63.7	-0.4	37.1	-8.7	27.3	-5.4	9.4		
3차산업	33.0	25.6	21.1	20.6	21.0	19.6	19.5		
이 중									
- 숙박, 외식업	34.4	27.9	34.3	30.2	17.5	16.1	8.9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소비

- 2014년 1~6월 동안 소비재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2.1%로 2013년 동기의 12.7%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
- 동 기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12.0%, 13.2%로 전년 동기의 12.5%, 14.3%에 비해 하락하였음.
- 동 기간 소매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2.4%로 전년 동기 13.2%보다 하락하였음. 외식업의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10.1%로 전년 동기의 8.7%에 비해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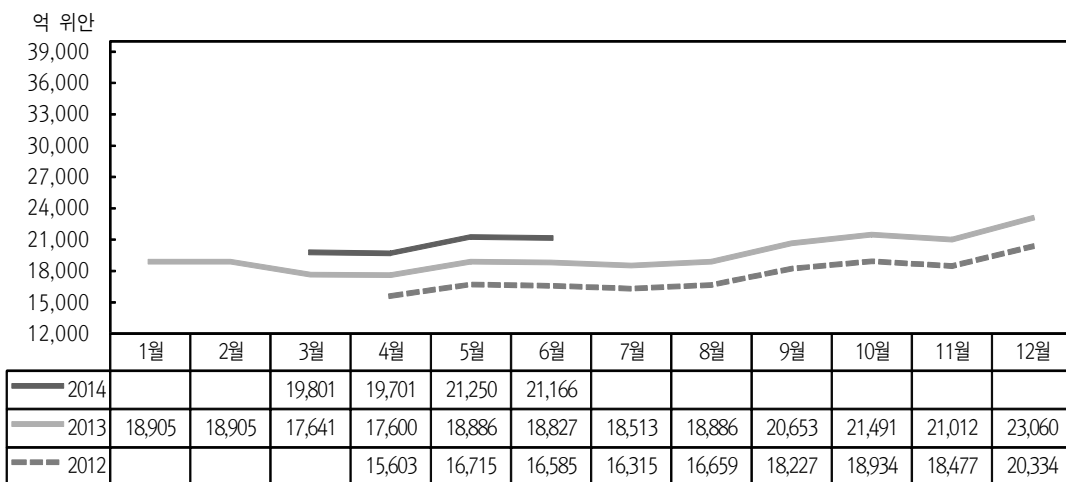
표 4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12				2013				2014			
		1-3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1-9월	1-12월	1-3월	1-6월	1-9월	1-12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14.8	14.4	14.1	14.3	12.4	12.7	12.9	13.1	12.0	12.1		
지역별	도시	14.9	14.3	14.0	14.3	12.2	12.5	12.7	12.9	11.8	12.0		
	농촌	14.6	14.5	14.4	14.5	13.9	14.3	14.5	14.6	12.8	13.2		
업종별	소매업	15.0	14.5	14.2	14.4	12.9	13.2	13.4	13.6	12.2	12.4		
	외식업	13.3	13.2	13.2	13.6	8.5	8.7	8.9	9.0	9.8	10.1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1 중국의 소비재 소매판매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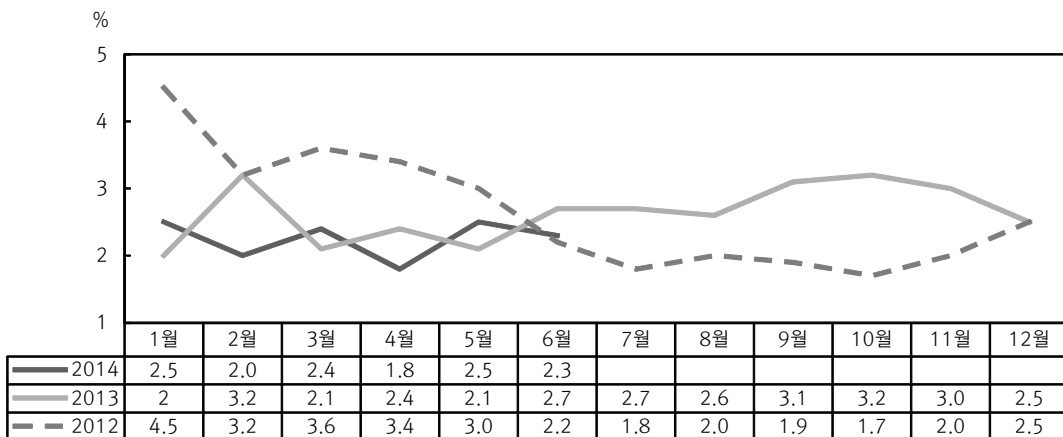


4 물가

4.1. 소비자물가지수(CPI)

- 2014년 1~6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3로 전년 동기 102.4에 비해 소폭 하락함.
- 2014년 1~6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품가격,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의류 및 복장,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0.6%, 1.4%, 0.1%, 0.3%, 0.4%, 0.4% 하락하였음. 교통 및 통신 가격과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0.7%, 0.9% 상승하였음.
- 2014년 1~6월 동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하였음. 이는 식품가격을 구성하는 식량,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금 알, 신선채소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 3.0%, 6.9%, 1.3%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임.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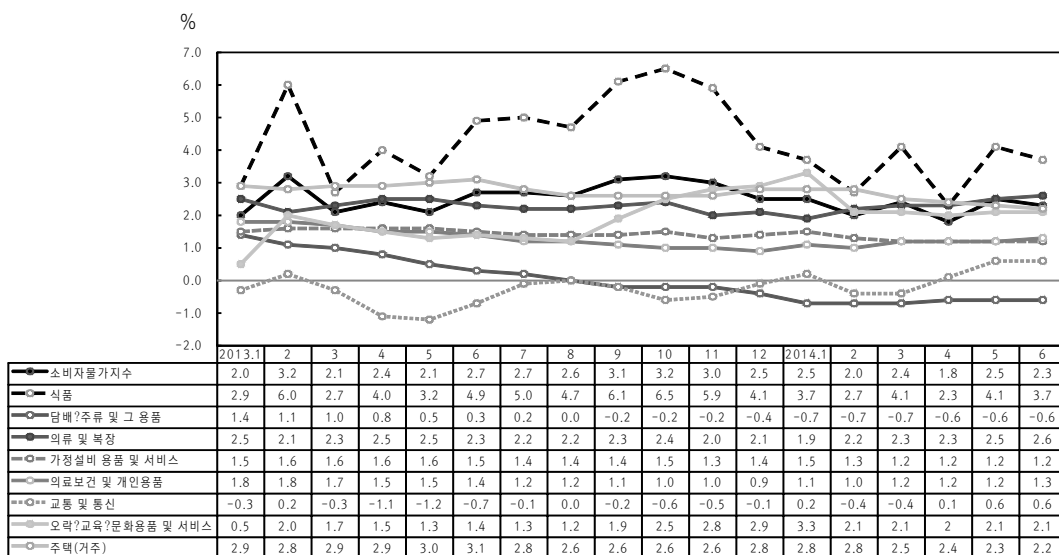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1-3월	1-6월	1-9월	1-12월
소비자물가지수	103.3	105.4	102.6	102.6	102.3	102.3		
식품	107.2	111.8	104.8	104.7	103.5	103.4		
-식량	111.8	112.2	104.0	104.6	102.9	102.9		
-육류·가금 및 그 제품	102.9	122.6	102.1	104.3	98.5	99.9		
-가금 알	108.3	114.2	97.1	104.9	96.9	104.4		
-수산물	108.1	112.1	108.0	104.2	106.2	105.6		
-신선채소	118.7	100.5	115.9	108.1	105.8	101.0		
-신선과일	115.6	116.4	98.8	107.1	119.9	119.7		
담배·주류 및 그 용품	101.6	102.8	102.9	100.3	99.3	99.4		
의류 및 복장	99.0	102.1	103.1	102.3	102.2	102.3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100.0	102.4	101.9	101.5	101.3	101.3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103.2	103.4	102.0	101.3	101.1	101.2		
교통 및 통신	99.6	100.5	99.9	99.6	99.8	100.1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100.6	100.4	100.5	101.8	102.5	102.3		
주택(거주)	104.5	105.3	102.1	102.8	102.7	102.5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4.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 2014년 6월 기업상품가격지수는 98.9으로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하였음.
- 2014년 6월 기업상품가격지수를 상품별로 보면 농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4.3% 하락하였고, 광산물, 석탄·석유·전기는 각각 전년 동월대비 0.7%, 3.4%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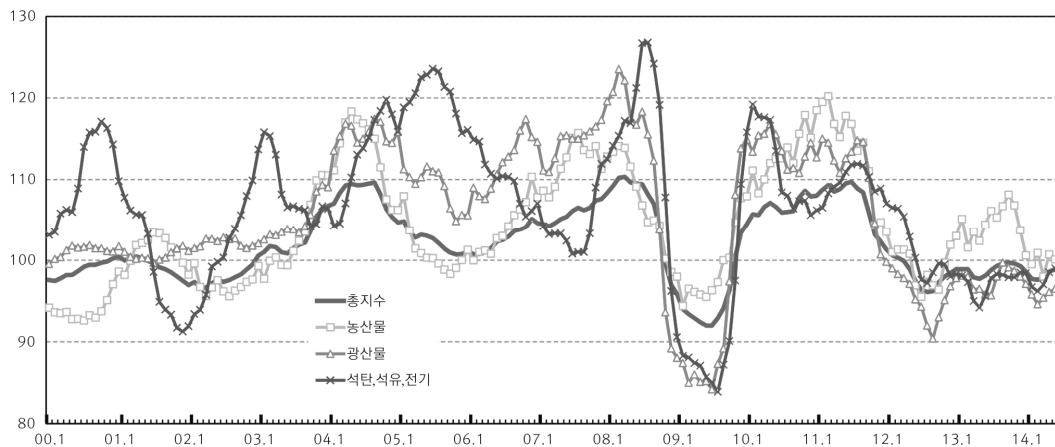
표 6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구 분	2013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지수	98.8	99.3	99.6	99.7	99.6	99.3	98.6	97.7	97.6	97.8	98.6	98.9
농산물	106.1	105.3	106.7	108.1	106.8	103.7	100.6	99.4	100.9	98.0	100.7	100.1
광산물	95.7	98.0	99.7	99.1	98.7	98.0	97.1	95.8	94.6	95.4	96.1	96.5
석탄·석유·전기	97.8	98.3	98.2	97.9	97.9	98.5	98.4	96.7	96.2	97.0	98.5	99.0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그림 4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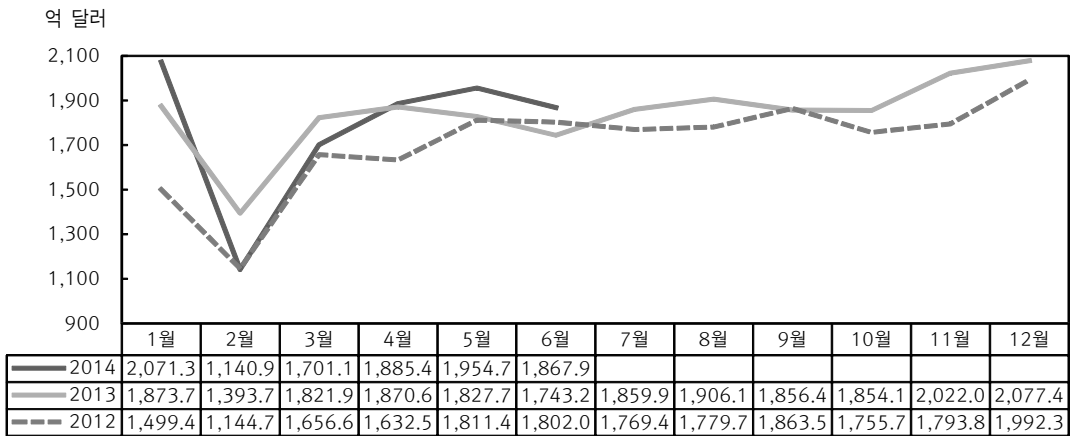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5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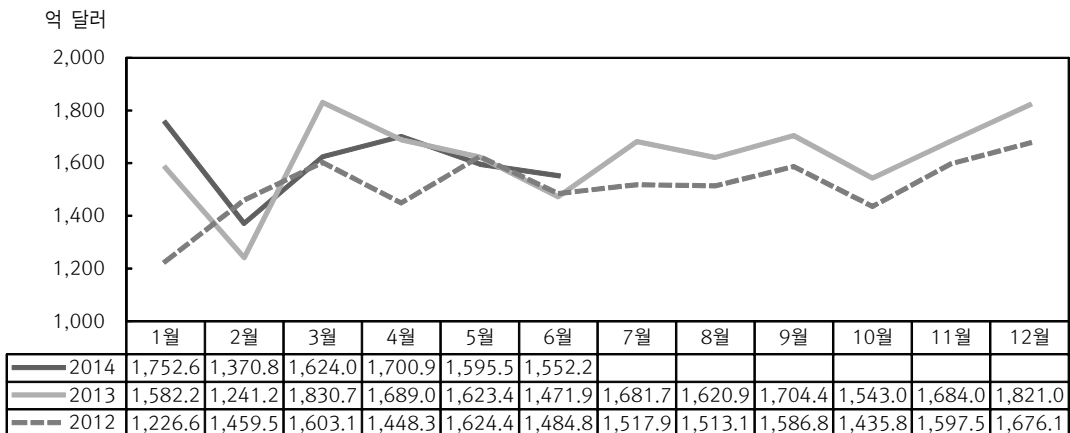
- 2014년 1~6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208.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 상승하였음.

그림 5 중국의 수출 추이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그림 6 중국의 수입 추이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 2014년 1~6월 중국의 수출은 10,618.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9% 상승하였으며, 수입은 9,5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하였음.

표 7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3월	1-6월	1-9월	1-12월
수출입 총액	29,727.6	36,420.6	38,667.6	41,603.3	9,658.8	20,208.6		
- 증가율(%)	34.7	22.5	6.2	7.6	-1.0	1.2		
수출 총액	15,779.3	18,986.0	20,489.3	22,100.4	4,913.1	10,618.6		
- 증가율(%)	31.3	20.3	7.9	7.9	-3.4	0.9		
수입 총액	13,948.3	17,434.6	18,178.3	19,502.9	4,745.7	9,590.0		
- 증가율(%)	38.7	24.9	4.3	7.3	1.6	1.5		
무역 수지	1,831.0	1,551.4	2,311.1	2,597.5	167.4	1,028.7		
- 증가율(%)	-10.8	-14.5	49.0	12.8	-59.7	-5.1		

자료: 中國商務部(<http://zhhs.mofcom.gov.cn/tongji.shtml>)

6 금융 및 환율

- 2014년 6월 광의통화(M2)는 120조 9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4.7% 증가하였음.
- 2014년 6월 협의통화(M1)는 34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하였음.
- 2014년 6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5조 6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하였음. 시중 유통 현금(M0)은 2012년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월 7조 6천 억 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8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월대비)

	2013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광의통화(M2) ³	10,522	10,613	10,774	10,702	10,793	11,065	11,235	11,318	11,607	11,688	11,823	12,096
-증가율(%)	14.5	14.7	14.2	14.3	14.2	13.6	13.2	13.3	12	13.2	13.4	14.7
협의통화(M1) ²	3,106	3,141	3,123	3,195	3,248	3,372	3,149	3,166	3,277	3,245	3,278	3,415
-증가율(%)	9.7	9.9	8.9	8.9	9.4	9.2	1.2	6.9	2.7	5.5	5.7	8.9
유통 중 현금(M0) ¹	544	549	565	556	564	586	765	623	583	586	581	570
-증가율(%)	9.5	9.4	5.8	8.0	7.6	7.1	22.6	3.3	5.0	5.4	6.8	5.4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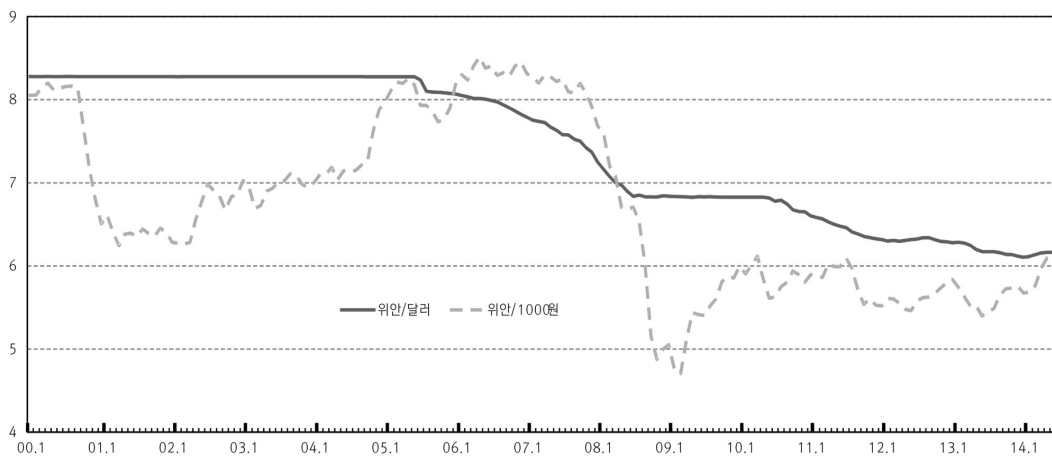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otongji/tongjishuju/>)

○ 2014년 4월, 5월, 6월의 위안/달러 환율은 각각 6.1553, 6.1636, 6.1636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4월, 5월, 6월의 위안/1,000원 환율은 각각 5.9716, 6.0942, 6.1128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위안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표 9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단위: 위안(월 평균)

	2013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위안/달러	6.1725	6.1708	6.1588	6.1393	6.1372	6.1160	6.1043	6.1128	6.1358	6.1553	6.1636	6.1636
위안/1000원	5.4463	5.4873	5.6424	5.7250	5.7342	5.7567	5.6767	5.6808	5.7594	5.9716	6.0942	6.1128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1 농산물 도매가격지수¹⁾ 동향

- 중국의 전체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2/4분기에 하락 추세를 보임. 2014년 6월 205.5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의 “채람자”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2/4분기에 2014년 6월 207.4로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추이(2010.1~2014.6)



자료: 農 業 部(<http://www.agri.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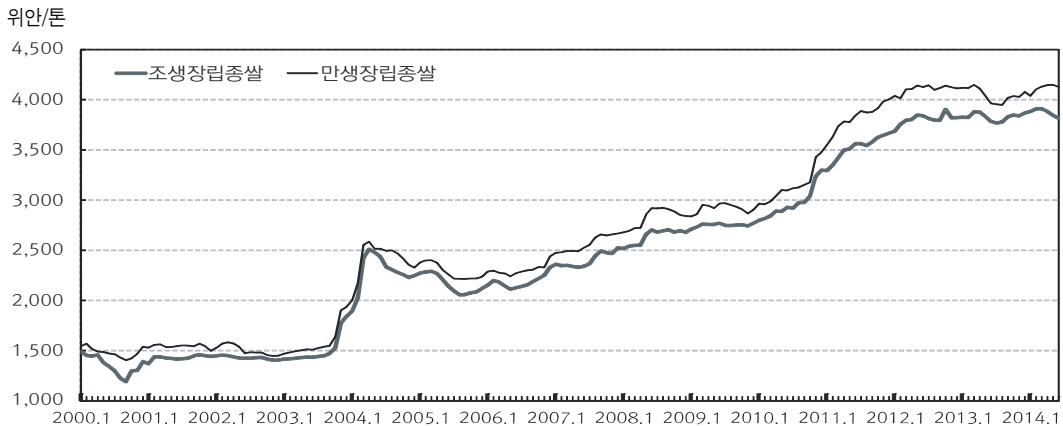
1) 농산물 가격지수는 2000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산정한 것임.

2 식량작물²⁾

2.1. 장립종 쌀(秈米)

-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4년 3월 조생 장립종 쌀과 2014년 5월 만생 장립종 쌀의 톤당 가격은 각각 3,911위안과 4,149위안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 조생 장립종 쌀(早秈米)³⁾의 2014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3,84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831위안에 비해 0.42% 상승하였음.
 - － 월별로 보면 4월 3,882위안, 5월 3,844위안, 6월 3,841위안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4월과 5월과 6월에 각각 0.2%, 0.3%, 0.9% 상승하였음.

그림 2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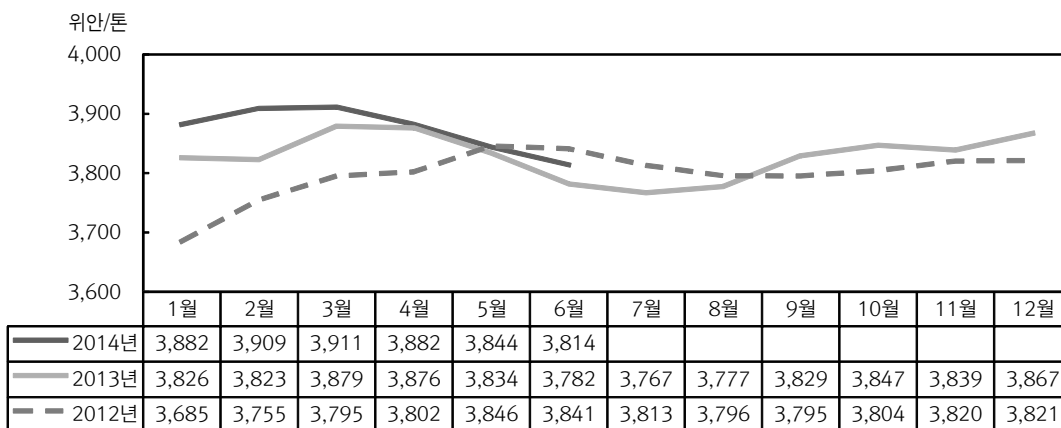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앙정부의 비축식량에 대한 경영·관리(국가의 수매·판매 위탁 업무 포함)를 책임지고 있는 국유기업인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정주화량과 기주식유한회사(鄭州華糧科技股份有限公司)에서 제공하는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중국농업부의 중국농업신식망(中國農業信息網)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안휘성,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14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

그림 3 조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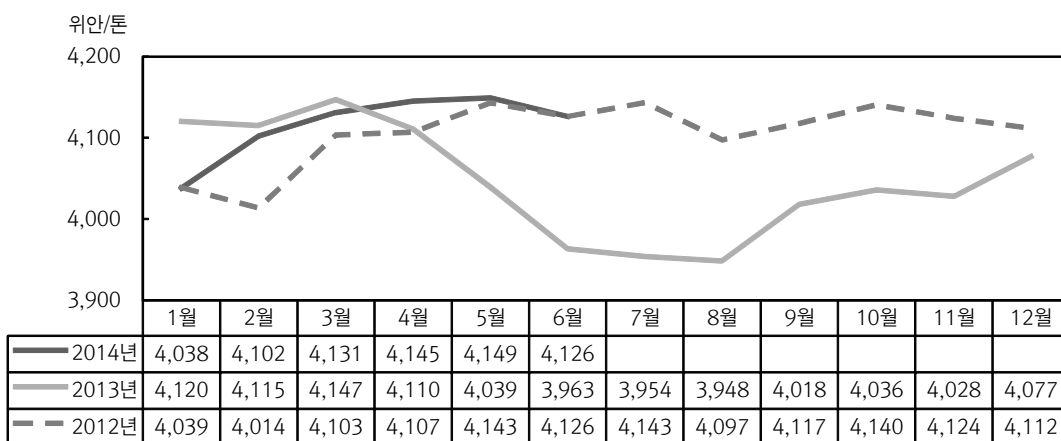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만생 장립종 쌀(晚秈米)⁴⁾의 2014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140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038위안에 비해 2.5%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4월 4,145위안, 5월 4,149위안, 6월 4,126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4월과 5월과 6월에 각각 0.8%, 2.7%, 4.1% 상승하였음.

그림 4 만생 장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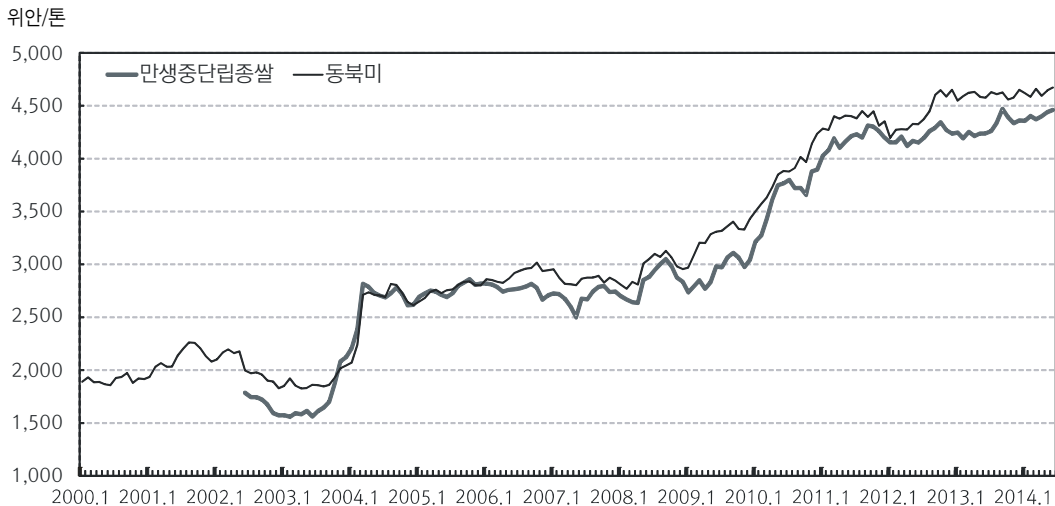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4) 안휘성, 복건성,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의 2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2.2. 중·단립종 쌀(粳米)

- 중국 남부지역이 주산지인 만생 중단립종 쌀(晚粳米)⁵⁾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 2014년 2/4분기 중 6월에 4,460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인 동북미(東北米)⁶⁾의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 2014년 6월 4,672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5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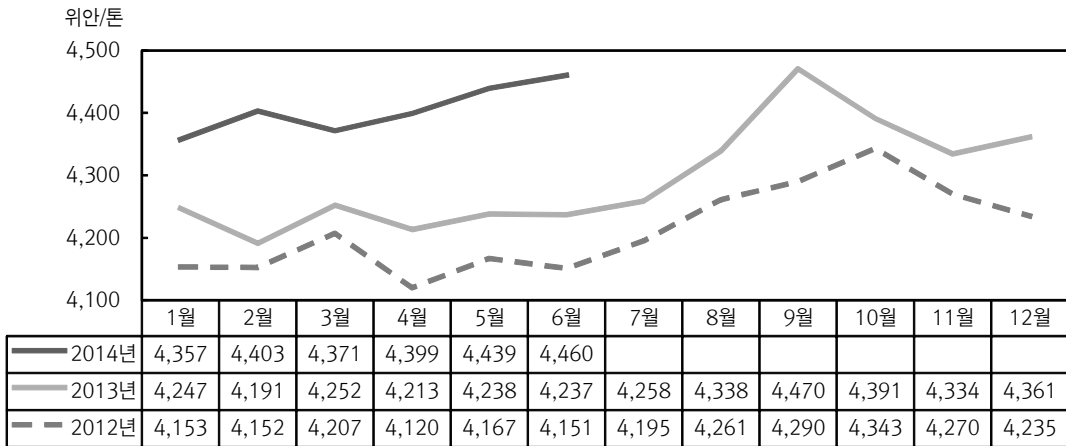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만생 중단립종 쌀(晚粳米)의 2014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43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230위안에 비해 4.8% 상승하였음.
 - － 월별로 보면 4월 4,399위안, 5월 4,439위안, 6월 4,460위안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4월과 5월과 6월에 각각 4.4%, 4.7%, 5.3% 상승하였음.

5) 안휘성, 하남성, 길림성, 강소성, 청해성, 섬서성, 절강성의 13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6) 복건성, 감숙성, 허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강서성, 내몽고자치구, 천진시, 절강성의 19개 지역에서 보고된 1등급(標一) 평균가격임.

그림 6 만생 중단립종 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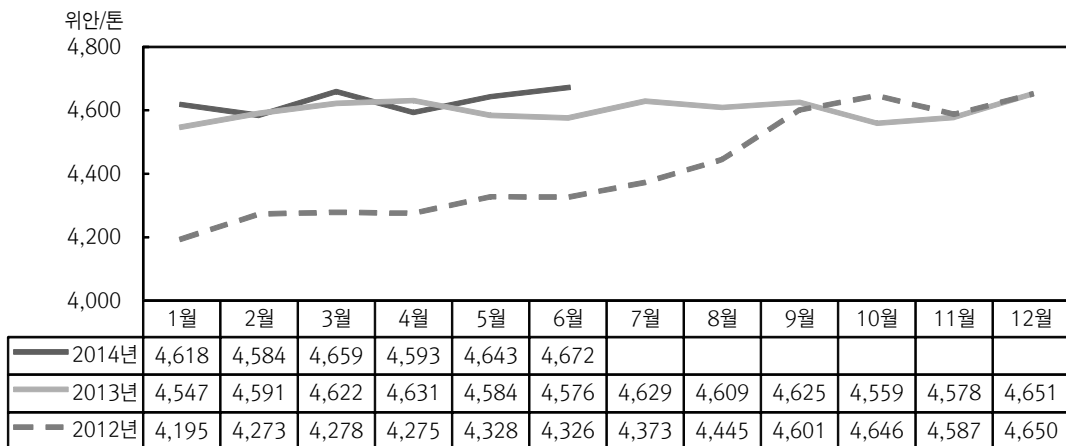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동북미(東北米)의 2014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63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597위안에 비해 0.9%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4월 4,593위안, 5월 4,643위안, 6월 4,672위안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4월에 0.8% 하락하였고, 5월과 6월에 각각 1.3%, 2.1% 상승하였음.

그림 7 동북미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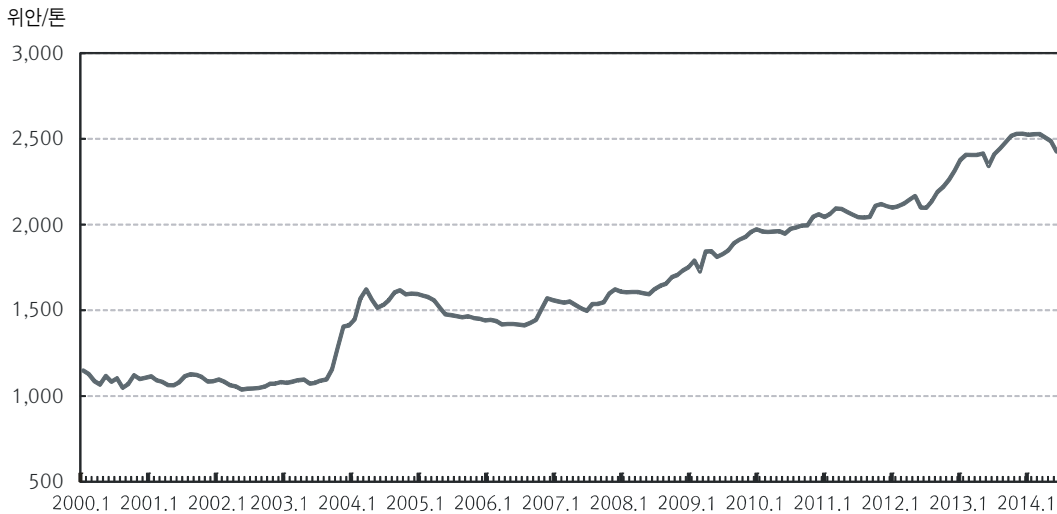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3. 밀

- 중국 중·북부지역이 주산지인 밀(小麥)⁷⁾ 도매시장 가격의 장기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2012년 7월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12월 최고가 2,530위안을 기록함.

그림 8 중국의 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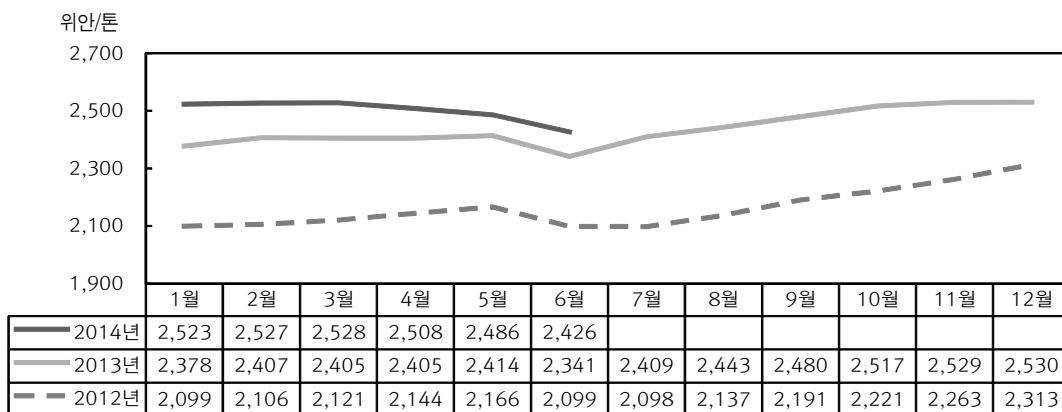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 밀의 2014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47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387위안에 비해 3.6% 상승하였음.
 - 월별로 보면 4월 2,508위안, 5월 2,486위안, 6월 2,426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4월과 5월과 6월에 각각 4.3%, 3.0%, 3.7% 상승하였음.

7) 안휘성, 복건성, 감숙성, 하북성, 하남성, 호북성, 강소성, 산둥성, 산서성, 천진시, 신강성의 33개 지역에서 보고된 3등급(標三) 평균가격임.

그림 9 밀 월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4. 옥수수

- 중국 동북부지역이 주산지인 옥수수(玉米)⁸⁾ 도매시장 가격은 2009년 후반이후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1년 말 하락한 후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 8월 톤 당 2,369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락과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0 중국의 옥수수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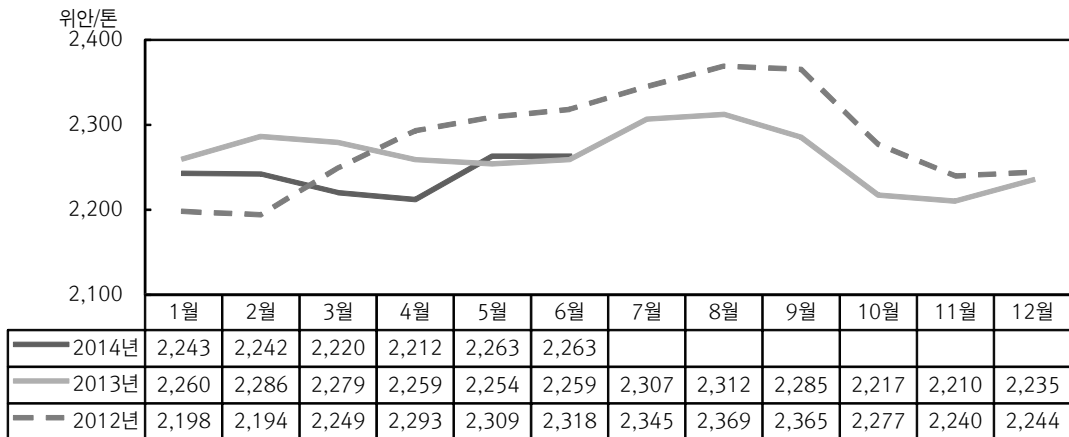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8) 안휘성, 복경시, 복간성, 감숙성, 광둥성, 광서성, 하북성, 하남성, 흑룡강성, 호북성, 길림성, 강소성, 요녕성, 내몽고성, 산둥성, 산서성, 천진시의 55개 지역에서 보고된 2등급(標二) 평균가격임.

- 옥수수의 2014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2,24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257위안에 비해 0.5% 하락하였음.
- － 월별로 보면 4월 2,212위안, 5월 2,263위안, 6월 2,263위안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4월에 2.1% 하락하였고, 5월과 6월에 각각 0.4%, 0.2% 상승하였음.

그림 11 옥수수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2.5.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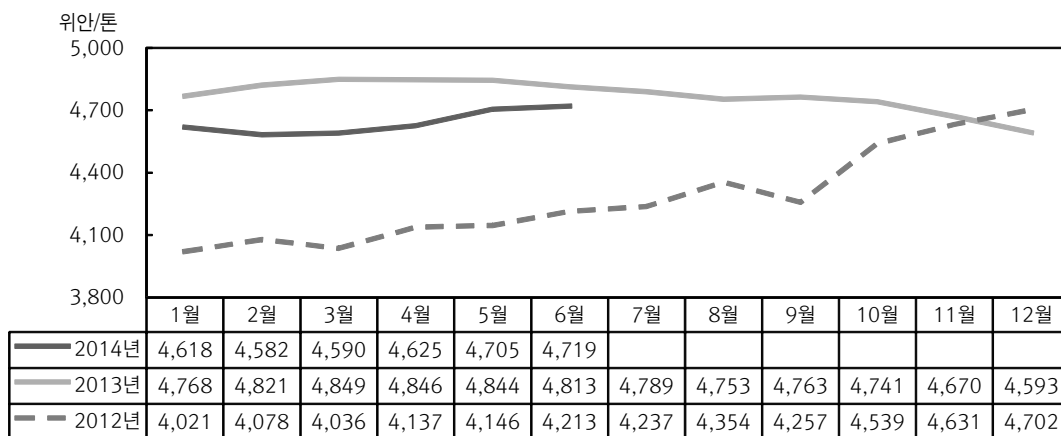
- 2010년 7월부터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 톤 당 4,849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하락하기 시작하며 2014년 2월에 4,582위안의 최저가를 기록하였음.
- 대두의 2014년 4~6월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톤 당 4,68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834위안에 비해 3.1% 하락하였음.
- － 월별로 보면 4월 4,625위안, 5월 4,705위안, 6월 4,719위안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각각 4.6%, 2.9%, 2.0% 하락하였음.

그림 12 중국의 대두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0.1~2014.6)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그림 13 대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華糧網數據中心(<http://www.datacenter.cngra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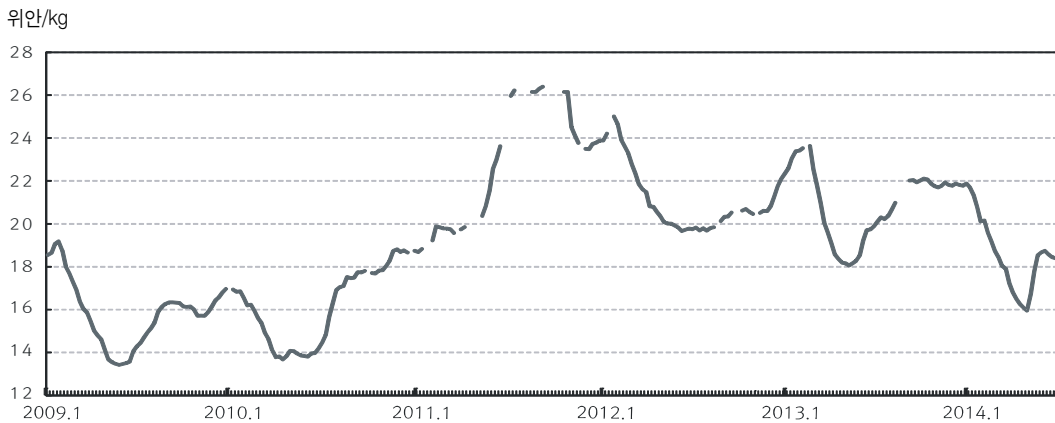
3 육 류⁹⁾

3.1. 돼지고기

9)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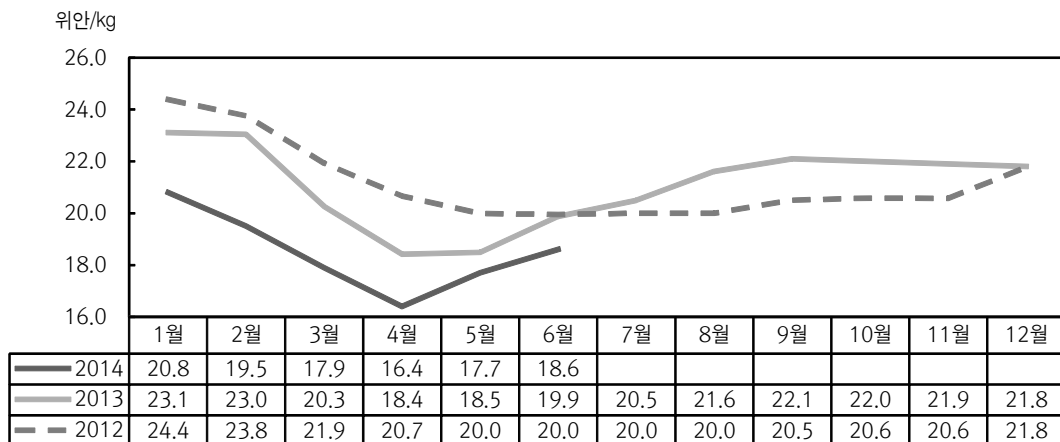
-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음. 2012년 11월 이후 반등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kg 당 23.1위안으로 9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임. 2014년 2/4분기는 4월 kg당 16.4위안으로 최저가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임.

그림 14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추이(2009.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15 돼지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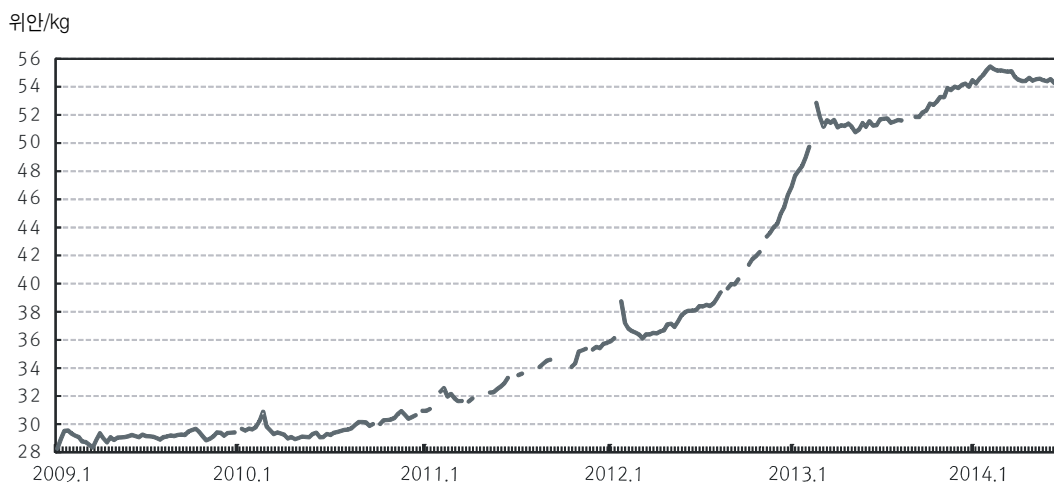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돼지고기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7.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8.9위안에 비해 7.2%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6.4위안, 5월 17.7위안, 6월 18.6위안으로 상승추세를 하였음.

3.2.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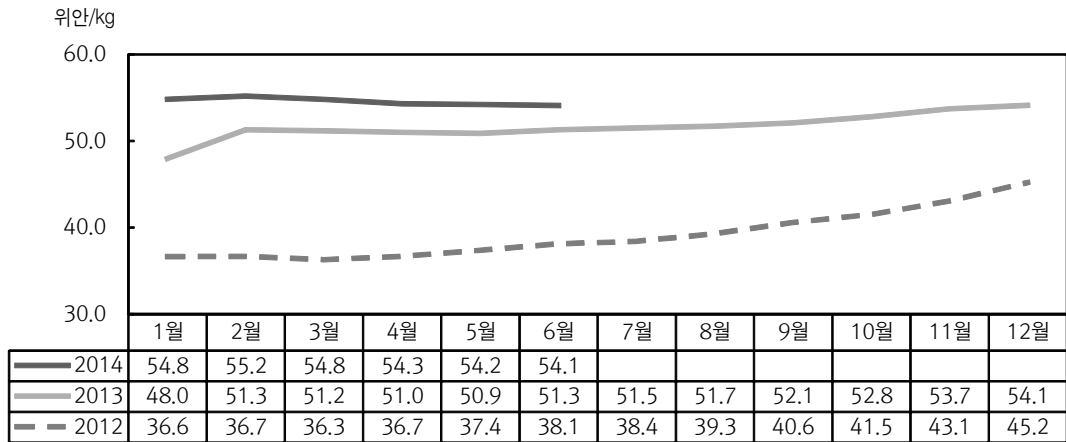
- 쇠고기 가격은 2012년 3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2월에는 사상 최고가인 55.2위안을 기록하였음.
- －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주요한 원인임.
- 쇠고기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4.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1.1위안에 비해 6.2%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54.3위안, 5월 54.2위안, 6월 54.1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그림 16 중국의 쇠고기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17 쇠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3.3. 계란

- 계란 가격은 2013년 1월에 kg 당 9.4위안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5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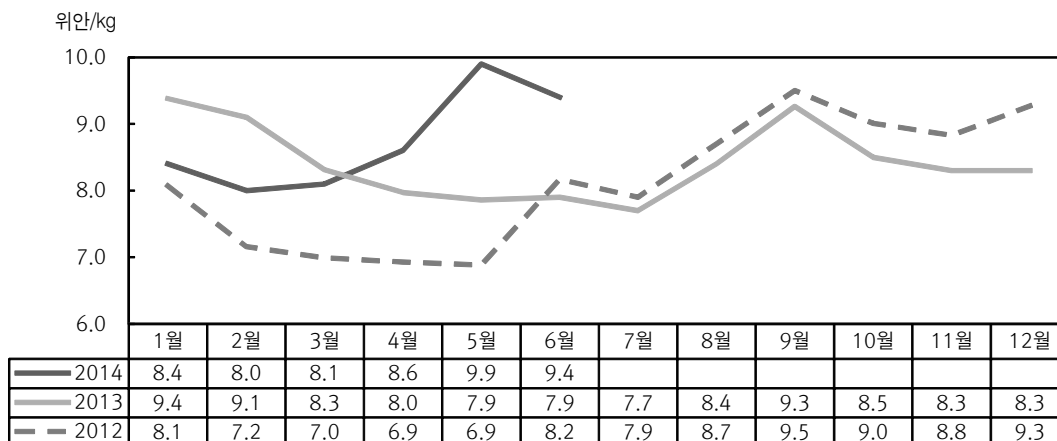
그림 18 중국의 계란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계란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9.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7.9위안에 비해 17.6%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8.6위안, 5월 9.9위안, 6월 9.4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19 계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3.4.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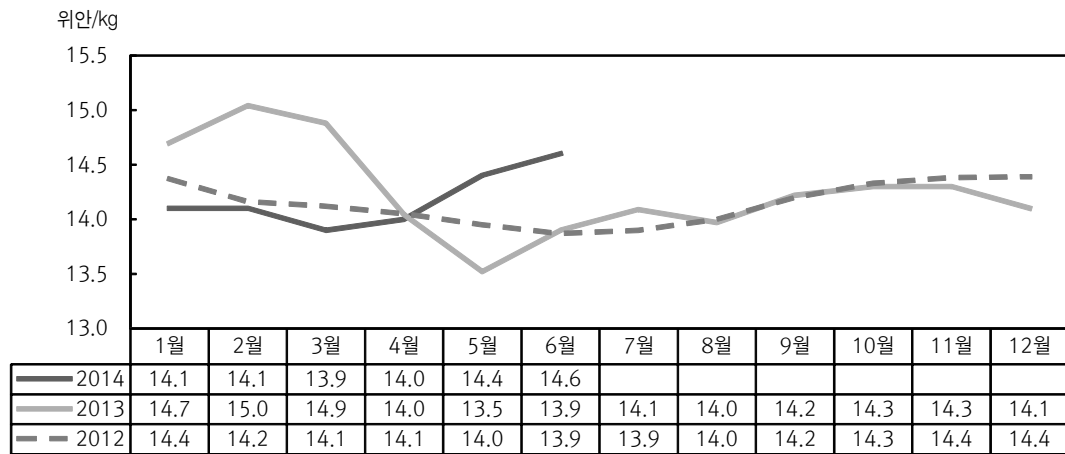
- 닭고기 가격은 2013년 2월에는 kg 당 15.0위안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소폭 하락하는 추세임.
- 닭고기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4.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3.8위안에 비해 3.7%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4.0위안, 5월 14.4위안, 6월 14.6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

그림 20 중국의 닭고기 도매시장 가격 추이(2009.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21 닭고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표 1 주요 축산물의 주간 도매시장 가격 동향(2014.1~2014.6)

단위: 위안/kg

기간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2014년	1. 1 - 1. 5	8.47	14.34	21.69	54.09
	1. 6 - 1.12	8.51	14.03	21.32	54.44
	1.13 - 1.19	8.49	13.93	20.78	54.67
	1.20 - 1.26	8.36	14.02	20.11	55.01
	2. 3 - 2. 9	8.21	14.32	20.15	55.30
	2.10 - 2.16	8.06	14.10	19.58	55.12
	2.24 - 3. 2	7.88	14.05	19.18	55.00
	3. 3 - 3. 9	7.83	13.86	18.43	54.96
	3.10 - 3.16	8.02	13.78	18.04	54.92
	3.17 - 3.23	8.20	13.96	17.91	54.96
	3.24 - 3.30	8.23	13.87	17.23	54.54
	3.31 - 4. 6	8.28	13.97	16.81	54.35
	4. 7 - 4.13	8.38	14.10	16.50	54.26
	4.14 - 4.20	8.59	14.08	16.26	54.27
	4.21 - 4.27	8.92	14.07	16.09	54.49
	4.28 - 5. 4	9.13	14.24	15.95	54.29
	5. 5 - 5.11	9.57	14.39	16.73	54.40
	5.12 - 5.18	10.0	14.51	17.79	54.43
	5.19 - 5.25	10.25	14.51	18.53	54.31
	5.26 - 6. 1	10.05	14.29	18.67	54.25
	6. 2 - 6. 8	9.58	14.41	18.74	54.40
	6. 9 - 6.15	9.40	14.62	18.57	54.16
	6.16 - 6.22	9.21	14.69	18.44	54.02
	6.23 - 6.29	9.27	14.59	18.39	5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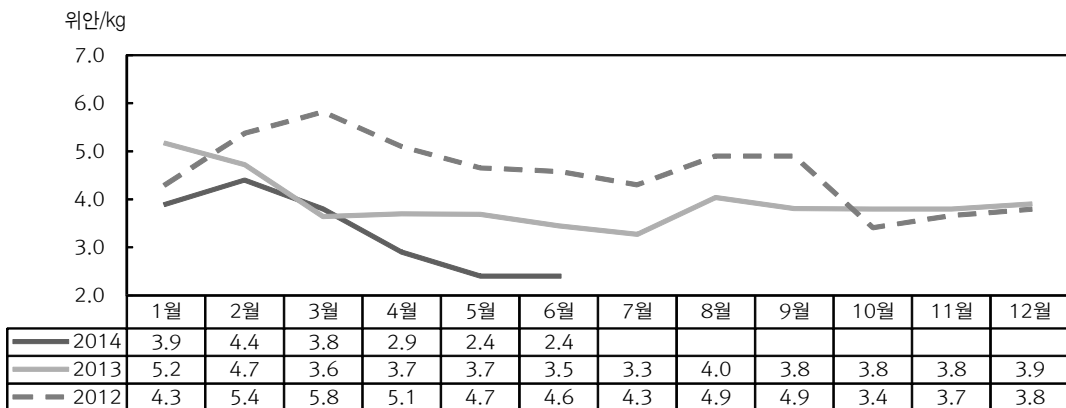
자료: 農業部, 農業部2014年批發市場鮮活農產品交易情況周報(2014年1月~2014年6月)

4 양념채소¹⁰⁾

4.1. 파

- 파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6위안에 비해 29% 하락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2.9위안, 5월 2.4위안, 6월 2.4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22 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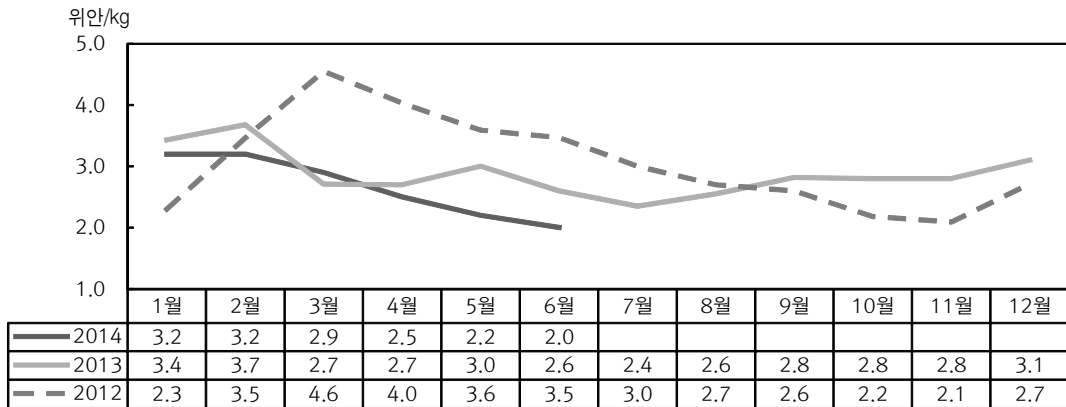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대파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8위안에 비해 19.3% 하락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2.5위안, 5월 2.2위안, 6월 2.0위안으로 하락추세임.
- 쪽파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6위안과 같음.
- 월별 가격은 4월 3.5위안, 5월 3.4위안, 6월 3.8위안으로 등락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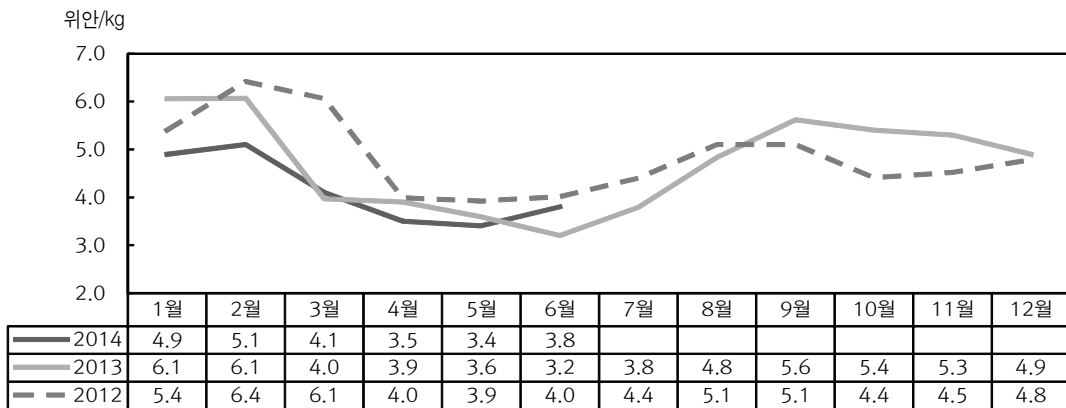
10)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그림 23 대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24 쪽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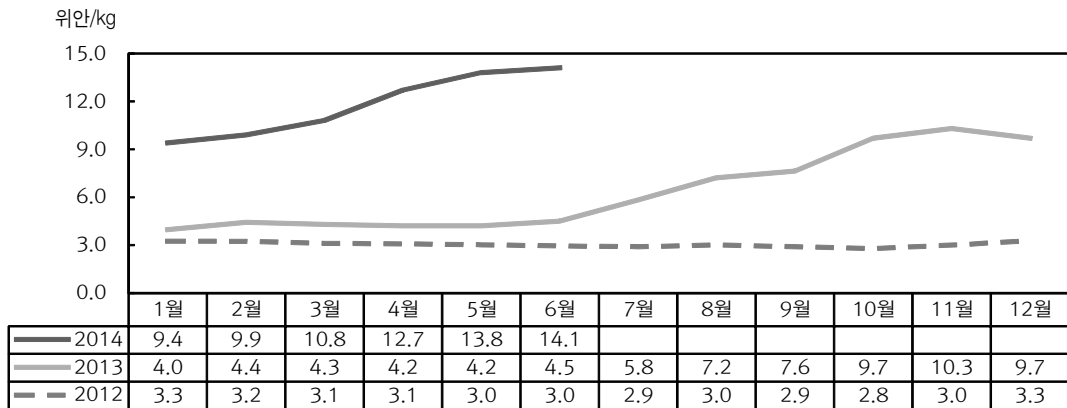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4.2. 생강

○ 생강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3.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3위안에 비해 214.7% 상승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12.7위안, 5월 13.8위안, 6월 14.1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25 생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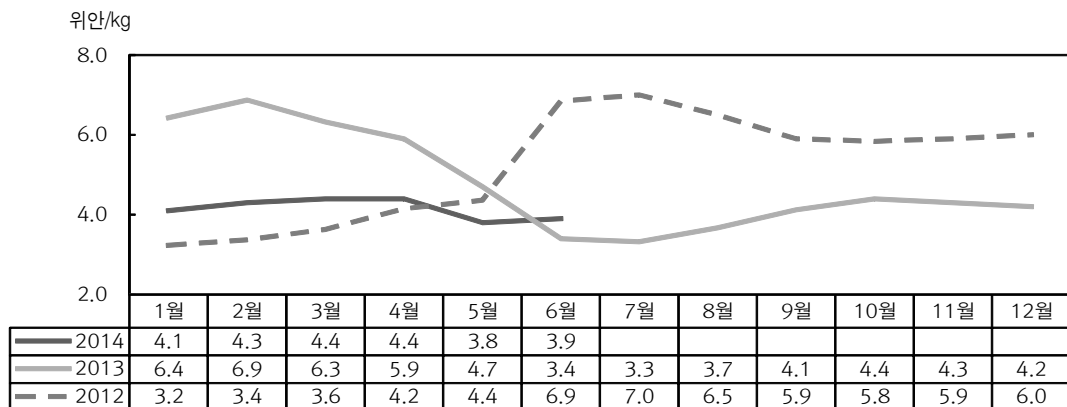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4.3. 마늘

- 마늘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0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7위안에 비해 13.6%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4.4위안, 5월 3.8위안, 6월 3.9위안으로 등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26 마늘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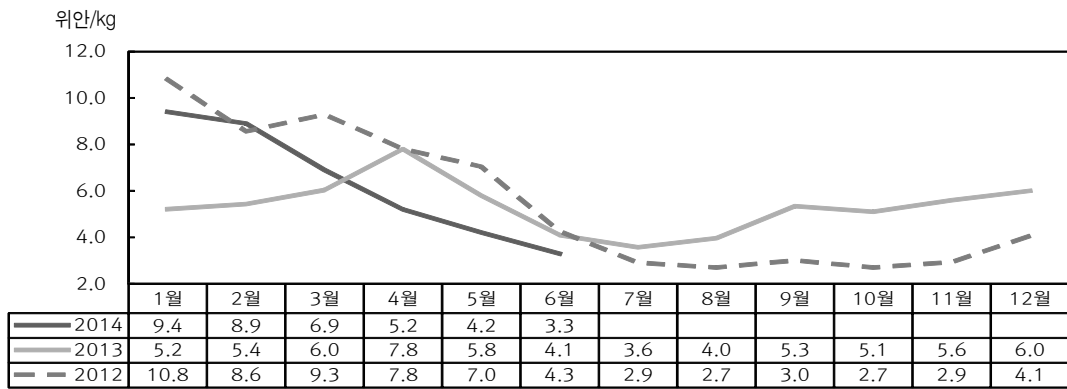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4.4. 고추

- 풋고추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4.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9위안에 비해 28.3%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5.2위안, 5월 4.2위안, 6월 3.3위안으로 하락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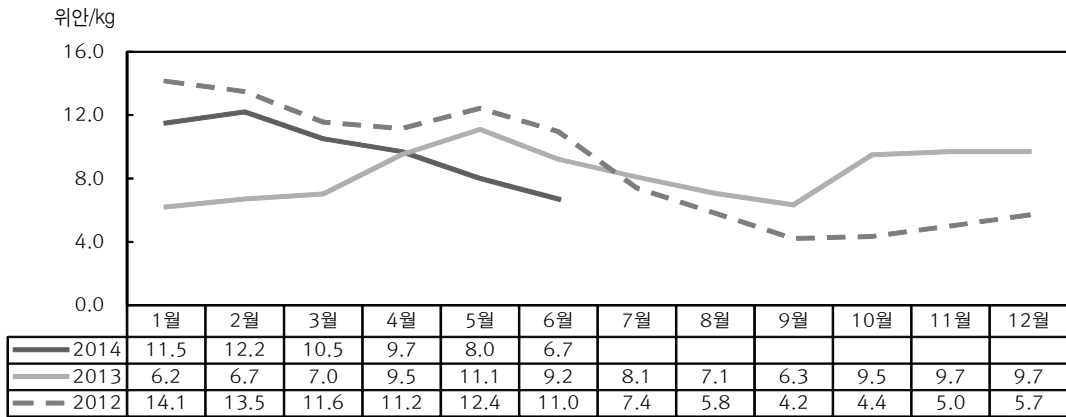
그림 27 풋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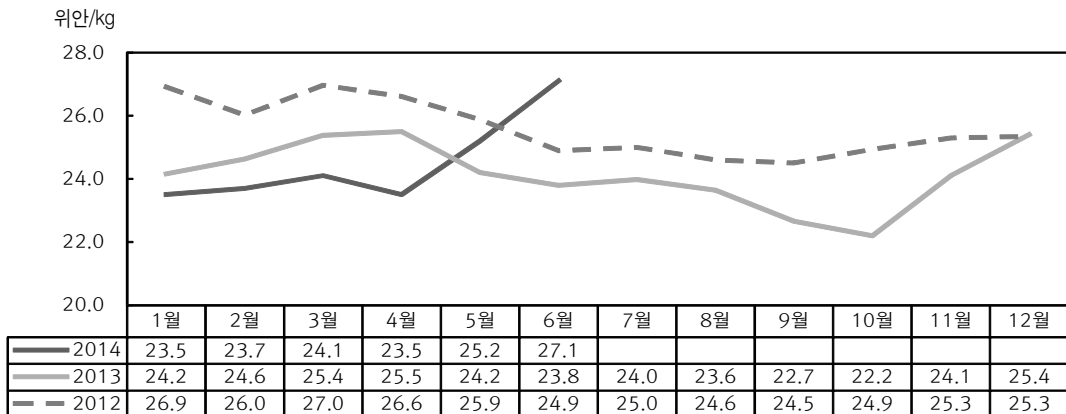
- 홍고추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8.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9.9위안에 비해 18.1%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9.7위안, 5월 8.0위안, 6월 6.7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 건고추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5.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4.5위안에 비해 3.1%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23.5위안, 5월 25.2위안, 6월 27.1위안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8 홍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그림 29 건고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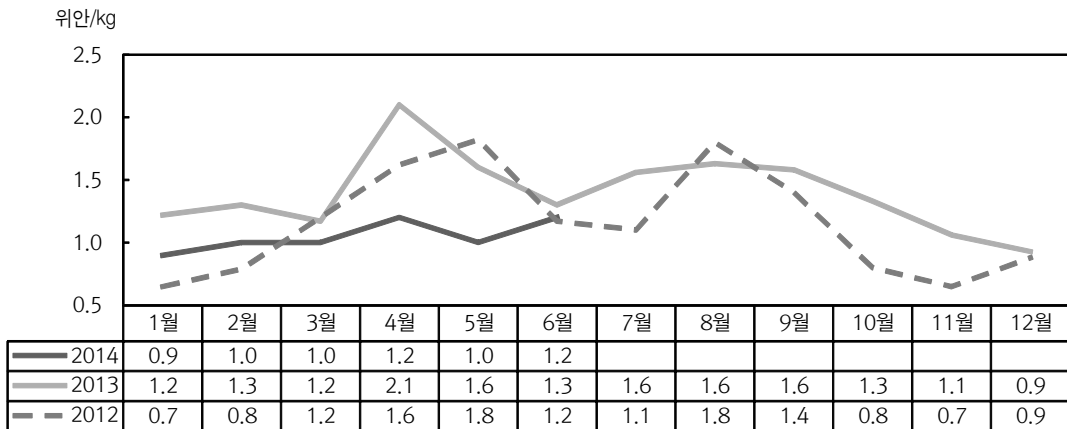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 엽근채소¹¹⁾

5.1. 배추

- 배추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7위안에 비해 32%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2위안, 5월 1.0위안, 6월 1.2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30 배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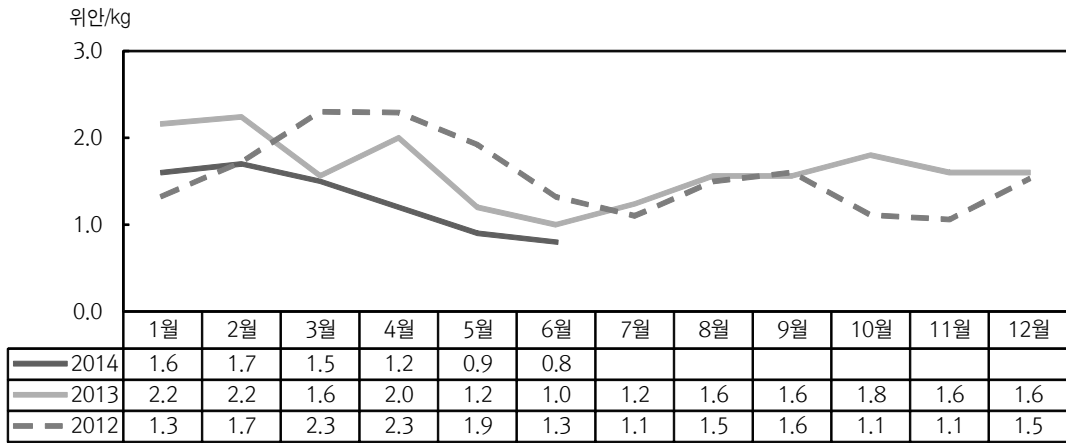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2. 양배추

- 양배추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0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4위안에 비해 31%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2위안, 5월 0.9위안, 6월 0.8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11)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그림 31 양배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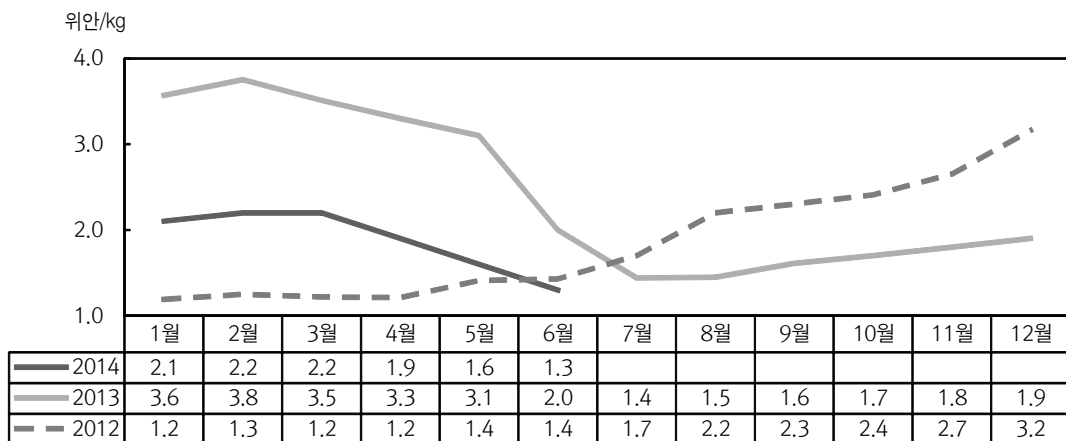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3. 양파

- 양파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8위안에 비해 42.9% 하락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1.9위안, 5월 1.6위안, 6월 1.3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임.

그림 32 양파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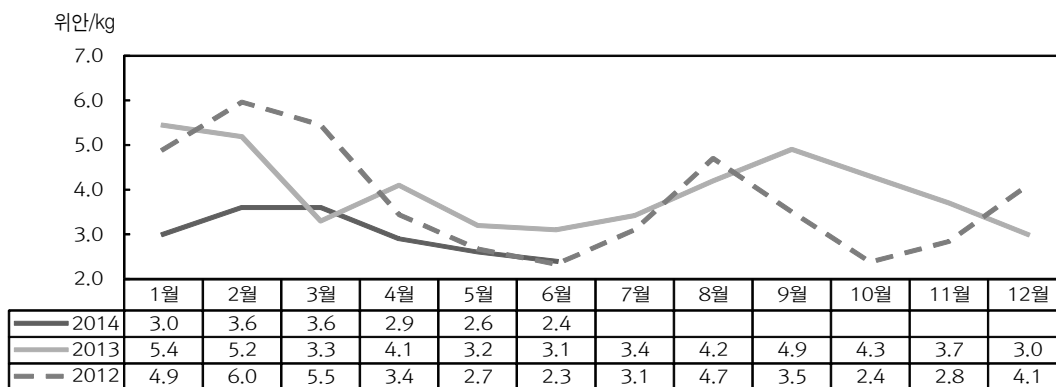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4. 상추

- 상추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5위안에 비해 24%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2.9위안, 5월 2.6위안, 6월 2.4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임.

그림 33 상추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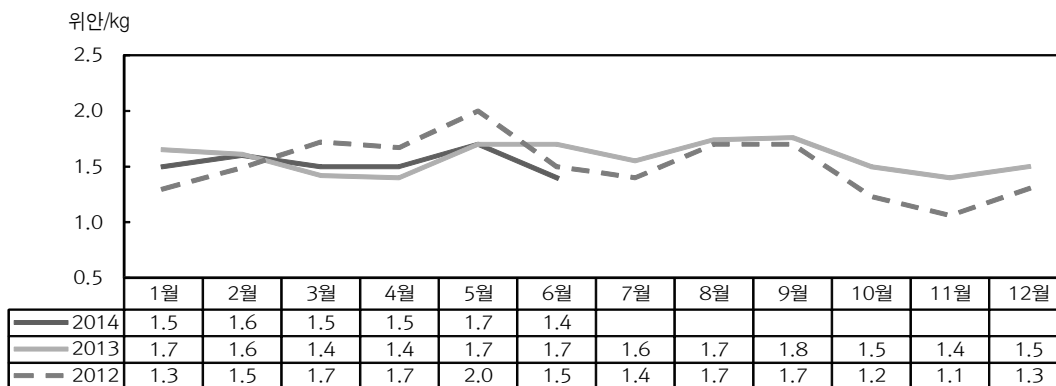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5. 무

- 무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6위안에 비해 4.2%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5위안, 5월 1.7위안, 6월 1.4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34 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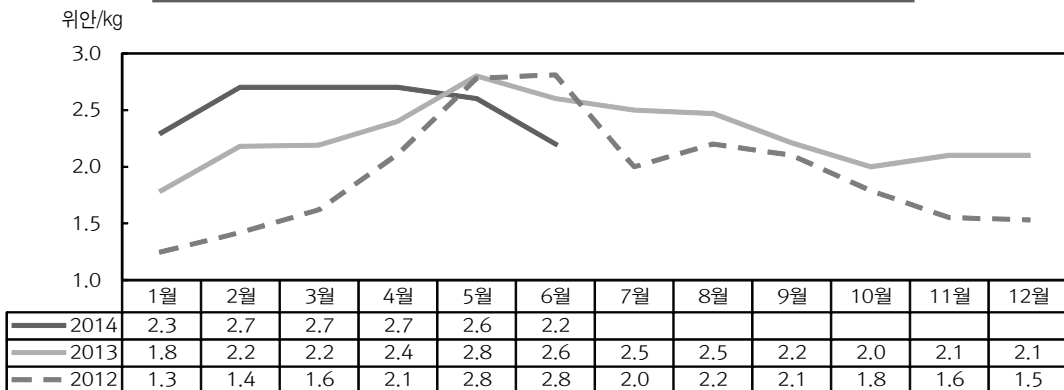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6. 당근

- 당근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5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6위안에 비해 3.9% 하락함.
- － 월별 가격은 4월 2.7위안, 5월 2.6위안, 6월 2.2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그림 35 당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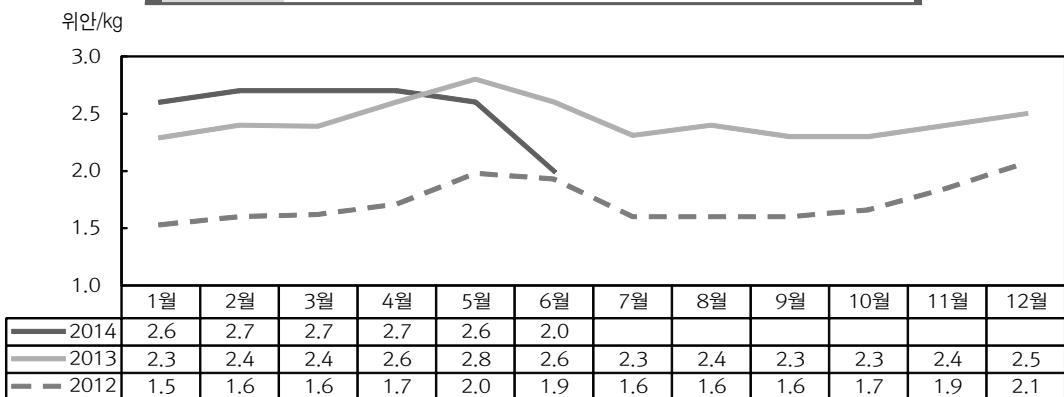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5.7. 감자

- 감자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7위안에 비해 8.8%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2.7위안, 5월 2.6위안, 6월 2.0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그림 36 감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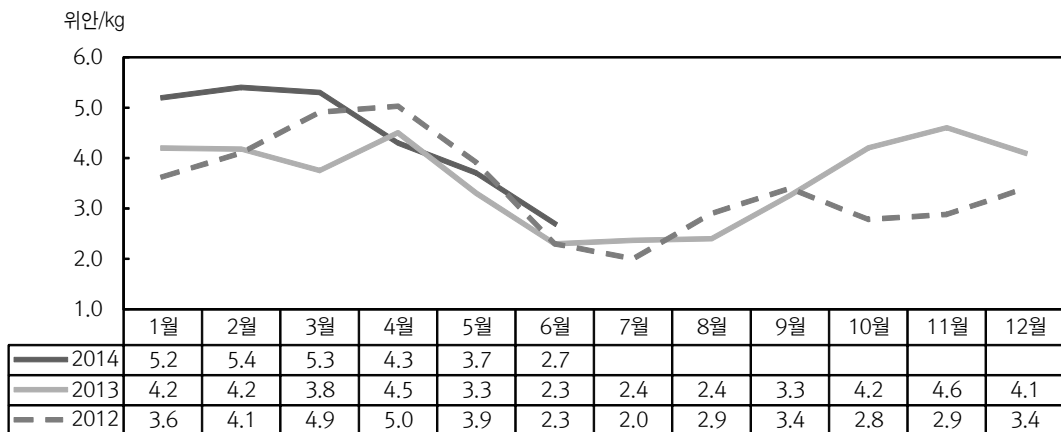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 과채¹²⁾

6.1. 토마토

- 토마토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4위안에 비해 5.9%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4.3위안, 5월 3.7위안, 6월 2.7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37 토마토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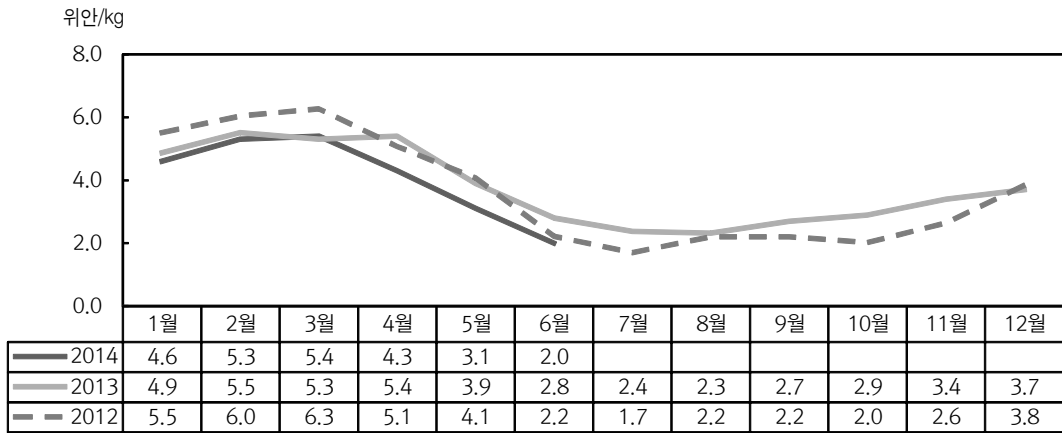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2. 가지

- 가지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0위안에 비해 22.3%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4.3위안, 5월 3.1위안, 6월 2.0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12)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그림 38 가지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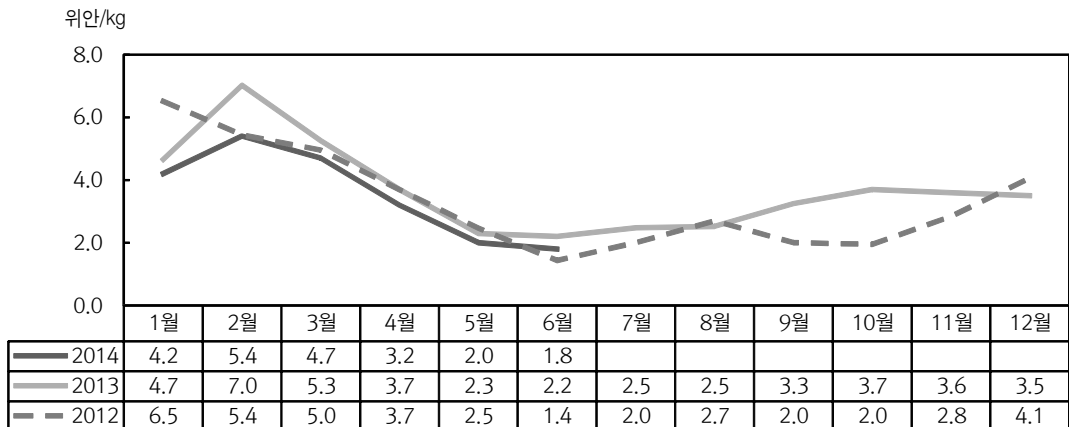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3. 오이

- 오이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2.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7위안에 비해 14.6% 하락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3.2위안, 5월 2.0위안, 6월 1.8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39 오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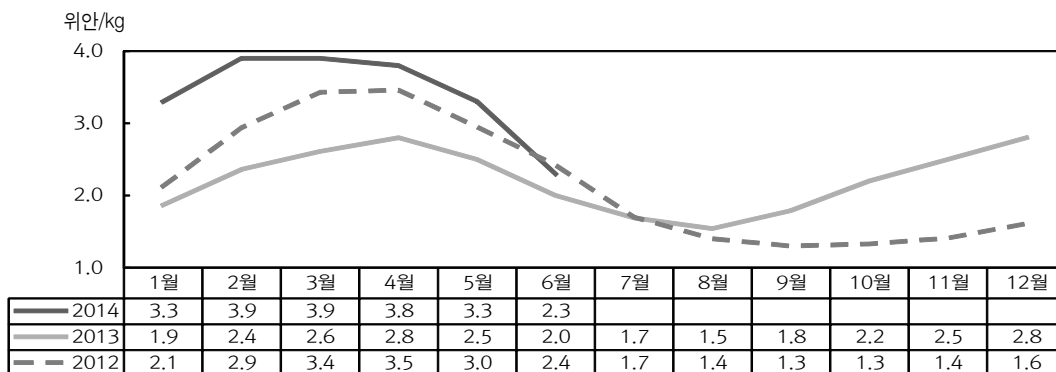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4. 호박

- 호박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2.4위안에 비해 28.8%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3.8위안, 5월 3.3위안, 6월 2.3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그림 40 호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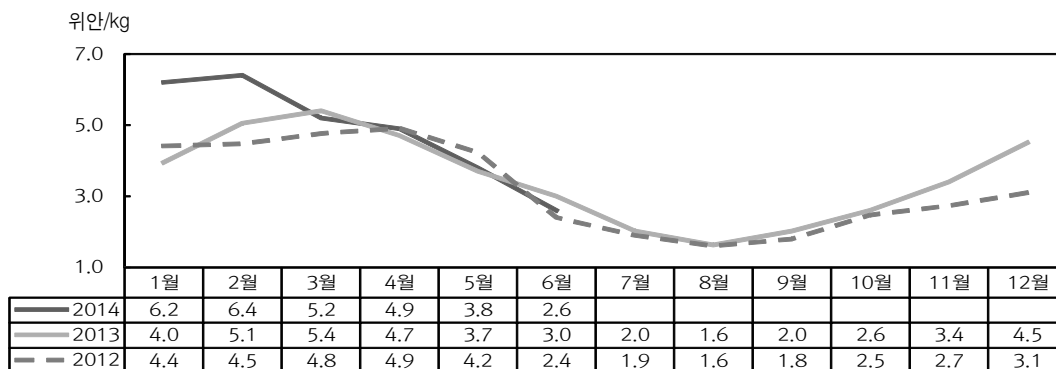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5. 수박

- 수박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3.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8위안과 같음.
- － 월별 가격은 4월 4.9위안, 5월 3.8위안, 6월 2.6위안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그림 41 수박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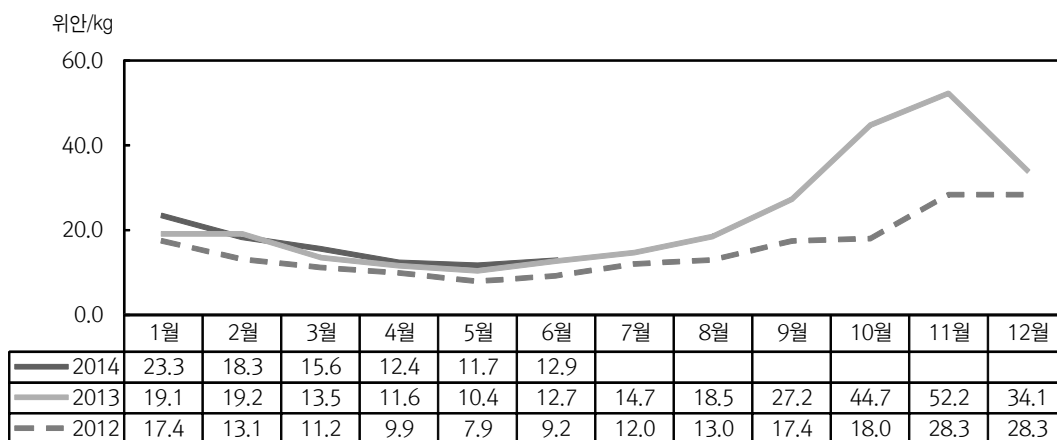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6.6. 딸기

- 딸기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2.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1.6위안에 비해 6.6%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2.4위안, 5월 11.7위안, 6월 12.9위안으로 등락을 보였음.

그림 42 딸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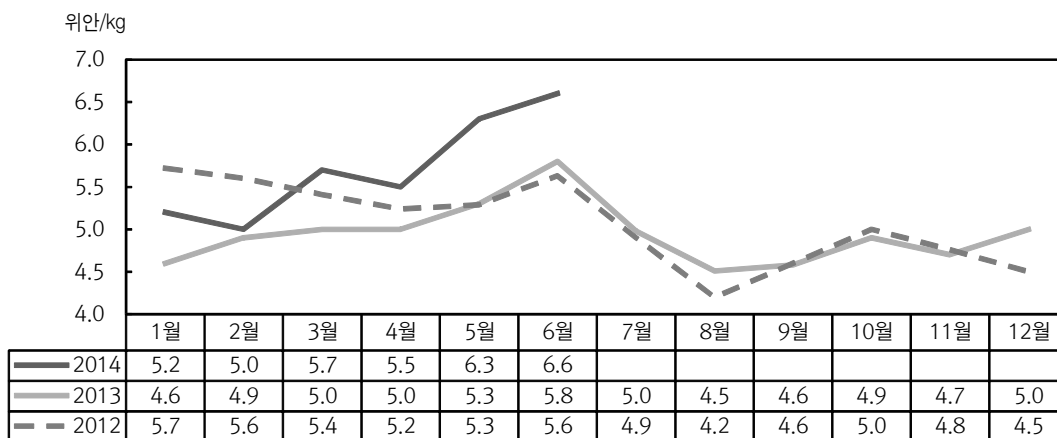
7 과일¹³⁾

7.1. 사과

- 사과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6.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4위안에 비해 14.3% 상승함.
- － 월별 가격은 4월 5.5위안, 5월 6.3위안, 6월 6.6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13)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그림 43 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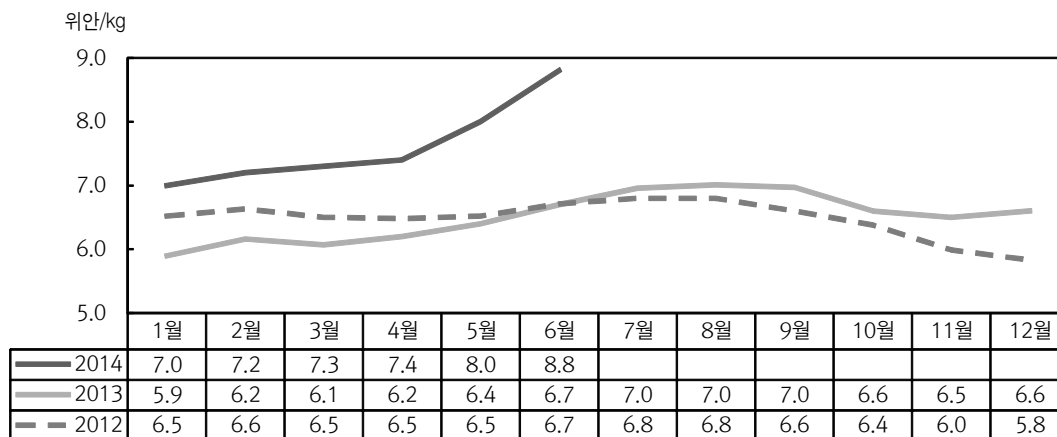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부사사과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8.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6.4위안에 비해 25.4% 상승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7.4위안, 5월 8.0위안, 6월 8.8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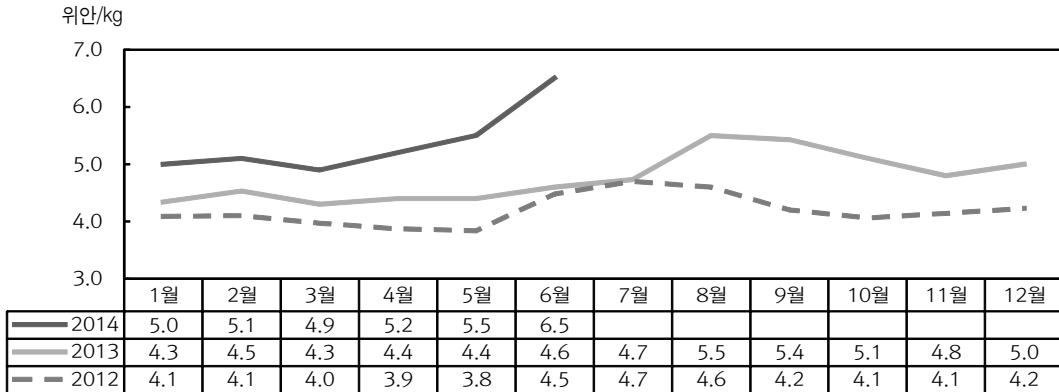
그림 44 부사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국광사과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5위안에 비해 28.4%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5.2위안, 5월 5.5위안, 6월 6.5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45 국광사과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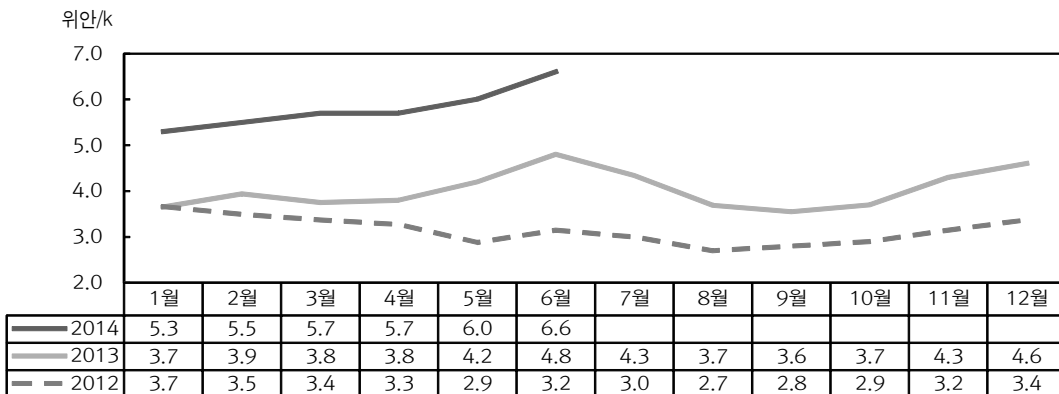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2. 배

- 배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6.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3위안에 비해 43%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5.7위안, 5월 6.0위안, 6월 6.6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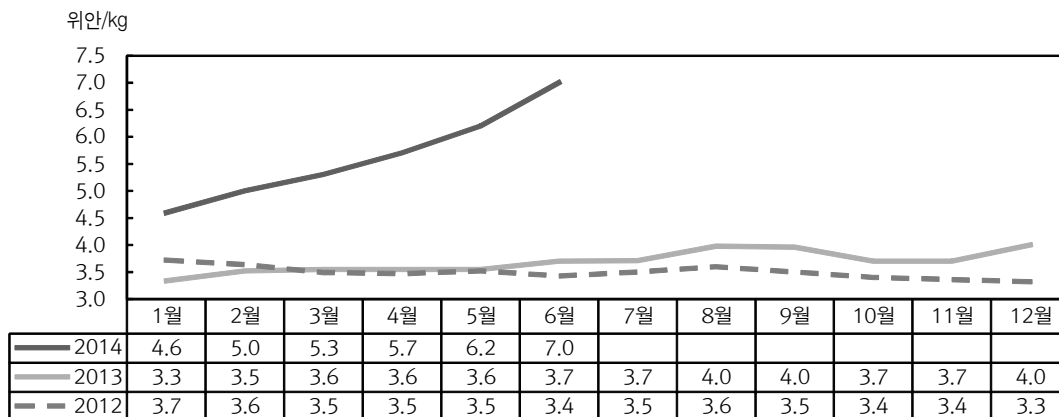
그림 46 배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압리(鴨梨)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6.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6위안에 비해 75%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5.7위안, 5월 6.2위안, 6월 7.0위안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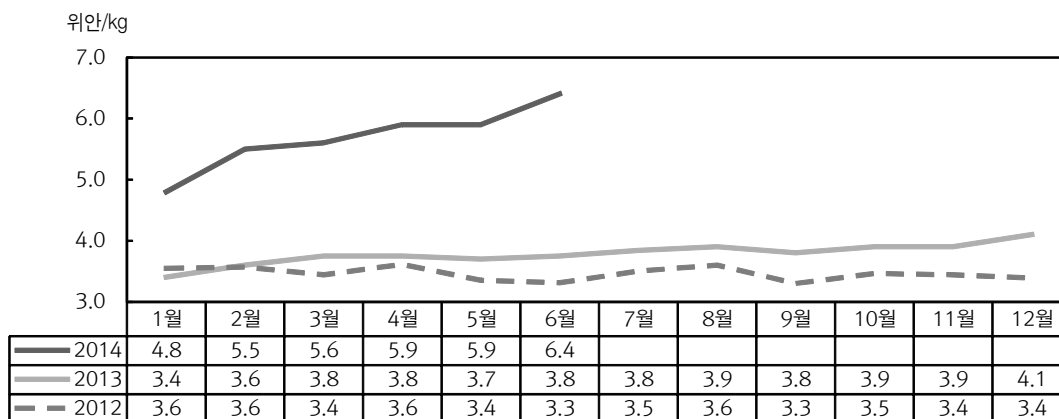
그림 47 압리(鴨梨)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설리(雪梨)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6.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7위안에 비해 62.5%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5.9위안, 5월 5.9위안, 6월 6.4위안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그림 48 설리(雪梨)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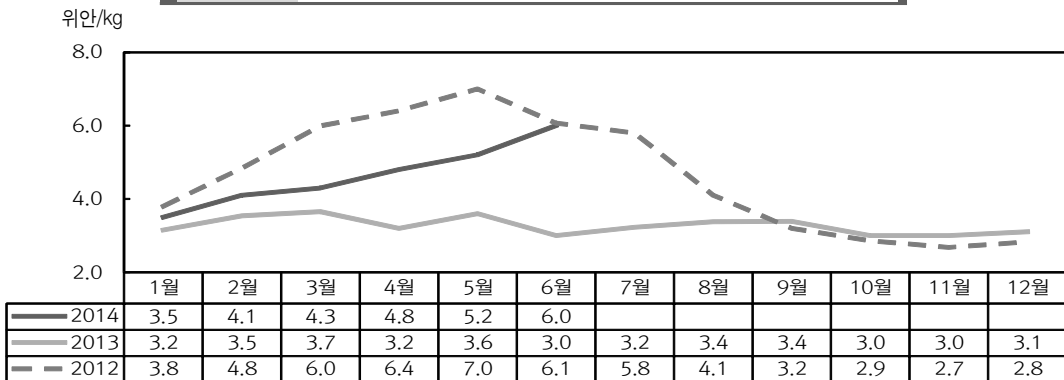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3. 감

○ 감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3 위안에 비해 63.3% 상승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4.8위안, 5월 5.2위안, 6월 6.0위안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냄.

그림 49 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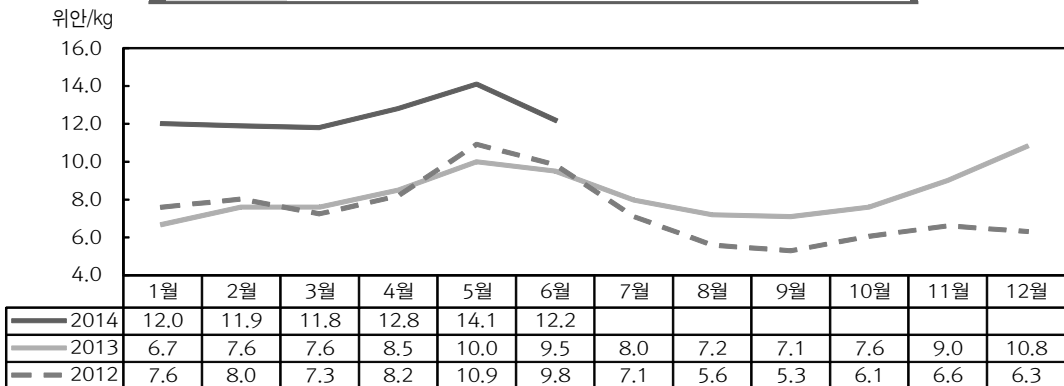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4. 포도

○ 포도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3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9.3위안에 비해 39.6% 상승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12.8위안, 5월 14.1위안, 6월 12.2위안으로 등락을 보임.

그림 50 포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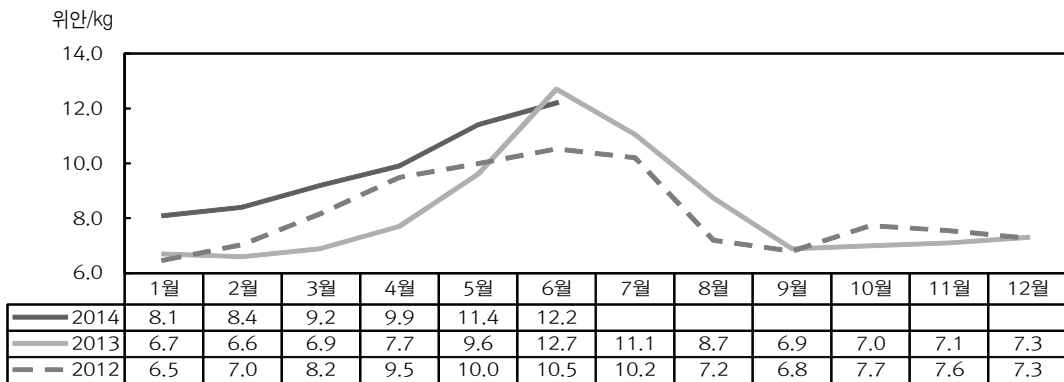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5. 키위

- 키위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1.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0위안에 비해 11.7%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9.9위안, 5월 11.4위안, 6월 12.2위안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51 키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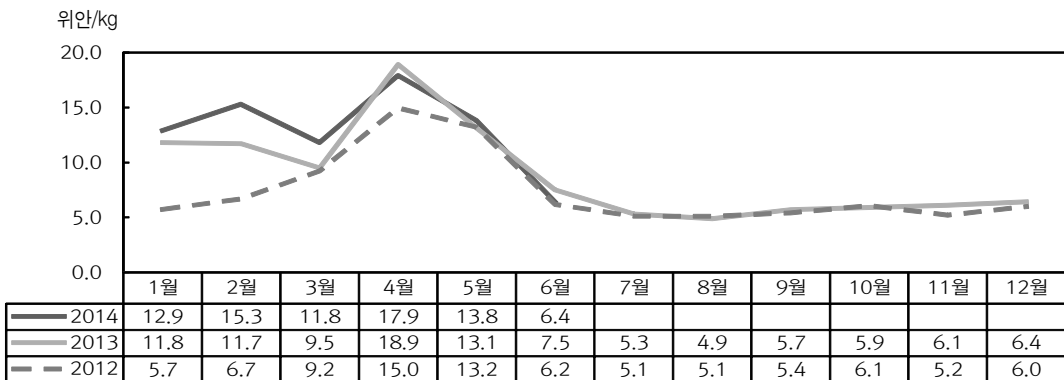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6. 복숭아

- 복숭아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2.7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3.2위안에 비해 3.5%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7.9위안, 5월 13.8위안, 6월 6.4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그림 52 복숭아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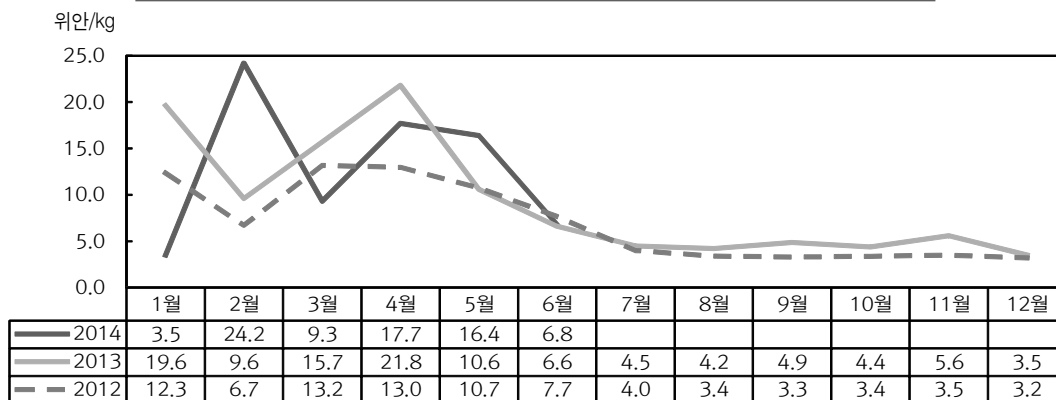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7. 자두

- 자두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3.6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3위안에 비해 4.9%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7.7위안, 5월 16.4위안, 6월 6.8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그림 53 자두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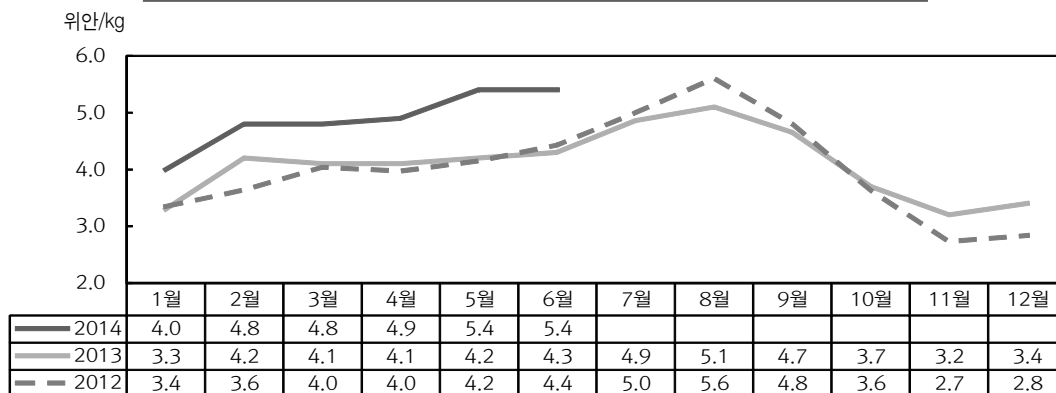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8. 감귤

- 감귤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4.2위안에 비해 22.2%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4.9위안, 5월 5.4위안, 6월 5.1위안으로 등락을 보임.

그림 54 감귤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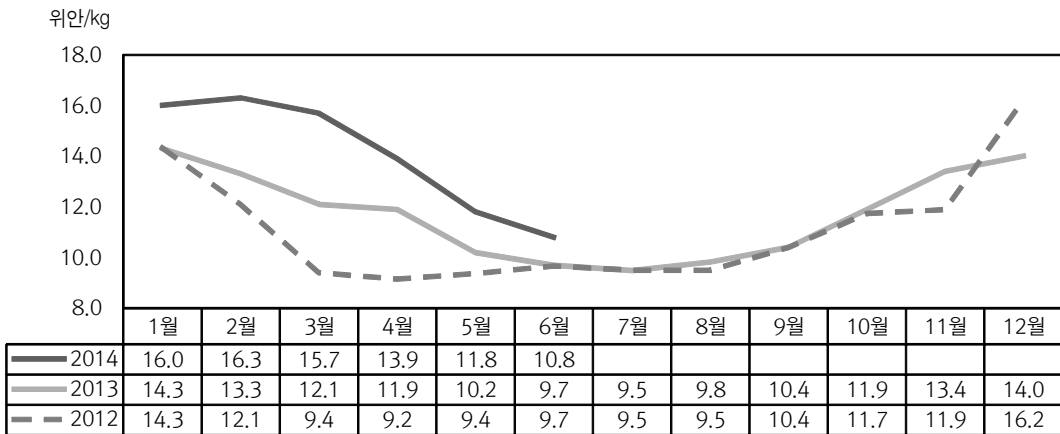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7.9. 망고

- 망고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2.2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0.6위안에 비해 14.8%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13.9위안, 5월 11.8위안, 6월 10.8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그림 55 망고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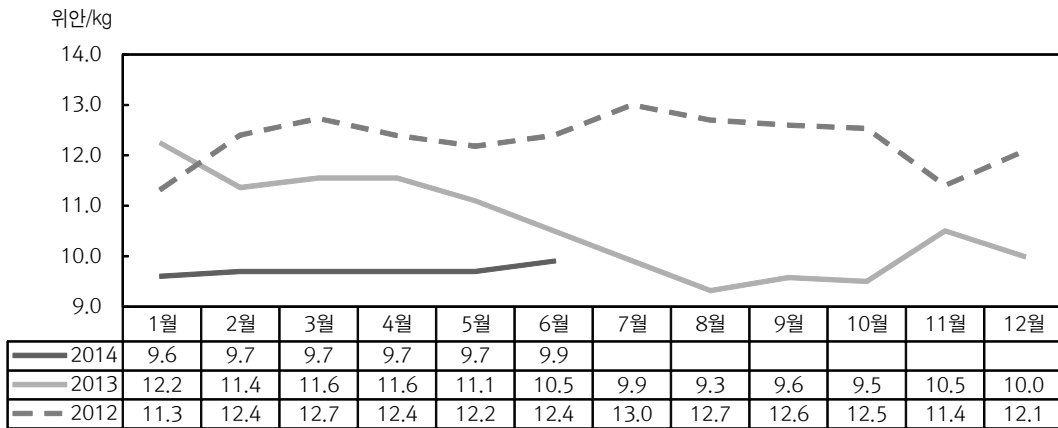
8 기타¹⁴⁾

8.1. 망콩

- 망콩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9.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1.1위안에 비해 11.6%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9.7위안, 5월 9.7위안, 6월 9.9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14) 중국 농업부(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정보(全國農產品批發時常價格信息網)에서 발표하는 “市場行情分析”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그림 56 땅콩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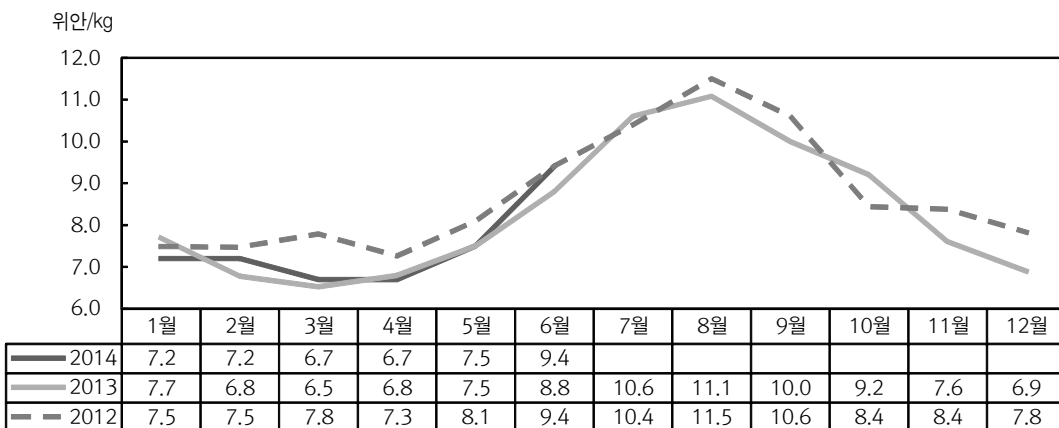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8.2. 버섯

- 양송이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7.9위안으로 전년 동기
의 7.7위안에 비해 2.16% 상승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6.7위안, 5월 7.5위안, 6월 9.4위안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음.

그림 57 양송이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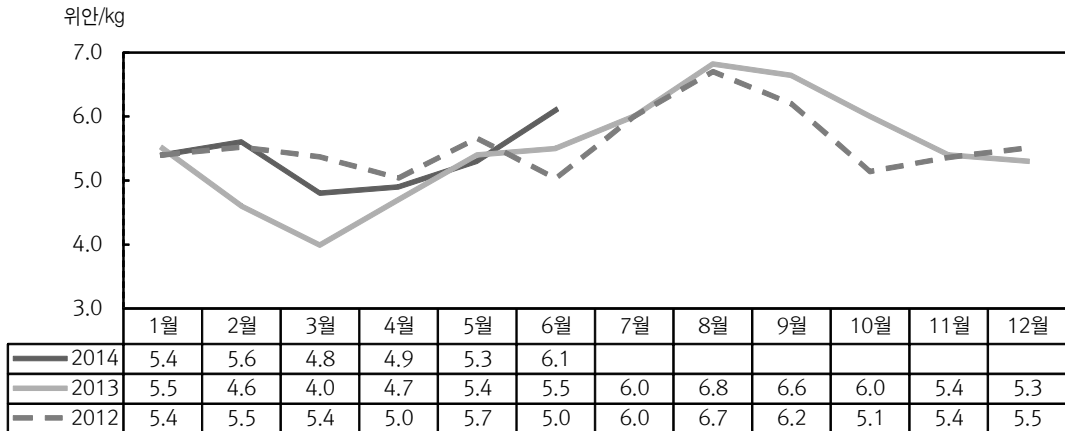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느타리버섯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5.4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5.2위안에 비해 4.5% 상승함.

－ 월별 가격은 4월 4.9위안, 5월 5.3위안, 6월 6.1위안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그림 58 느타리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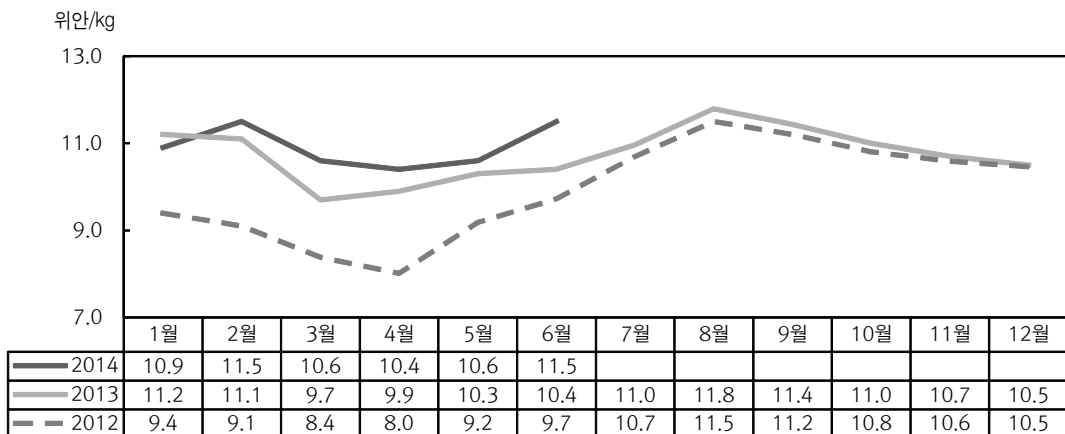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표고버섯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10.8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0.2위안에 비해 6.2% 상승하였음.

－ 월별 가격은 4월 10.4위안, 5월 10.6위안, 6월 11.5위안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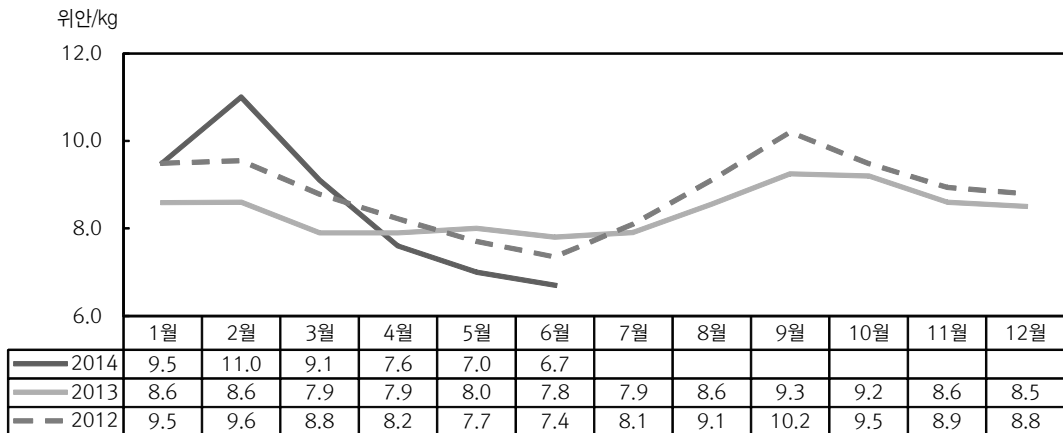
그림 59 표고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팽이버섯의 2014년 4~6월 전국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kg 당 7.1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7.9위안에 비해 10.1% 하락하였음.
- － 월별 가격은 4월 7.6위안, 5월 7.0위안, 6월 6.7위안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그림 60 팽이버섯 월별 도매시장 가격 추이(2012.1~2014.6)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참고자료

- 中華糧網數據中心. 早秈米均價走勢圖(2014年 4月·5月·6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晚秈米均價走勢圖(2014年 4月·5月·6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粳稻穀均價走勢圖(2014年 4月·5月·6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晚粳米均價走勢圖(2014年 4月·5月·6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玉米均價走勢圖(2014年 4月·5月·6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大豆均價走勢圖(2014年 4月·5月·6月)
- 中華糧網數據中心. 小麥均價走勢圖(2014年 4月·5月·6月)
- 中華糧網農業部. 2009~2013年全國畜產品, 飼料價格情況(2009年4月~2014年6月)
-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 한·중 간 농산물 무역

1.1. 2014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입 동향

1.1.1. 개황

- 2014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수산물 (HS 01류~24류) 수입액은 1,90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하였음.
- 주요 수입 품목군은 HS 03류(어패류), HS 23류(조제사료), HS 07류(채소), HS 12류(과실, 사료식물), HS 20류(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순임. 상기 5개 품목군이 전체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9%로 수입 품목의 집중도가 높음.
- HS 03류의 2014년 1~6월 수입액은 50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26.6%를 차지했음.
 - － HS 03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0303(냉동어류)과 HS 0307(연체동물)로 각각 178백만 달러와 163백만 달러이며, HS 03류 총수입액의 35.2%와 32.2%를 차지했음.
- HS 23류의 2014년 1~6월 수입액은 29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15.7%를 차지했음.
 - － HS 23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2304(대두유 추출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와

HS 2303(전분박과이와 유사한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로 각각 128백만 달러, 102백만 달러이며, HS 23류 전체 수입액의 42.8%, 34.1%를 차지했음.

○ HS 07류의 2014년 1~6월 수입액은 22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8% 감소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12%를 차지했음.

－ HS 07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0710(냉동채소)와 HS 0706(당근·순무·셀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뿌리(신선 또는 냉장)로 각각 85백만 달러, 43백만 달러이며, HS 07류 전체 수입액의 37.3%, 18.9%를 차지했음.

○ HS 12류의 2014년 1~6월 수입액은 19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4% 증가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10.5%를 차지했음.

－ HS 12류 중 수입액이 큰 것은 HS 1207(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과 HS 1211(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로 각각 60백만 달러, 40백만 달러이며, HS 12류 전체 수입액의 30.2%, 20.1%를 차지했음.

○ HS 20류의 2014년 1~6월 수입액은 15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했으며, 전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의 8.1%를 차지했음.

－ HS 20류 중 수입액이 가장 큰 것은 HS 2005(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그 밖의 채소)와 HS 2008(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로 각각 71백만 달러, 51백만 달러이며, HS 20류 전체 수입액의 46.1%, 33.1%를 차지했음.

표 1 2014년 1~6월 중국산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1	산동물	3	4	0.2	21
02	육, 식용설육	0	0	0.0	51.8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37	506	26.6	15.9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1	1	0.1	-8.8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77	101	5.3	30.8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6	19	1.0	16.2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265	228	12.0	-13.8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22	19	1.0	-14.1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2	15	0.8	30.7
10	곡물	171	28	1.5	-83.7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16	18	0.9	13.4
12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사료 식물	158	199	10.5	26.4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26	25	1.3	-3.4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1	1	0.1	0.1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7	10	0.5	45.9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65	67	3.5	2.5
17	당류와 설탕과자	46	39	2.1	-16
18	코코아, 코코아 조제품	5	7	0.4	36.1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65	67	3.5	3.3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156	154	8.1	-1.6
21	각종 조제식료품	68	72	3.8	6.3
22	음료, 알코올, 식초	15	20	1.1	38.5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346	299	15.7	-13.5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4	2	0.1	-61.1
	총 계	1,982	1,901	100.0	-4.1

주: 1. 비중은 전체 수입액 1,901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표 2 2014년 1~6월 주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품목(HS-10단위)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 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고체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0,557	128,038	6.7	6.2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128,135	94,032	4.9	-26.6
0505100000	숨털과 충전재용 깃털	72,084	92,625	4.9	28.5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47,746	51,305	2.7	7.5
2005991000	김치	59,367	50,445	2.7	-15
1207400000	참깨	28,224	38,468	2.0	31.9
1201903000	콩나물용	28,958	34,438	1.8	18.9
1902192000	당면	34,674	34,279	1.8	-1.1
1211909099	기타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32,836	33,985	1.8	3.8
2103909090	기타 소스, 혼합조미료 및 장류	28,475	30,400	1.6	6.6
1201909000	기타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247	27,330	1.4	280.8
2008119000	기타 낙화생	24,305	21,482	1.1	-13.3
1207991000	들깨	23,827	19,200	1.0	-21.3
1006201000	메현미	104,424	19,052	1.0	-81.8
0706101000	당근	26,434	18,776	1.0	-29.1
0713329000	기타 팔	10,741	18,209	1.0	65.1
2309101000	개사료	15,099	16,303	0.9	7.8
1702909000	기타 전화당 및 당류	1,479	15,602	0.8	-30.4
1302199099	기타식물성 엑스 및 펙틴질	18,167	15,330	0.8	-15.6
0709592000	표고버섯	11,303	15,024	0.8	32.9
1605599090	기타 연체동물	8,704	14,127	0.7	62.3
20089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1,808	13,926	0.7	7
0706904000	도라지	16,713	13,474	0.7	-19.4
0710809000	기타 냉동채소	12,237	13,232	0.7	8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8,554	12,653	0.7	47.9
0710802000	마늘	15,049	11,112	0.6	-30.4
2309901040	축우용	8,989	10,447	0.5	16.2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5,871	10,290	0.5	58.3
20059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6,919	9,724	0.5	41.4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712902010	고사리	10,751	9,368	0.5	-12.9
0706909000	기타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	3,663	8,848	0.5	141.5
2103909030	혼합조미료	4,850	8,371	0.4	12.4
1208900000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의 분과 조분	1,937	8,319	0.4	332.8
2308009000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9,737	8,101	0.4	-16.8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paste) (가용성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174	7,834	0.4	87.7
1905901050	쌀과자	5,723	7,718	0.4	34.2
0712391020	표고버섯	5,278	7,619	0.4	44.4
1704902090	기타 설탕과자	2,308	7,159	0.4	-14.3
0711905099	기타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9,166	6,824	0.4	-24.9
2309909090	기타	252	6,822	0.4	-
2308001000	도토리	7,136	6,710	0.4	-6
0709999000	기타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	6,494	6,570	0.3	1.2
20081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3,533	6,222	0.3	76.1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6,861	6,197	0.3	-9.7
1605219000	기타 새우류	10,487	5,954	0.3	-43.2
1702301000	포도당	4,536	5,560	0.3	22.6
1905901090	기타 베이커리제품 및 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등	5,882	5,551	0.3	-6.5
1902199000	기타 파스타와 쿠푸스쿠우스	4,379	5,464	0.3	24.8
1212993000	꽃가루	3,245	5,354	0.3	65
2308003000	목화씨껍질	6,514	5,241	0.3	-19.5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3,068	5,212	0.3	68.9
1008299000	기타 메밀·밀리트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4,292	5,132	0.3	19.6
0603140000	국화	4,637	5,108	0.3	7.9
160419909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4,418	4,986	0.3	12.9
16023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6,423	4,980	0.3	-22.5
0712902030	파	6,384	4,923	0.3	-22.9
0910111000	신선·냉장한 것	2,477	4,912	0.3	92.1
0811901000	밤	6,512	4,832	0.3	-25.8
2005512000	팔	4,392	4,789	0.3	9
1605542091	조미오징어	5,110	4,753	0.3	-9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818	4,398	0.2	15.2
1602329000	기타 닭의 것	3,816	4,244	0.2	11.2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1212999000	기타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염인티부스새티범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280	4,241	0.2	29.3
1605542099	기타 갑오징어와 오징어	4,124	4,228	0.2	2.5
1209919000	기타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2,785	4,227	0.2	51.8
2003104000	양송이버섯	4,992	4,203	0.2	-15.8
1302390000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430	4,191	0.2	72.5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yeast)와 그밖의 효모추출물(extract)	4,241	4,145	0.2	-2.3
2203000000	맥주	3,516	4,115	0.2	15.7
0811909000	기타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5,546	4,062	0.2	-26.8
2008191000	밤	3,853	4,044	0.2	5
0602902099	기타 산림수	2,803	4,033	0.2	43.9
2309901099	기타 사료용 조제품	3,159	4,001	0.2	26.5
2303301000	사료용	4,399	3,982	0.2	-9.5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901	3,975	0.2	-20.3
160556109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3,011	3,905	0.2	29.7
0712902099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3,421	3,888	0.2	14.3
2106909050	향미(香味)용조제품	4,153	3,849	0.2	-7.4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10,356	3,698	0.2	-64.3
2106909099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4,117	3,566	0.2	-5.4
160290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4,471	3,555	0.2	-20.5
2005592000	팥	2,417	3,416	0.2	41.4
2106109020	단백질농축물	2,683	3,403	0.2	21.1
1704909000	기타 설탕과자	2,140	3,369	0.2	10.9
0711400000	오이류	2,703	3,340	0.2	23.6
1212992000	구약구(kuyaku)뿌리	4,039	3,247	0.2	-19.6
2003901000	표고버섯	3,093	3,220	0.2	4.1
0710806000	송이버섯	2,176	3,101	0.2	42.5
2001909090	기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867	3,063	0.2	6.9
1702903000	맥아당	831	2,980	0.2	258.6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2007991000	잼·과실젤리 및 마멀레이드(marmalade)	2,522	2,943	0.2	16.7
1604199010	쥬치포	3,176	2,776	0.1	-12.6
1517909000	기타	1,884	2,728	0.1	44.8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978	2,702	0.1	17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1,446	2,669	0.1	84.6
2009790000	기타 사과쥬스	2,783	2,619	0.1	-5.9
0713319000	기타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3,112	2,610	0.1	-16.3
0602901010	난초	2,358	2,598	0.1	10.2
1107100000	볶지않은 것	2,553	2,575	0.1	0.9
160553900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혼합	2,114	2,554	0.1	20.8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5,124	2,460	0.1	-52
160420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956	2,453	0.1	25.4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16,313	2,402	0.1	-22.6
2208906000	고량주	1,909	2,325	0.1	21.8
16056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1,896	2,293	0.1	21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726	2,273	0.1	31.7
0507901110	전지(全枝)	931	2,266	0.1	143.4
1901909099	기타 쌀·보리 가루의 것	2,726	2,223	0.1	-18.4
1704902010	드롭스(drops)	1,969	2,126	0.1	8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1,084	2,115	0.1	95.1
2103909040	메주	2,234	2,113	0.1	-5.4
0813401000	감	2,456	2,093	0.1	-14.8
2306903000	옥수수씨 눈에서 나온 것	4,375	2,069	0.1	-52.7
1212212020	염장한 것	2,115	2,047	0.1	-3.2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29	2,044	0.1	-12.2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52	2,002	0.1	-2.4
1302199010	알로에수액과 추출물(extract)	2,102	1,985	0.1	-5.6
2102103000	제빵효모	1,886	1,980	0.1	5
0712902060	양배추	1,521	1,942	0.1	27.7
1108199000	기타 전분	1,877	1,925	0.1	2.7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1,429	1,880	0.1	31.5
0106903010	갯지렁이	1,521	1,867	0.1	22.8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511999040	원피의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780	1,853	0.1	137.7
2309901030	여류용	828	1,813	0.1	119
1302312000	가루한천	705	1,802	0.1	155.8
2101309000	기타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1,236	1,790	0.1	44.9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1,070	1,726	0.1	61.3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것)	1,801	1,687	0.1	-6.3
2008111000	피넛버터	1,749	1,627	0.1	-7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2,331	1,624	0.1	-30.3
0710801000	양파	1,431	1,620	0.1	13.2
0712902040	당근	1,579	1,619	0.1	2.5
0602909090	기타 산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1,474	1,603	0.1	8.7
2103901010	된장	1,374	1,600	0.1	16.5
2004909000	그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490	1,529	0.1	-37.9
2005910000	죽순	1,415	1,522	0.1	7.6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1,309	1,455	0.1	11.2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1,054	1,422	0.1	34.8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31	1,414	0.1	14.9
0713339000	기타 강낭콩(흰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불가리스)	1,387	1,410	0.1	1.7
1605529000	기타	770	1,391	0.1	80.7
1518009090	기타	822	1,388	0.1	68.8
2008309000	기타 감귤류 과일	1,689	1,378	0.1	-18.4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452	1,365	0.1	-5.9
1904109000	기타 곡물 및 조제식료품	1,316	1,350	0.1	2.6
0706901000	무	1,652	1,330	0.1	-23.1
1905901010	빵		1,281	0.1	2,490.60
0712902020	무	1,257	1,279	0.1	1.7
1211906000	감초	1,429	1,245	0.1	-12.9
0710290000	기타 채두류	1,432	1,236	0.1	-13.7
1605559000	기타		1,236	0.1	64.2
1007900000	비종자 수수	1,688	1,191	0.1	-29.5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1,113	1,170	0.1	5.1
0106191000	개	823	1,167	0.1	41.9
1209913000	고추·단고추와 착색단 고추류의 종자	708	1,133	0.1	59.9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1207999000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81	1,104	0.1	-7.6
2009892000	채소주스	1,705	1,095	0.1	-35
0710804000	당근	907	1,079	0.1	19
1211903000	원지(遠志)	505	1,075	0.1	112.9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1,011	1,072	0.1	6.1
2202909000	기타 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18,671	1,043	0.1	-38.4
0712200000	양파	973	1,033	0.1	6.2
	총계	1,334,491	1,321,844	69.5	-0.9

주: 1.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HS 03류를 제외)

2. 비중은 전체 수입액 1,901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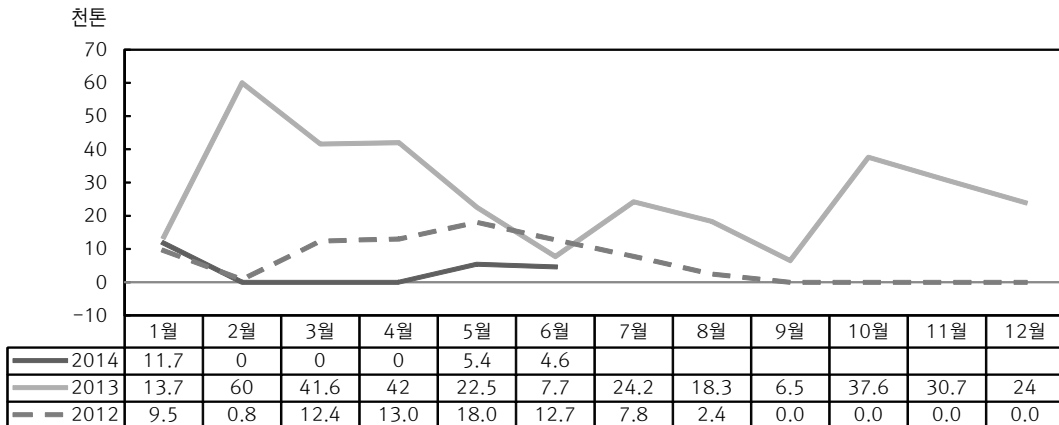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1.1.2.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 동향

◆ 쌀

- 2014년 1~6월 중국산 쌀 수입량은 21.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8.4%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19.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8.2% 감소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0.0백만 달러, 5.0백만 달러, 4.2백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1~6월 메현미(HS1006201000)의 수입량이 21.7천 톤으로 전체 중국산 쌀 수입량의 100%를 차지했음.

그림 1 한국의 중국산 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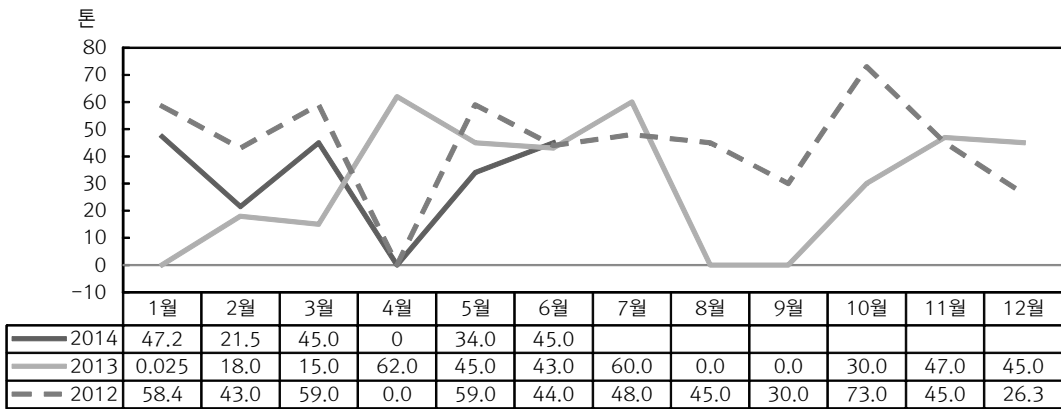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옥수수

- 2013년 1~6월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192.7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18.3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1% 증가하였음. 4, 5, 6월별 수입액은 각각 0.0만 달러, 1.4만 달러, 2.0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가루(HS1102200000), 종자용 옥수수(HS1005100000)의 수입량이 각각 169톤과 23.7톤으로 각각 전체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의 87.7%, 12.3%를 차지했음.

그림 2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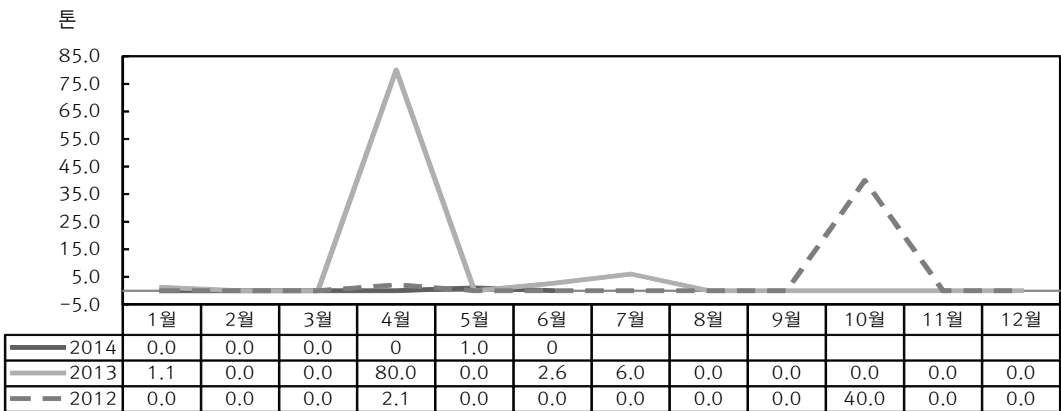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밀

- 2014년 1~6월 중국산 밀 수입량은 1.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8.8%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2% 감소하였음. 4,5,6월별 수입액은 각각 0.0만 달러, 0.0만 달러, 0.0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보면 밀가루(HS1101999090)의 수입량이 1.0톤으로 전체 중국산 밀 수입량의 100%를 차지했음.

그림 3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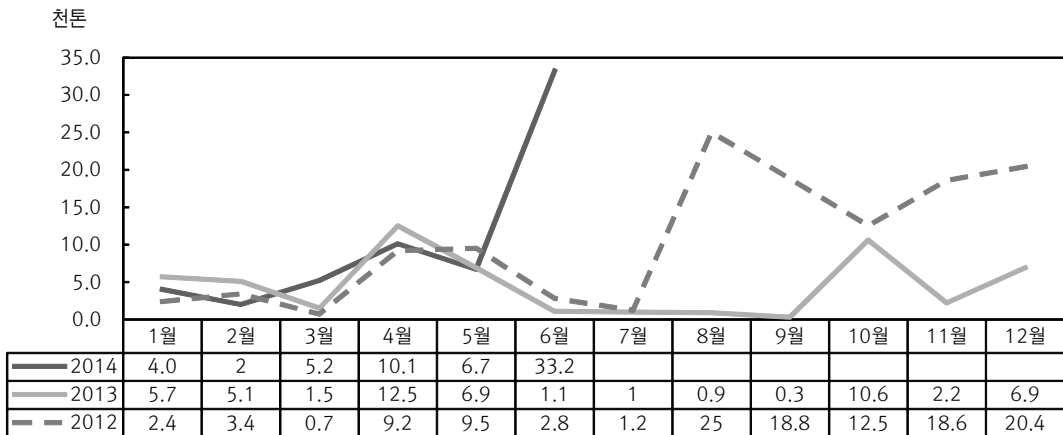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대두

- 2014년 1~6월 중국산 대두 수입량은 61.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5.4% 증가했고, 수입액도 63.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6% 증가하였음. 4,5,6월별 수입액은 각각 13.0백만 달러, 8.4백만 달러, 28.2백만 달러임.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대두 기타(기타)(HS1201909000) 32.6천 톤, 대두(콩나물용, 기타) (HS1201903000) 27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대두 수입량의 53.3%, 44.1%를 차지함.

그림 4 한국의 중국산 대두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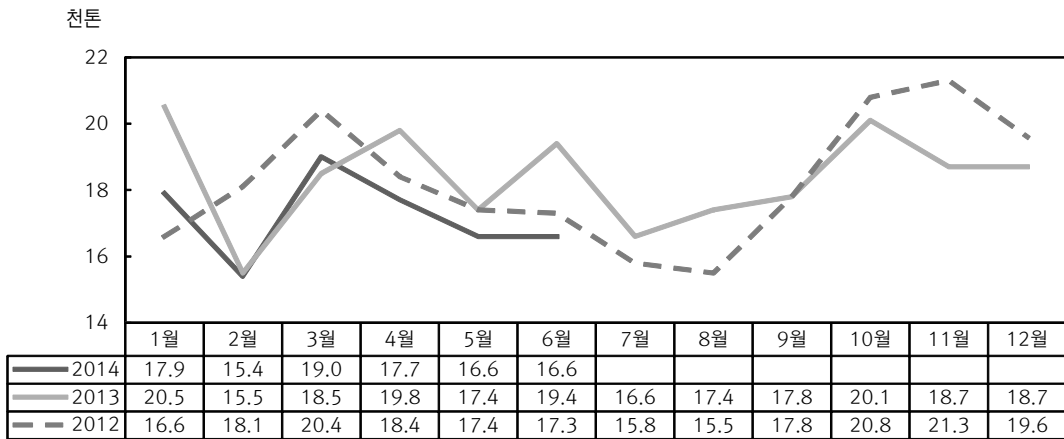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김치

- 2014년 1~6월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103.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감소하고 수입액은 50.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하였음. 4,5,6월별 수입액은 각각 9.1백만 달러, 7.9백만 달러, 7.8백만 달러임.

그림 5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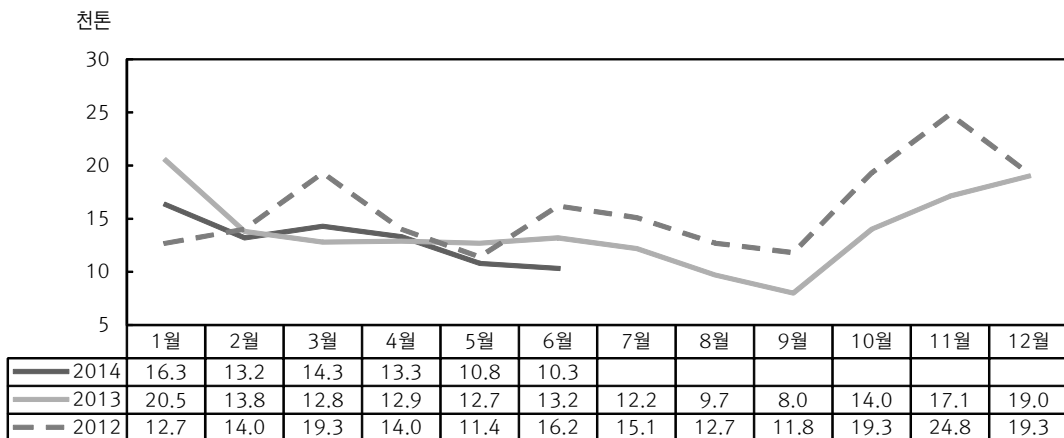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고추

- 2014년 1~6월 중국산 고추 수입량은 78.3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했고, 수입액은 57.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음. 4,5,6월별 수입액은 각각 9.8백만 달러, 8.0백만 달러, 8.1백만 달러임.

그림 6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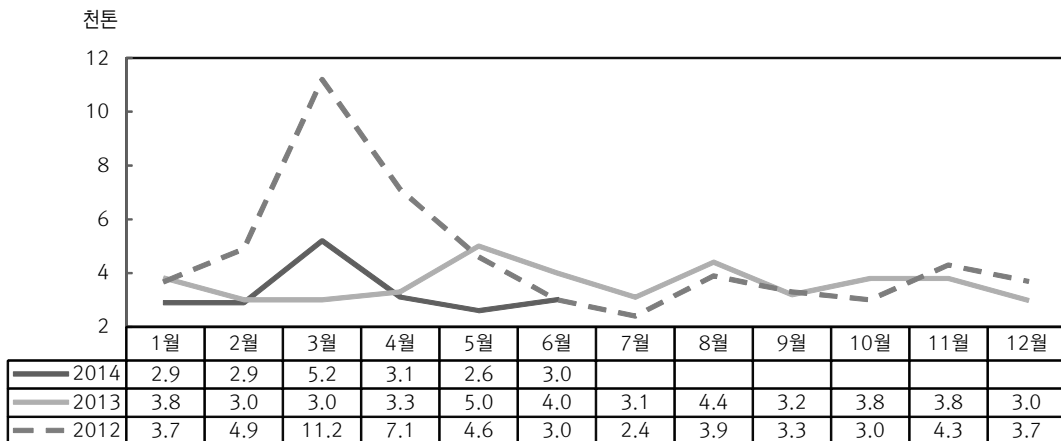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냉동)(HS0710807000) 75.8천 톤, 고추류(건조한 것,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HS0904210000) 1.4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고추 수입량의 96.8%, 1.8%를 차지함.

◆ 마늘

- 2014년 1~6월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19.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9% 감소했으며, 수입액도 13.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4% 감소하였음. 4,5,6월별 수입액은 각각 2.0백만 달러, 1.8백만 달러, 2.0백만 달러임.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마늘(냉동)(HS0710802000) 16.8천 톤, 마늘(식초, 초산 조제)(HS2001909060) 2.0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마늘 수입량의 85.3%, 10.2%를 차지함.

그림 7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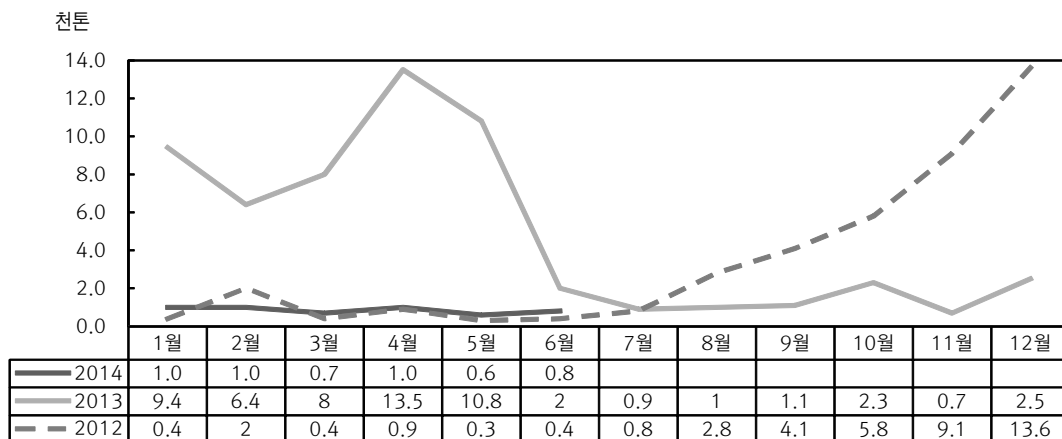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양파

- 2014년 1~6월 중국산 양파 수입량은 5.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9.7% 감소했고, 수입액도 3.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9.2% 감소하였음. 4,5,6월별 수입액은 각각 0.6백만 달러, 0.4백만 달러, 0.5백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양파(냉동)(HS0710801000) 2.9천 톤, 양파(신선/냉장)(HS0703101000) 1.6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양파 수입량의 55.7%, 30.8%를 차지함.

그림 8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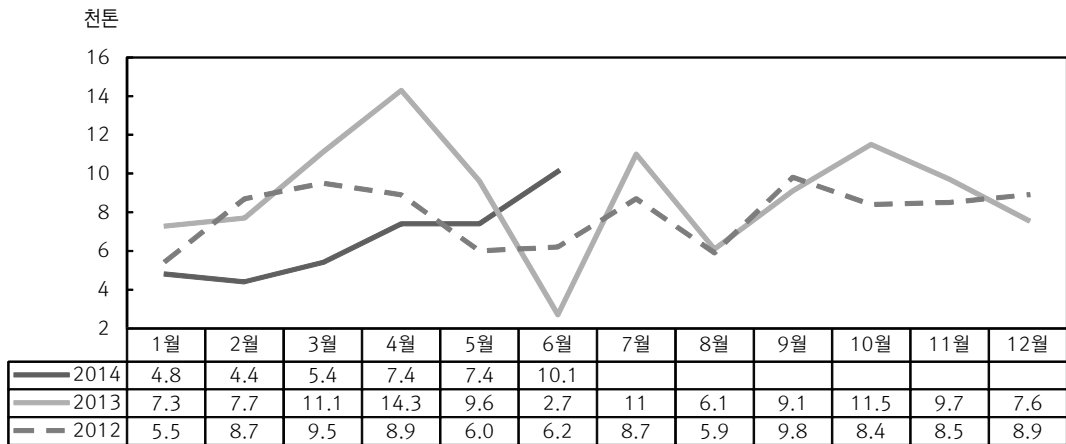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당근

- 2014년 1~6월 중국산 당근 수입량은 39.4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3% 감소했고, 수입액도 21.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9% 감소하였음. 4,5,6월별 수입액은 각각 4.0백만 달러, 3.8백만 달러, 4.8백만 달러임.
- － HS-10단위 세번 품목별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당근(신선/냉장)(HS0706101000) 37.2천 톤, 당근(냉동)(HS0710804000) 1.6천 톤 순이며, 각각 전체 중국산 당근 수입량의 94.4%, 4.1%를 차지함.

그림 9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1.2. 2014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동향

1.2.1. 개황

- 2014년 1~6월 한국의 대 중국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출액은 515.3백만 달러임.
- 주요 수출 품목군은 HS 03류(어패류), 19류(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1류(각종 조제식료품), 17류(당류·설탕과자), 22류(음료, 알코올, 식초) 순임.
 - 상기 5개 품목군이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4%로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높음.
- HS 03류의 2014년 1~6월 수출액은 112.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21.9%를 차지했음.
 - HS 03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0303(냉동어류)과 HS 0307(연체동물)로 각각 78백만 달러, 18.5백만 달러이며, HS 03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의 69.1%, 16.4%를 차지했음.
- HS 19류의 2014년 1~6월 수출액은 105.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20.4%를 차지했음.

- HS 19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1905(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와 HS 1901(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로 각각 45.5백만 달러, 32.3백만 달러이며, HS 19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에서 각각 43.3%, 30.7%를 차지했음.
- HS 21류의 2014년 1~6월 수출액은 78.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5.2%를 차지했음.
 - HS 21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2106(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과 HS 2101(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으로 각각 29.1백만 달러, 28백만 달러이며, HS 21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의 37.1%, 35.7%를 차지했음.
- HS 17류의 2014년도 1~6월 수출액은 57.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8% 감소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11.2%를 차지했음.
 - HS 17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1701(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HS 1704(설탕과자)로 각각 47.2백만 달러, 6.3백만 달러임. 또한 HS 17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5%, 6.2%임.
- HS 22류의 2014년 1~6월 수출액은 44.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으며,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8.7%를 차지했음.
 - HS 22류 중 수출액이 큰 것은 HS 2202(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향을 첨가한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HS 2203(맥주)로 각각 31.2백만 달러, 6.2백만 달러이며, HS 22류의 대 중국 수출 총액의 69.5%, 13.8%를 각각 차지했음.

표 3 2014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HS 01류~24류)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01	산동물	3	1	0.0	-61.8
02	육, 식용설육	2,761	392	0.1	-85.8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02,272	112,806	21.9	10.3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5,395	9,810	1.9	81.8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19,150	15,749	3.1	-17.8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6,326	2,944	0.6	-53.5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845	170	0.0	-79.8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52	47	0.0	-69.4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545	2,271	0.4	47.1
10	곡물	0	0	0.0	-57.9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757	782	0.2	3.4
12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식물, 짚·사료식물	22,135	25,134	4.9	13.6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3,177	2,861	0.6	-10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3	21	0.0	668.4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2,802	6,116	1.2	-52.2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9,160	17,055	3.3	-11
17	당류와 설탕과자	67,126	57,881	11.2	-13.8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4,449	3,394	0.7	-23.7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98,398	105,184	20.4	6.9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14,501	17,653	3.4	21.7
21	각종 조제식료품	72,536	78,478	15.2	8.2
22	음료, 알코올, 식초	42,647	44,941	8.7	5.4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3,464	2,873	0.6	-17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8,281	8,742	1.7	-52.2
	총 계	517,885	515,305	100	-0.5

주: 1. 비중은 전체 수출액 515,3백 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표 4 2014년 1~6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 품목(HS-10단위)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대비)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1701990000	자당	59,997	47,169	9.2	-21.4
1901101010	조제분유	29,403	29,396	5.7	0
1902301010	라면	20,391	19,025	3.7	-6.7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16,313	17,700	3.4	8.5
2106904010	김	12,467	17,260	3.3	39.7
1905901090	기타 베이커리제품 및 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등	5,882	17,121	3.3	-10.3
2101111000	인스턴트커피	1,004	16,443	3.2	264.8
2202909000	기타 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18,671	15,816	3.1	-15.2
0505100000	숨털과 충전재용 깃털	72,084	14,975	2.9	-17.5
2202902000	과즙음료	10,455	12,293	2.4	17.6
2008301000	유자	10,175	11,136	2.2	9.9
2106909099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6,394	8,062	1.6	26.1
2203000000	맥주	4,007	6,189	1.2	54.5
2103909090	기타 소스, 혼합조미료 및 장류	28,475	6,059	1.2	26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6,238	5,443	1.1	-12.7
1905909090	기타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4,830	5,337	1.0	10.6
040150900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밀크와 크림(냉동크림 제외)	2,363	4,659	0.9	97.2
1905310000	스위트비스킷	1,086	4,579	0.9	321.7
2105001090	기타 아이스크림	3,033	4,427	0.9	45.9
2208904000	소주	3,953	4,393	0.9	11.1
1702909000	기타 전화당 및 당류	22,421	4,264	0.8	188.2
1604203000	생선소시지	525	3,679	0.7	600.6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의조제품	16,936	3,326	0.6	-80.3
1704902090	기타 설탕과자	8,357	3,141	0.6	36.1
200899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1,808	2,679	0.5	57.5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799	2,254	0.4	182.1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이하인 것	503	2,246	0.4	346.4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수(水), 글리세롤폐액(廢液)	4,429	2,192	0.4	-50.5
1212212020	염장한 것	2,115	2,185	0.4	-35.8

HS 코드	품목명	2013년 1~6월	2014년 1~6월		
		금액	금액	비중	증가율
1209912000	무종자	2,172	2,160	0.4	-0.5
0602901010	난초	2,358	2,142	0.4	-65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52	2,088	0.4	547.3
1704909000	기타	2,140	2,034	0.4	-5
1604204010	게맛의 것	1,214	2,013	0.4	65.8
2103901030	고추장	1,000	2,003	0.4	115.6
160420409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165	1,998	0.4	71.5
1902301090	기타 파스타	1,212	1,803	0.3	51.3
0402999000	지방분이 전준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10 이하인 밀크와 크림(냉동크림 제외)	1,446	1,738	0.3	20.2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293	1,717	0.3	32.8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7,590	1,679	0.3	-77.9
2103909030	혼합조미료	4,850	1,600	0.3	-67
1212211010	건조한 것	2,077	1,531	0.3	-27.5
1302199099	기타 식물성 엑스 및 펙틴질	1,682	1,508	0.3	-10.3
1605619000	기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해삼	2,999	1,479	0.3	-50.7
2103901090	기타	344	1,263	0.2	266.7
1515290000	기타	290	1,249	0.2	331.3
1901909091	쌀가루의 것	1,071	1,218	0.2	13.7
1209919000	기타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2,785	1,209	0.2	45.4
2009901090	기타	594	1,199	0.2	101.9
1209914000	양배추종자	565	1,112	0.2	96.7
1904109000	기타 곡물 및 조제식료품	1,316	1,103	0.2	26.9
0902400000	그밖의 홍차(발효차)와 그밖의 부분발효차	630	1,096	0.2	74
2106903029	기타	634	1,053	0.2	65.9
2206002030	탁주	765	1,025	0.2	34.1
2106909010	커피크리머	667	1,015	0.2	52.1
	총계	420,025	333,483	64.7	-20.6

주: 1.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HS 03류 제외).

2. 비중은 전체 수출액 515.3 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2.1. 개요

- 2014년 1~3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461.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하였음.
 - － 수출액은 154.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고, 수입액도 30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7% 증가하였음.
 - － 2014년 3월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0.9% 증가함. 수출액은 55.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1.4% 증가함. 수입액은 10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함.
- 2014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홍콩, 미국, 한국, 베트남 순으로 수출액은 각각 25.6억 달러, 17.2억 달러, 15.7억 달러, 11.6억 달러, 6.1억 달러임. 전년 동기대비 일본, 홍콩, 미국, 한국, 베트남은 각각 1.8%, 1.9%, 3.1%, 2.4%, 32.6% 증가함.
- 2014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태국으로 수입액은 각각 109.7억 달러, 26억 달러, 19.6억 달러, 14.8억 달러, 13.3억 달러임. 전년 대비 캐나다만 14.4% 감소하였고,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각각 16.7%, 87%, 40.5%, 29.4% 증가함.
- 2014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은 산둥, 복건, 광둥, 절강, 요녕으로 수출액은 각각 35.4억 달러, 18.9억 달러, 16.9억 달러, 12.4억 달러, 11.9억 달러임. 전년 동기대비 복건만 16.3% 감소하였고, 산둥, 광둥, 절강, 요녕 각각 3.2%, 3.3%, 7.6%, 3.2% 증가함.
- 2014년 1~3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지역은 산둥, 광둥, 북경, 상해, 강소로 수입액은 각각 73.1억 달러, 39.9억 달러, 34.5억 달러, 28.1억 달러, 27.3억 달러임. 산둥, 광둥, 북경, 상해, 강소 각각 33%, 16.8%, 4.4%, 15.6%, 11.1% 증가함.

표 5 2014년 1~3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3.1-3	2014.1-3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955,529.8	992,700.3	3.9
일본	251,658.2	256,262.4	1.8
홍콩	169,188.3	172,438.8	1.9
한국	113,691.1	116,392.7	2.4
베트남	45,830.9	60,761.9	32.6
말레이시아	72,911.9	60,388.5	-17.2
아프리카	64,558.4	62,542.6	-3.1
남아프리카공화국	9,853.6	8,068.1	-18.1
나이지리아	8,900.4	7,402.4	-16.8
모로코	5,840.7	7,014.5	20.1
이집트	7,170.2	6,081.4	-15.2
유럽	234,318.5	236,685.9	1.0
러시아연방	47,927.3	47,019.9	-1.9
독일	46,372.0	46,298.8	-0.2
네덜란드	28,382.8	28,921.0	1.9
남아메리카	51,922.4	48,338.2	-6.9
브라질	19,748.8	14,783.3	-25.1
멕시코	11,616.7	12,275.2	5.7
칠레	4,489.5	4,489.5	-4.3
북아메리카	173,594.8	177,155.4	2.1
미국	151,919.2	156,702.7	3.1
캐나다	21,647.6	20,413.9	-5.7
대양주	25,006.5	26,818.4	7.2
오스트레일리아	19,768.3	21,245.4	7.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6 2014년 1~3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대상국별 수입 현황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3.1-3	2014.1-3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598,148.9	619,035.7	3.5
태국	102,692.8	132,894.8	29.4
인도네시아	91,742.8	112,172.6	22.3
인도	137,126.9	103,442.8	-24.6
말레이시아	84,021.9	92,702.2	10.3
베트남	59,258.9	52,393.9	-11.6
한국	13,277.8	13,925.6	4.9
필리핀	8,374.3	13,176.1	57.3
대만	12,031.8	12,797.6	6.4
아프리카	98,884.9	116,568.3	17.9
짐바브웨	42,099.2	51,485.6	22.3
남아프리카공화국	13,735.5	13,872.6	1.0
에티오피아	7,668.8	12,149.8	58.4
유럽	293,598.4	316,033.6	7.6
프랑스	65,331.8	69,424.4	6.3
러시아연방	47,908.7	41,592.4	-13.2
네덜란드	24,589.3	30,326.3	23.3
남아메리카	223,711.1	313,547.2	40.2
브라질	82,282.5	130,239.1	58.3
칠레	54,531.7	58,633.0	7.5
북아메리카	1,114,513.5	1,246,223.1	11.8
미국	939,995.2	1,097,256.9	16.7
캐나다	172,342.2	147,502.2	-14.4
대양주	280,250.0	458,399.5	63.6
뉴질랜드	139,245.1	260,453.0	87.0
오스트레일리아	139,482.7	196,008.2	40.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7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출 현황, 2014.1~3

단위: 만 달러, %

지 역	2013.1-3	2014.1-3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40,041.6	21,815.7	-45.5
천진(天津)	22,057.7	22,854.1	3.6
하북(河北)	39,787.8	39,355.5	-1.1
산서(山西)	2,051.6	2,440.2	18.9
내몽고(內蒙古)	8,368.4	9,571.4	14.4
요녕(遼寧)	115,019.2	118,695.2	3.2
길림(吉林)	30,975.2	29,371.1	-5.2
흑룡강(黑龍江)	17,363.5	19,802.1	14.0
상해(上海)	37,386.3	37,908.8	1.4
강소(江蘇)	73,523.9	82,295.2	11.9
절강(浙江)	114,765.5	123,525.2	7.6
안휘(安徽)	23,256.0	25,916.5	11.4
복건(福建)	225,963.7	189,218.8	-16.3
강서(江西)	12,994.0	17,018.8	31.0
산둥(山東)	343,401.8	354,428.0	3.2
하남(河南)	23,193.6	38,545.1	66.2
호북(湖北)	27,724.1	34,423.6	24.2
호남(湖南)	18,086.8	23,085.5	27.6
광둥(廣東)	164,062.6	169,491.8	3.3
광서(廣西)	37,048.9	38,380.6	3.6
해남(海南)	11,244.0	13,415.6	19.3
중경(重慶)	6,474.9	6,213.3	-4.0
사천(四川)	14,802.5	19,074.0	28.9
귀주(貴州)	2,835.1	3,911.7	38.0
운남(雲南)	40,275.6	43,788.4	8.7
서장(西藏)	1,500.8	910.4	-39.3
섬서(陝西)	19,458.0	16,212.6	-16.7
감숙(甘肅)	7,502.0	10,753.4	43.3
청해(青海)	1,017.1	405.5	-60.1
영하(寧夏)	2,337.2	7,357.3	214.8
신강(新疆)	20,411.0	24,055.4	17.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8 중국내 지역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14.1~3

단위: 만 달러, %

지 역	2013.1-3	2014.1-3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330,212.7	344,788.5	4.4
천진(天津)	121,930.7	144,126.6	18.2
하북(河北)	61,296.2	61,164.6	-0.2
산서(山西)	1,056.4	7,050.6	567.4
내몽고(內蒙古)	9,340.8	20,888.7	123.6
요녕(遼寧)	142,336.5	144,680.5	1.6
길림(吉林)	28,034.7	15,450.6	-44.9
흑룡강(黑龍江)	42,523.3	71,461.6	68.1
상해(上海)	243,493.9	281,458.9	15.6
강소(江蘇)	245,872.3	273,081.6	11.1
절강(浙江)	129,757.9	133,457.1	2.9
안휘(安徽)	30,528.7	47,388.6	55.2
복건(福建)	121,382.2	143,111.2	17.9
강서(江西)	2,613.2	7,211.9	176.0
산둥(山東)	550,007.3	731,384.6	33.0
하남(河南)	29,317.3	34,705.7	18.4
호북(湖北)	6,916.0	9,320.1	34.8
호남(湖南)	8,181.5	12,970.9	58.5
광둥(廣東)	341,433.0	398,946.1	16.8
광서(廣西)	75,268.4	89,323.2	18.7
해남(海南)	3,033.9	4,270.0	40.7
중경(重慶)	18,352.8	7,254.5	-60.5
사천(四川)	6,770.1	18,007.3	166.0
귀주(貴州)	101.1	227.3	124.8
운남(雲南)	40,199.3	51,450.2	28.0
서장(西藏)	-	61.6	-
섬서(陝西)	1,807.4	2,444.8	35.3
감숙(甘肅)	614.4	1,414.2	130.2
청해(青海)	34.3	133.0	288.3
영하(寧夏)	11.5	358.0	3,025.0
신강(新疆)	16,679.0	12,221.9	-26.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2.2. 품목별 수출 동향

2.2.1. 곡물

가. 쌀

- 2014년 1~3월 중국의 쌀 수출량은 31,197톤으로 전년 대비 81.3% 감소하였으며, 수출액도 3,374.5 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7% 감소하였음. 평균 수출 단가는 톤 당 1,082.7달러로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음.
- 2014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쌀 수출량은 29,755.2톤으로 전년 대비 82.1% 감소하였으며, 수출액도 3,267.3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4% 감소함. 평균 수출 단가는 톤 당 1,098.1달러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음.

표 9 2014년 1~3월 중국의 쌀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29,755.2	3,267.3	-82.1	-77.4
한국	17,700.0	1,365.7	-85.6	-86.3
홍콩	4,462.9	392.6	-42.6	-41.7
몽골	2,624.0	168.3	9.6	30.1
파키스탄	2,596.6	1,027.8	84.9	77.1
북한	1,241.0	69.6	-77.5	-78.5
러시아연방	1,176.0	88.3	63.3	88.8
베트남	487.7	147.5	120.4	109.2
일본	256.0	33.2	-99.0	-98.7
인도네시아	150.0	44.6	554.8	400.2
아프리카	25.8	2.6	-49.0	-72.0
유럽	1,176.0	88.3	63.3	88.8
독립국가연합	1,325.0	99.1	16.2	28.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 2014년 1~3 중국 쌀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한국, 홍콩, 파키스탄, 북한 순으로, 각각 17.7천 톤, 4.5천 톤, 2.6천 톤, 2.6천 톤, 1.2천 톤임.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5.6% 감소, 42.6% 감소, 9.6% 증가, 84.9% 증가, 77.5% 감소한 것임.
-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쌀 수출지역은 길림, 북경, 신강, 안휘, 호남지역으로 각각 19천 톤, 4.7천 톤, 2.6천 톤, 1.0천 톤, 0.8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2.5% 증가, 96.8% 감소, 56.6% 증가, 194.6% 증가, 33.9% 증가한 것임.

표 10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쌀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길림(吉林)	19,011.0	1,441.7	82.5	81.4
북경(北京)	4,745.0	428.0	-96.8	-96.6
신강(新疆)	2,584.0	172.5	56.6	56.7
안휘(安徽)	1,016.4	330.1	194.6	196.2
호남(湖南)	810.0	384.5	33.9	27.3
흑룡강(黑龍江)	730.0	56.5	1.4	20.7
호북(湖北)	552.5	218.1	103.9	106.6
사천(四川)	420.9	137.8	160.9	130.9
광둥(廣東)	260.0	17.6		
해남(海南)	211.5	64.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나. 옥수수

- 2014년 1~3월 중국 옥수수 수출량은 1,246.4 톤으로 전년 대비 89.1% 감소하였으며, 수출액도 48.4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7% 감소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388.0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음.

- 2014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옥수수 수출량은 1,195.3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감소하였음. 수출 금액은 46.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1% 감소하였음. 평균단가는 톤당 386.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음.

표 11 2014년 1~3월 중국의 옥수수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195.3	46.2	-89.5	-89.1
북한	1,192.2	45.3	-89.6	-89.3
러시아연방	50.0	1.9		
아프리카	1.2	0.3	-89.5	-89.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옥수수 수출지역은 요녕, 길림, 중경 지역으로 각각 1,103 톤, 140 톤, 1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1% 감소, 97.5% 감소, 91.7% 증가한 것임.

표 12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옥수수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요녕(遼寧)	1,102.7	42.0	-81.0	-81.0
길림(吉林)	139.5	5.2	-97.5	-97.5
중경(重慶)	1.2	0.3	91.7	0.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2.2.2. 축산물

가. 돼지고기

- 2014년 1~3월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19,211.1 톤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하

였고, 수출액도 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3% 증가했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4,840.7달러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음.

- 2014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돼지고기 수출량은 18,849.1 톤으로 전년 대비 34.0%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1% 증가함.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4,869.4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 키르기스스탄, 마카오로 각각 15.6천 톤, 1.7천 톤, 1.0천 톤을 수출함.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7.5%, 225.3%, 17.5% 증가한 것임.

표 13 2014년 1~3월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8,849.1	9,178.4	34.0	45.1
홍콩	15,602.4	7,543.0	27.5	38.4
키르기스스탄	1,659.0	784.3	225.3	248.1
마카오	1,025.2	488.2	17.5	19.3
싱가포르	193.1	214.6	64.0	45.0
몽골	180.0	81.0	500.0	527.9
말레이시아	69.8	24.7		
유럽	362.0	121.2	239.9	280.2
그루지야	187.0	58.2	130.9	150.8
독립국가연합	1,659.0	784.3	161.1	175.2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290.5	248.9	-6.8	42.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돼지고기 수출지역은 호남, 광둥, 사천 지역으로 각각 7.8천 톤, 3.5천 톤, 2.6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4.6% 증가, 1.5% 감소, 114.8% 증가한 것임.

표 14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돼지고기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호남(湖南)	7,799.0	4,182.4	64.6	66.8
광둥(廣東)	3,488.0	1,509.0	-1.5	3.8
사천(四川)	2,565.4	988.0	114.8	118.6
운남(雲南)	2,165.0	1,170.3	51.4	51.5
하남(河南)	1,206.4	656.7	104.6	168.0
산둥(山東)	668.1	246.9	114.5	137.8
길림(吉林)	489.0	171.0	-46.1	-45.3
중경(重慶)	428.2	202.8	-51.3	-45.5
흑룡강(黑龍江)	324.0	132.3	224.0	284.6
광서(廣西)	78.0	40.2	-25.0	-29.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나. 닭고기 및 제품

- 2014년 1~3월 중국의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량은 94,269.2 톤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3,662.7달러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음.
- 2014년 1~3월 중국의 대 아시아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량은 89,218.9 톤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고, 수출액도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3,667.9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순으로 각각 49.2천 톤, 24.9천 톤, 8.5천 톤을 수출함.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1% 증가, 7.2% 감소, 84.5% 증가한 것임.
-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지역은 산둥(山東), 광둥(廣東), 요녕(遼寧), 하북(河北), 하남(河南) 지역으로 각각 44.8천 톤, 14.5천 톤, 10.4천 톤, 6.5천 톤, 3.6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5.3% 증가, 16.9% 감소, 13.7% 감소, 21.5% 증가, 4.1% 증가한 것임.

표 15 2014년 1~3월 중국의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89,218.9	32,724.9	8.9	4.5
일본	49,181.8	21,444.2	6.1	1.8
홍콩	24,929.5	7,155.4	-7.2	-7.8
말레이시아	8,500.2	2,269.6	84.5	86.4
마카오	956.6	299.9	18.1	12.8
한국	598.1	239.5	-14.4	-26.1
유럽	4,456.4	1,669.0	18.1	16.6
네덜란드	1,844.9	787.5	21.4	37.2
영국	897.6	369.1	-46.7	-43.7
아프리카	220.8	47.0	-27.2	-13.2
남미주	246.1	56.5	86.4	84.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표 16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닭고기·닭고기제품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둥(山東)	44,840.6	16,950.4	35.3	25.5
광둥(廣東)	14,543.6	4,825.4	-16.9	-18.4
요녕(遼寧)	10,424.7	3,457.9	-13.7	-13.6
하북(河北)	6,454.4	2,433.3	21.5	22.4
하남(河南)	3,636.6	1,286.9	4.1	2.6
길림(吉林)	2,678.2	1,136.8	-23.7	-29.5
북경(北京)	2,209.4	1,039.1	-11.2	-24.1
복건(福建)	2,151.5	908.8	41.2	38.9
상해(上海)	2,021.3	665.6	25.0	18.3
흑룡강(黑龍江)	2,008.5	940.1	-8.8	-15.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2.2.3. 채소류

가. 마늘

- 2014년 1~3월 중국의 마늘 수출량은 463,233.1 톤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932.1달러로 전년 대비 26.9% 감소하였음.
- 2014년 1~3월 중국의 주요 마늘 수출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순으로, 각각 111.8천 톤, 40.7천 톤, 35.5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1%, 44.3%, 40.3% 증가한 것임.

표 17 2014년 1~3월 중국의 마늘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4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12,113.5	25,994.5	39.6	8.8
인도네시아	111,805.2	7,748.7	24.1	-11.6
베트남	40,657.5	5,146.8	44.3	181.0
말레이시아	26,669.7	2,122.8	-3.6	-30.9
필리핀	21,173.2	1,457.7	55.0	-3.8
방글라데시	18,913.0	1,078.0	312.9	146.4
태국	17,861.9	1,573.4	25.7	-7.0
북아메리카	41,053.3	6,610.5	34.1	2.1
미국	35,514.1	5,782.3	40.3	7.5
남아메리카	45,042.9	3,935.6	5.8	-36.1
브라질	20,704.7	1,957.0	-1.5	-41.9
유럽	34,642.5	4,097.6	1.0	-25.2
아프리카	26,782.8	2,023.2	66.0	0.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20,618.7	18,292.8	24.9	6.2
중동	45,196.9	3,473.8	46.4	-7.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마늘 수출지역은 산둥(山東), 강소(江蘇), 광서(廣西), 하남(河南), 하북(河北) 지역으로 각각 280.7천 톤, 81.7천 톤, 30.3천 톤, 18.8천 톤, 15.1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 103.9%, 19.2%, 40.8%, 670.5% 증가한 것임.

표 18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마늘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4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둥(山東)	280,734.8	23,965.7	15.0	-24.5
강소(江蘇)	81,734.6	7,075.8	103.9	31.2
광서(廣西)	30,297.5	4,711.1	19.2	196.0
하남(河南)	18,750.3	1,572.4	40.8	-19.6
하북(河北)	15,137.0	2,042.8	670.5	468.6
광둥(廣東)	9,805.9	653.7	139.3	69.9
상해(上海)	5,744.9	680.3	20.9	-27.1
안휘(安徽)	3,293.2	455.2	111.5	42.7
요녕(遼寧)	2,511.0	235.9	237.3	86.7
운남(雲南)	2,405.0	289.7	-3.2	-6.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2.2.4. 기타

가. 표고버섯

- 2014년 1~3월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량은 20,947.6 톤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하였으며, 수출액도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9% 증가하였음.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13,010.5달러로 전년 대비 27.7% 증가하였음.
- 2014년 1~3월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 홍콩, 한국, 일본, 태국 순으로 각각 6.5천 톤, 3.1천 톤, 3.0천 톤, 2.1천 톤, 1.8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7.7%, 137.9%, 28.4%, 7.9%, 12.5% 증가한 것임.

표 19 2014년 1~3월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4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8,903.0	25,498.1	44.0	81.8
베트남	6,496.2	10,796.4	107.7	128.4
홍콩	3,060.6	5,226.7	137.9	165.0
한국	2,973.5	1,657.9	28.4	51.1
일본	2,065.7	2,280.6	7.9	106.6
태국	1,830.1	2,401.0	12.5	11.5
말레이시아	1,617.2	1,873.7	-31.2	-21.0
싱가포르	392.9	561.0	14.7	28.8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658.4	16,138.5	41.4	64.7
북아메리카	1,481.7	1,036.2	1.7	12.7
미국	1,307.0	910.5	1.0	16.6
유럽	366.4	477.4	-7.8	48.6

자료: 中華民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표고버섯 수출지역은 하남(河南), 호북(湖北), 절강(浙江), 복건(福建), 상해(上海) 지역으로 각각 6.2천 톤, 5.5천 톤, 3.8천 톤, 1.9천 톤, 1.0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7.2% 증가, 12.2% 증가, 8.2% 증가, 85.5% 증가, 18.3% 감소한 것임.

표 20 2014년 1~3월 중국내 주요 표고버섯 수출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4년 1~3월		전년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하남(河南)	6,247.4	10,600.6	127.2	131.9
호북(湖北)	5,472.0	8,783.2	12.2	21.9
절강(浙江)	3,774.8	1,814.7	8.2	10.3
복건(福建)	1,853.4	3,185.3	85.5	318.7
상해(上海)	1,018.2	475.9	-18.3	-8.7
광둥(廣東)	574.6	215.4	-10.1	50.1
요녕(遼寧)	512.7	245.7	16.8	16.4
강소(江蘇)	430.8	744.8	3,267.5	9,904.1
산둥(山東)	256.7	432.3	73.5	212.6
신강(新疆)	190.9	46.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4년 1~3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참고자료

商務部.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2014年 1月·2月·3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2014年 1月·2月·3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2014年 1月·2月·3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2014年 1月·2月·3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2014年 1月·2月·3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2014年 1月·2月·3月)

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2014年 1月·2月·3月)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통계(<http://www.kati.net>)



◆ 주요 곡물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

양곡연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율
생산량		488,187	511,183	530,693	544,028	552,940	1.6
수입량		2,663	10,985	8,763	15,772	11,500	-27.1
총공급량(A)		490,849	522,168	539,456	559,800	564,440	0.8
국내 소비	식용소비	262,400	274,900	286,500	292,700	298,000	1.8
	사료용소비	137,600	157,180	148,760	139,780	145,200	3.9
	가공용소비	75,300	80,000	77,000	75,060	77,600	3.4
	종자용소비	7,190	7,260	7,390	7,430	7,430	0.0
	합 계	482,490	519,340	519,650	514,970	528,230	2.6
수출량		762	980	666	650	700	7.7
총소비량(B)		485,052	520,320	520,316	515,620	528,930	2.6
잔여량(A-B)		5,797	1,848	19,140	44,180	35,510	-19.6

- 주: 1. 곡물은 쌀, 밀, 옥수수만 포함되며,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3/14년, 2014/15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4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는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증감률은 2012/13 양곡연도 대비 증감률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74期(2014.7.9), 第171期(2014.4.14), 第168期(2014.1.15), 第153期(2012.10.15), 第150期(2012.7.11), 第147期(2012.4.11), 第134期(2011.3.10)

*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의 관리를 받는 국가식량국(國家糧食局)의 직속 사업단위인 국가양유신식중심(國家糧油信息中心)이 발행하는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飼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油脂油料市場供需狀況月報」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지역별 주요 곡물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3/14 양곡년도				2014/15 양곡년도			
	생산량	총공급량 (A)	총소비량 (B)	잔여량 (A-B)	생산량	총공급량 (A)	총소비량 (B)	잔여량 (A-B)
전 국	544,028	559,800	515,620	44,180	552,940	564,440	528,930	35,510
주산지	437,065	439,546	353,701	85,845	445,047	446,247	364,471	81,776
하북성	31,499	31,699	33,904	-2,205	32,022	32,022	34,436	-2,414
내몽고	23,061	23,061	9,181	13,880	23,503	23,503	9,502	14,001
요녕성	20,728	20,810	15,407	5,403	20,877	20,887	15,805	5,082
길림성	33,390	33,390	17,625	15,765	33,800	33,800	18,088	15,712
흑룡강성	54,759	54,759	16,474	38,285	55,916	55,916	16,900	39,016
강소성	32,400	32,987	30,980	2,007	33,010	33,240	31,533	1,707
안휘성	31,203	31,203	22,362	8,841	31,825	31,825	22,767	9,058
강서성	20,185	20,325	17,115	3,210	20,297	20,477	17,547	2,930
산둥성	42,896	43,998	54,802	-10,804	44,200	44,550	57,976	-13,426
하남성	55,087	55,137	46,523	8,614	55,850	55,900	48,716	7,184
호북성	23,642	23,702	23,190	512	24,358	24,418	23,727	691
호남성	27,575	27,635	29,062	-1,427	28,754	28,874	29,616	-742
사천성	27,332	27,332	31,082	-3,750	27,439	27,439	31,773	-4,335
신 강	13,309	13,509	5,994	7,515	13,198	13,398	6,085	7,313
생산-소비 균형지역	78,501	79,595	75,631	3,964	79,104	80,014	76,768	3,246
산서성	11,869	11,869	9,388	2,481	12,042	12,042	9,488	2,554
광 서	14,224	15,098	18,312	-3,214	14,268	14,898	18,623	-3,725
귀주성	7,108	7,108	7,782	-674	7,440	7,440	7,912	-472
운남성	14,826	14,946	11,497	3,449	15,141	15,271	11,690	3,581
중경시	7,949	7,949	9,043	-1,094	8,000	8,000	9,159	-1,159
섬서성	10,675	10,675	10,198	477	10,770	10,770	10,359	411
감숙성	8,112	8,112	6,293	1,819	7,863	7,863	6,414	1,449
청해성	524	524	810	-286	546	596	830	-234
영 하	3,215	3,315	2,308	1,007	3,034	3,134	2,293	841
주소비지	28,461	40,658	86,288	-45,630	28,789	38,179	87,691	-49,512
북경시	940	1,143	6,302	-5,159	815	865	6,371	-5,506
천진시	1,723	2,040	4,784	-2,744	1,798	1,808	4,834	-3,026
상해시	1,070	1,797	6,828	-5,031	1,057	1,357	6,868	-5,511
절강성	6,348	6,968	18,018	-11,050	6,542	6,882	18,350	-11,468
북건성	5,220	6,190	12,916	-6,726	5,221	5,951	13,147	-7,196
광둥성	11,269	20,569	32,535	-11,966	11,437	19,337	33,146	-13,810
해남성	1,619	1,679	4,479	-2,800	1,632	1,692	4,549	-2,857
서 장	271	271	426	-155	287	287	426	-139

주: 주요곡물은 밀, 옥수수, 벼를 의미함.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第174期(2014.7.9)

▶ 쌀(조곡)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재배면적		29,873	30,057	30,137	30,312	30,544
- 조생종(早稻)		5,796	5,750	5,765	5,804	5,813
- 중생종(中稻)		17,853	18,100	18,019	18,186	18,400
- 만생종(晩稻)		6,225	6,207	6,353	6,321	6,330
단 수		6.553	6.687	6.777	6.717	6.792
- 조생종(早稻)		5.407	5.697	5.775	5.881	5.901
- 중생종(中稻)		7.234	7.352	7.413	7.312	7.399
- 만생종(晩稻)		5.667	5.665	5.883	5.774	5.845
생산량		195,761	201,001	204,236	203,612	207,440
수입량		889	2,806	3,166	5,000	5,000
총공급량(A)		196,649	203,807	207,401	208,612	212,440
국 내 소 비	식용소비	165,500	169,000	172,000	175,000	179,000
	- 쌀	114,195	116,610	118,680	120,750	123,510
	- 기울(bran)	51,305	52,390	53,320	54,250	55,490
	사료용소비 및 손실	16,300	16,180	15,260	12,780	12,200
	가공용소비	11,000	12,000	13,000	12,760	13,000
	종자용소비	1,200	1,220	1,240	1,250	1,280
합 계		194,000	198,400	201,500	201,790	205,480
수출량		652	636	587	500	500
총소비량(B)		194,652	199,036	202,087	202,290	205,980
잔여량(A-B)		1,998	4,771	5,314	6,322	6,460
산지도매 시장가격	조생종	2,000~2,420	2,400~2,640	2,550~2,700	2,600~2,700	2700~2800
	중생종	2,700~3,000	2,860~3,100	2,830~3,200	2,900~3,100	3000~3100
	만생종	2,050~2,550	2,550~2,720	2,500~2,750	2,600~2,850	2700~285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3/14년, 2014/15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4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의 산지도매시장가격은 각각 강서성 중간등급 조생 장립종 벼 평균가격, 강서성 중간등급 중생종 벼 평균가격, 강서성 중간등급 만생 장립종 벼 평균가격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74期(2014.7.9), 第171期(2014.4.14), 第168期(2014.1.15), 第153期(2012.10.15), 第150期(2012.7.11), 第147期(2012.4.11), 第134期(2011.3.10)

지역별 쌀(조곡)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3/14 양곡연도						2014/15 양곡연도					
	생산량	총공급량	식용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식용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전 국	203,612	208,612	175,000	27,290	202,290	6,322	207,440	212,440	179,000	26,980	205,980	6,460
북경시	1	1	2,490	160	2,650	-2,649	2	2	2,540	150	2,690	-2,688
천진시	129	139	1,340	52	1,392	-1,253	140	150	1,360	52	1,412	-1,262
하북성	588	588	3,850	155	4,005	-3,417	600	600	3,940	155	4,095	-3,495
산서성	7	7	2,360	50	2,410	-2,403	7	7	2,410	50	2,460	-2,453
내몽고	560	560	1,710	105	1,815	-1,255	570	570	1,750	105	1,855	-1,285
요녕성	5,069	5,079	5,120	198	5,318	-239	5,150	5,160	5,230	199	5,429	-269
길림성	5,633	5,633	3,740	297	4,037	1,596	5,700	5,700	3,820	298	4,118	1,582
흑룡강	22,206	22,206	4,760	678	5,438	16,768	23,000	23,000	4,870	713	5,583	17,417
상해시	868	1,008	2,750	305	3,055	-2,047	870	1,010	2,820	285	3,105	-2,095
강소성	19,223	19,343	13,980	2,688	16,668	2,675	19,500	19,620	14,300	2,670	16,970	2,650
절강성	5,802	5,922	10,360	2,496	12,856	-6,934	5,962	6,082	10,600	2,488	13,088	-7,006
안휘성	13,623	13,623	7,460	1,800	9,260	4,363	13,865	13,865	7,630	1,782	9,412	4,453
북건성	5,020	5,420	7,060	1,025	8,085	-2,665	5,018	5,368	7,220	1,026	8,246	-2,878
강서성	20,040	20,040	9,420	2,433	11,853	8,187	20,139	20,139	9,640	2,395	12,035	8,104
산둥성	1,036	1,036	4,820	224	5,044	-4,008	1,100	1,100	4,920	224	5,144	-4,044
하남성	4,858	4,858	5,280	243	5,523	-665	4,950	4,950	5,400	244	5,644	-694
호북성	16,766	16,766	9,610	2,606	12,216	4,550	17,218	17,218	9,820	2,541	12,361	4,857
호남성	25,615	25,615	16,260	2,501	18,761	6,854	26,642	26,642	16,640	2,394	19,034	7,608
광둥성	10,450	14,250	13,800	2,527	16,327	-2,077	10,593	14,393	14,160	2,508	16,668	-2,275
광 서	11,562	11,922	11,290	2,110	13,400	-1,478	11,565	11,965	11,540	2,081	13,621	-1,656
해남성	1,498	1,498	990	108	1,098	400	1,509	1,509	1,020	108	1,128	381
중경시	5,031	5,031	5,780	232	6,012	-981	5,050	5,050	5,910	222	6,132	-1,082
사천성	15,495	15,495	13,570	3,298	16,868	-1,373	15,509	15,509	13,870	3,310	17,180	-1,672
귀주성	3,613	3,613	4,820	252	5,072	-1,459	3,670	3,670	4,920	242	5,162	-1,492
운남성	6,679	6,719	5,920	569	6,489	230	6,871	6,921	6,070	560	6,630	291
서 장	6	6	170	0	170	-165	6	6	170	0	170	-164
섬서성	910	910	2,530	104	2,634	-1,725	910	910	2,580	104	2,684	-1,774
감숙성	38	38	1,700	50	1,750	-1,712	35	35	1,740	50	1,790	-1,755
청해성	0	0	370	0	370	-370	0	0	390	0	390	-390
영 하	689	689	620	2	622	67	680	680	630	20	632	48
신 강	598	598	1,070	22	1,092	-494	610	610	1,090	22	1,112	-502

주: 1.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4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74期(2014.7.9)

◆ 밀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재배면적		24,256	24,270	24,268	24,117	23,820
- 겨울 밀		22,552	22,602	22,514	22,553	22,620
- 봄 밀		1,705	1,669	1,755	1,565	1,200
단 수		4.748	4.837	4.979	5.056	5.143
- 겨울 밀		4.827	4.909	5.072	5.137	5.199
- 봄 밀		3.705	3.861	3.791	3.881	4.083
생산량		115,180	117,401	120,843	121,926	122,500
- 겨울 밀		108,863	110,957	114,192	115,853	117,600
- 봄 밀		6,317	6,444	6,651	6,073	4,900
수입량		795	2,949	2,895	6,772	3,000
총공급량(A)		115,975	120,350	123,738	128,698	125,500
국 내 소 비	제분(制粉)소비	83,300	89,900	97,100	99,700	100,500
	- 밀가루	62,475	67,425	72,825	74,775	75,375
	- 밀기울	4,165	4,495	4,855	4,985	5,025
	- 맥피(麴皮)	16,660	17,980	19,420	19,940	20,100
	사료용소비	13,500	28,000	21,000	12,500	14,000
	가공용소비	10,800	11,000	12,000	12,300	12,600
	종자용소비	4,690	4,690	4,700	4,700	4,650
합 계		112,290	133,590	134,800	129,200	131,750
수출량		0	50	0	0	0
총소비량(B)		112,2790	133,640	134,800	129,200	131,750
잔여량(A-B)		3,685	-13,290	-11,062	-502	-6,250
겨울밀 도매시장가격	하남성	1,880~2,100	2,000~2,200	2,080~2,600	2,250~2,700	2360~2700
	하북성	1,950~2,250	2,040~2,300	2,110~2,700	2,360~2,800	2360~280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임. 수출입량은 해관총서를 참고함.

2. 양곡연도 중 2013/14, 2014/15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4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74期(2014.7.9), 第171期(2014.4.14), 第168期(2014.1.15), 第153期(2012.10.15), 第150期(2012.7.11), 第147期(2012.4.11), 第134期(2011.3.10)

지역별 밀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3/2014 양곡연도						2014/15 양곡연도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제분소비	기타소비	총소비량	잔여량
전 국	121,926	128,699	99,700	29,500	129,200	-501	122,500	125,500	100,500	31,250	131,750	-6,250
북경시	187	387	1,600	276	1,876	-1,489	142	192	1,630	245	1,875	-1,683
천진시	573	873	1,300	265	1,565	-692	621	621	1,330	225	1,555	-934
하북성	13,872	14,072	13,600	1,919	15,519	-1,447	13,922	13,922	13,700	1,819	15,519	-1,597
산서성	2,307	2,307	4,100	219	4,319	-2,012	2,305	2,305	4,150	209	4,359	-2,054
내몽고	1,804	1,804	930	110	1,040	764	1,063	1,063	870	75	945	118
요녕성	27	49	1,160	64	1,224	-1,175	27	27	1,100	34	1,134	-1,107
길림성	0	0	80	32	112	-112	0	0	70	22	92	-92
흑룡강	389	389	840	61	901	-512	336	336	810	47	857	-522
상해시	176	604	2,350	463	2,813	-2,209	159	259	2,360	433	2,793	-2,534
강소성	11,013	11,380	6,810	2,081	8,891	2,489	11,150	11,200	6,880	2,081	8,961	2,239
절강성	278	568	940	610	1,550	-982	280	380	940	600	1,540	-1,160
안휘성	13,320	13,320	5,900	1,331	7,231	6,089	13,500	13,500	5,950	1,403	7,353	6,147
북건성	7	367	1,000	641	1,641	-1,274	9	209	1,010	591	1,601	-1,392
강서성	25	25	560	712	1,272	-1,247	25	25	560	752	1,312	-1,287
산둥성	22,188	22,751	17,300	4,486	21,786	965	22,500	22,550	17,440	5,888	23,328	-778
하남성	32,264	32,314	19,100	7,695	26,795	5,519	32,500	32,550	19,350	8,536	27,886	4,664
호북성	4,168	4,168	2,750	1,332	4,082	86	4,300	4,300	2,770	1,473	4,243	57
호남성	110	110	270	1,118	1,388	-1,278	112	112	270	1,078	1,348	-1,263
광둥성	3	3,343	3,400	2,621	6,021	-2,678	4	2,004	3,440	2,511	5,951	-3,948
광 서	3	356	390	342	732	-376	3	53	390	322	712	-659
해남성	0	0	750	70	820	-820	0	0	760	50	810	-810
중경시	337	337	90	501	591	-254	320	320	90	447	537	-217
사천성	4,213	4,213	2,900	1,323	4,223	-10	4,250	4,250	2,920	1,252	4,172	78
귀주성	515	515	570	80	650	-135	520	520	580	80	660	-140
운남성	805	805	960	148	1,108	-303	870	870	970	129	1,099	-229
서 장	241	241	230	6	236	5	252	252	230	6	236	16
섬서성	3,898	3,898	3,300	367	3,667	231	4,000	4,000	3,350	358	3,708	292
감숙성	2,359	2,359	2,400	261	2,661	-302	2,418	2,418	2,440	252	2,692	-274
청해성	360	360	300	30	330	30	361	411	300	30	330	81
영 하	463	563	690	69	759	-196	394	494	680	44	724	-231
신 강	6,021	6,221	3,130	267	3,397	2,824	6,158	6,358	3,160	258	3,418	2,940

주 1.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4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총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第174期(2014.7.9)

▶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2/13	2013/14	2014/15
재배면적		35,030	36,318	36,700
- 동북(東北)지역		13,515	14,363	14,560
-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		12,389	12,620	12,836
단 수		5.870	6.016	6,076
- 동북(東北)지역		6.418	6.701	6,748
-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		5.755	5.739	5,824
생산량		205,614	218,489	223,000
- 동북(東北)지역		86,746	96,250	98,250
-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		71,294	72,428	74,758
수입량		2,702	4,000	3,500
총공급량(A)		208,316	222,489	226,500
국내 소비	식용소비	17,400	18,000	18,500
	사료용소비	112,500	114,500	119,000
	가공용소비	52,000	50,000	52,000
	종자용소비	1,450	1,480	1,500
	합 계	183,350	183,980	191,000
수출량		79	150	200
총소비량(B)		183,429	184,130	191,200
잔여량(A-B)		24,887	38,359	35,300
도매시장 가격	산지	2,170-2,330	2,150-2,350	2,150-2,300
	소비지	2,380-2,600	2,300-2,620	2,300-2,50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3/14, 2014/15년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4년 7월에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동북지역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를 포함함.

5. 화북(華北) 황회해(黃淮海)지역은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산둥성, 강소성, 안휘성을 포함함.

6. 산지 도매시장 가격은 길림성의 중간등급 옥수수의 평균 출고가격임.

7. 소비지 도매시장 가격은 광둥성의 중간등급 옥수수의 판매가격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飼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74期(2014.7.9)

지역별 옥수수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2013/14 양곡연도						2014/15 양곡연도					
	생산량	총공급량	사료 소비	기타 소비	국내 소비	잔여량	생산량	총공급량	사료 소비	기타 소비	국내 소비	잔여량
전 국	218,489	222,489	114,500	69,630	184,130	38,359	223,000	226,500	119,000	72,200	191,200	35,300
북경시	752	755	1,500	276	1,776	-1,021	671	671	1,490	316	1,806	-1,135
천진시	1,021	1,028	1,420	407	1,827	-799	1,037	1,037	1,450	417	1,867	-830
하북성	17,039	17,039	9,400	4,980	14,380	2,659	17,500	17,500	9,600	5,222	14,822	2,678
산서성	9,555	9,555	1,360	1,299	2,659	6,896	9,730	9,730	1,380	1,289	2,669	7,061
내몽고	20,697	20,697	2,500	3,826	6,326	14,371	21,870	21,870	2,600	4,102	6,702	15,168
요녕성	15,632	15,682	6,000	2,865	8,865	6,817	15,700	15,700	6,220	3,022	9,242	6,458
길림성	27,757	27,757	3,300	10,176	13,476	14,281	28,100	28,100	3,400	10,478	13,878	14,222
흑룡강	32,164	32,164	3,200	6,935	10,135	22,029	32,580	32,580	3,300	7,160	10,460	22,120
상해시	25	185	700	260	960	-775	28	88	700	270	970	-882
강소성	2,164	2,264	4,300	1,121	5,421	-3,157	2,360	2,420	4,450	1,152	5,602	-3,182
절강성	268	478	3,000	612	3,612	-3,134	300	420	3,100	622	3,722	-3,302
안휘성	4,260	4,260	2,440	3,431	5,871	-1,611	4,460	4,460	2,550	3,452	6,002	-1,542
북건성	193	403	2,700	490	3,190	-2,787	194	374	2,800	500	3,300	-2,926
강서성	120	260	3,400	590	3,990	-3,730	133	313	3,600	600	4,200	-3,887
산둥성	19,671	20,211	13,000	14,972	27,972	-7,761	20,600	20,900	14,000	15,504	29,504	-8,604
하남성	17,965	17,965	8,700	5,505	14,205	3,760	18,400	18,400	9,200	5,986	15,186	3,214
호북성	2,708	2,768	5,500	1,392	6,892	-4,125	2,840	2,900	5,700	1,423	7,123	-4,223
호남성	1,850	1,910	8,000	913	8,913	-7,003	2,000	2,210	8,300	934	9,234	-7,114
광둥성	816	2,976	8,800	1,387	10,187	-7,211	840	2,940	9,100	1,427	10,527	-7,587
광 서	2,660	2,820	3,500	680	4,180	-1,361	2,700	2,880	3,600	690	4,290	-1,410
해남성	121	181	2,450	111	2,561	-2,380	123	183	2,500	111	2,611	-2,428
충경시	2,581	2,581	2,050	390	2,440	141	2,630	2,630	2,100	390	2,490	140
사천성	7,624	7,624	8,700	1,291	9,991	-2,367	7,680	7,680	9,100	1,321	10,421	-2,741
귀주성	2,980	2,980	1,500	560	2,060	920	3,250	3,250	1,520	570	2,090	1,160
운남성	7,342	7,422	3,250	650	3,900	3,522	7,400	7,480	3,300	661	3,961	3,519
서 장	25	25	10	10	20	5	29	29	10	10	20	9
섬서성	5,867	5,867	1,640	2,257	3,897	1,970	5,860	5,860	1,700	2,267	3,967	1,893
감숙성	5,715	5,715	1,000	882	1,882	3,833	5,410	5,410	1,010	922	1,932	3,478
청해성	164	164	70	40	110	54	185	185	70	40	110	75
영 하	2,062	2,062	280	647	927	1,135	1,960	1,960	290	647	937	1,023
신 강	6,690	6,690	830	675	1,505	5,185	6,430	6,430	860	695	1,555	4,875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총공급량은 당해연도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며 기타 소비는 식용, 종자용, 가공용, 손실 및 수출량을 포함함. 잔여량은 총공급량과 국내소비량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飼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74期(2014.7.9)

▶ 대두 수급 추이

단위: 천 ha, 톤/ha, 천 톤, 위안/톤

양곡연도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4/15 (USDA)
재배면적		7,889	7,172	6,791	6,400	6,700
- 흑룡강성		3,202	2,664	2,430	2,200	
단 수		1,836	1,820	1,760	1,797	1,791
- 흑룡강성		1,691	1,740	1,591	1,636	
생산량		14,485	13,050	11,951	11,500	12,000
수입량		59,231	59,834	68,000	69,000	72,000
총공급량(A)		73,716	72,884	79,951	80,500	84,000
국 내 소 비	종자용소비	600	500	480	450	
	식용·가공용소비	9,800	10,000	10,500	10,800	11,400
	착유용소비	60,000	63,000	67,000	70,000	72,500
	- 중국산 대두	4,000	4,000	3,000	3,000	
	- 수입 대두	56,000	59,000	64,000	67,000	
합 계		70,400	73,500	78,000	81,250	83,900
수출량		275	266	200	200	300
총소비량(B)		70,675	73,766	78,180	81,450	84,200
잔여량(A-B)		3,041	-882	1,771	-950	-200
중국산 대두 평균가격		54,163	4,472	4,200-4,600	4,200-4,600	
수입 대두 평균가격		4,636	4,427	3,800-4,500	3,500-4,000	

주: 1. 양곡연도는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임.

2. 양곡연도 중 2013/2014, 2014/15은 國家糧油信息中心이 2014년 7월에 예측한 수치이며, 2014/15년(USDA)는 미국 농무부가 예측한 수치임.

3. 잔여량은 총공급량(A)과 총소비량(B)의 차이이며 재고를 포함하지 않음.

4. 중국산 대두 평균가격은 흑룡강성의 중간등급 대두 평균가격, 수입 대두 평균가격은 광둥성 대두 가공기업의 수입 대두 평균 공장입고가격임.

자료: 國家糧油信息中心, 「油脂油料市場供需狀況月報」第172期(2014.7.11)

양념채소시장 동향

1 고추시장 동향

1.1. 산지동향

- 2014년산 중국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보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 － 산동지역은 전년과 비슷하나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하였던 동북 3성 지역은 전년 대비 증가
 - － 신강 고추 재배면적은 면화에서의 작목 전환으로 전년산보다 증가
 - － 내몽고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 신선고추 거래가격 상승 여파로 증가
- 봄철 높은 기온 영향으로 고추 정식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됨.
- 강서성, 산둥성, 내몽고 지역의 현재까지 고추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동북 3성, 신강 등은 기온이 전년보다 낮아 고추 생장이 늦어져 신선고추 출하가 20일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1.2. 수출동향

- 2013년산 생산량 감소로 산지 재고가 대부분 소진되어 중국 건고추 1~5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적은 약 1만 9천 톤임. 수출단가는 톤당 \$2,520로 전년 보다 10% 높음.

-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중국 고추 주요 수입국들의 수요가 줄어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1 중국 건고추 월별 수출실적

단위: 톤

구 분	2013년		2014년	
	수출량(톤)	수출액(천불)	수출량(톤)	수출액(천불)
1월	4,322	9,792	3,818	9,215
2월	2,561	6,438	1,843	4,260
3월	5,096	11,050	4,245	10,525
4월	4,244	9,311	4,636	12,219
5월	4,079	9,734	4,528	11,837

자료: aT 청도 사무소, '국영무역품목 월별 정기동향 보고'.

1.3. 가격동향

- 저온 창고 보관 물량의 출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소비시장 비수기로 거래량은 부진한 편임.
- 청도 우가촌 건고추 도매시장은 식품 가공공장의 원료 구매로 거래물량이 보름 전 대비 소폭 증가
- 건고추 시장 수요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거래가격은 보합세이나, 저온창고 저장비용 등 원가 상승으로 전월 대비 다소 상승

표 2 청도 지역 꼭지제거 전 거래가격

단위: 위안/톤

구 분	내 몽 고	길 림		신 강	산동 청도
	익도홍	익도홍	금탑	금탑	익도홍
'14.5.5	9,500-9,800	8,500-9,000	-	9,500-10,000	10,000-11,000
'14.5.20	9,500-9,800	8,500-9,000	-	9,500-10,000	10,000-11,000
'14.6.5	10,000-10,400	9,000-9,500	-	10,000-10,500	10,500-11,500
'14.6.20	10,000-10,400	9,000-9,500	11,000-11,500	10,000-10,500	10,500-11,500

자료: aT 청도 사무소, '국영무역품목 월별 정기동향 보고'.

2 마늘시장 동향

2.1. 산지 동향

- 중국 마늘 주산지인 산둥성의 2014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10% 내외 감소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13년산 재고량은 1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산 마늘 가격이 낮아 2014년산 재배면적은 최대 주산지인 금향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7% 감소. 겨울철 기온이 높아 초기 마늘 생육이 양호하였으나 구비대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단수는 전년보다 3% 감소 추정
- 봄철 기온이 높아 2014년산 마늘종 출하시기가 평년보다 앞당겨짐. 4월은 중국 마늘종 성출하기로 4월 초 하남성 중모지역의 마늘종 출하를 시작으로 기현과 산둥성 덕주, 감숙성 미현지역의 마늘종이 북경, 천진, 하북성 등으로 출하됨.

2.2. 수출 동향

- 2013년산 마늘 재고량이 많아 중국 마늘 수출 증가세 지속
- 2014년 중국 신선마늘 2분기(4~6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3%가 많은 약 40만 톤으로 1분기 수출량과 비슷함. 수출단가는 톤당 \$794로 전년 동기보다 10% 낮으나 1분기 대비 2% 상승

표 3 중국 마늘 월별 수출 실적

월별	2013년		2014년	
	수출액(천불)	수출량(톤)	수출액(천불)	수출량(톤)
4월	110,447	103,636	103,370	127,450
5월	107,108	116,605	84,550	101,507
6월	123,348	167,169	129,574	171,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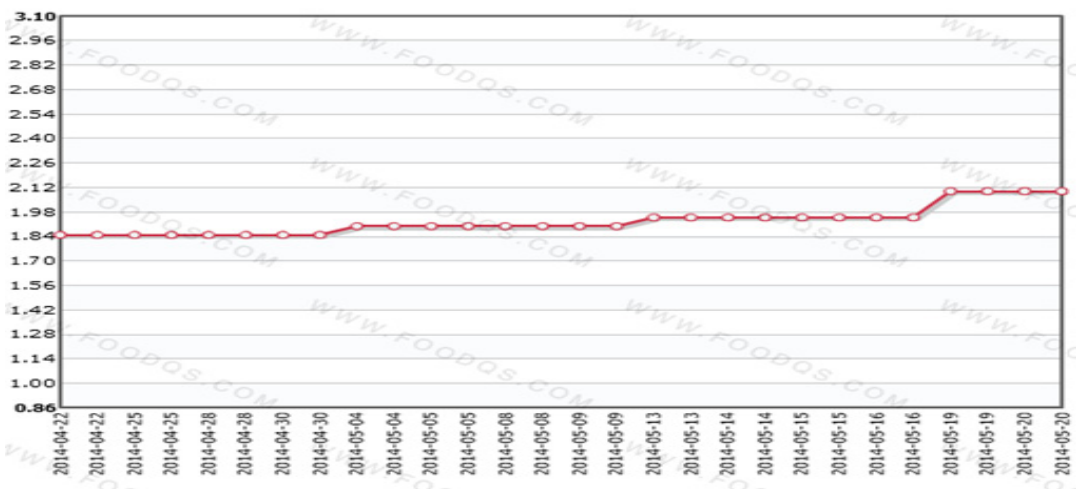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3. 가격 동향

- 2013년산 마늘 재고량이 많아 2014년 2분기 중국 마늘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낮으나 최근 가격은 상승세
 - － 2014년산 마늘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마늘 가격은 점차 상승. 3월 말 기준 마늘 도매가격은 kg당 3.6위안, 4월 말 3.7위안, 5월 말 4.2위안으로 점차 상승
 - － 4월 마늘종 출하량이 늘어 산동성 덕주지역의 마늘종 소매가격은 kg당 5.0으로 전년 동기(7.0위안)보다 낮음.
 - － 4월 말 기준, 중국산 냉동마늘 산지가격은 톤당 약 2,850위안으로 3월 말(2,750위안)보다 상승하였고, 5월 말 기준 3,000위안으로 점차 상승함.

그림 1 중국 마늘 가격 동향

단위: 위안/500g



자료: 베이징신발지(新发地)농산물도매시장.

3 양파시장 동향

3.1. 산지 동향

-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8%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양파 생산국으로 양파 주산지는 감숙성, 산둥성, 운남성 등임. 운남성 양파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며,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운남성에서 생산된 황색 양파의 품위는 좋은 편이며 생산량도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5~6월에 출하되는 산둥성 양파 재배면적은 가격하락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산둥성은 수확시기에 지속된 강우와 고온현상으로 양파 품위가 저하되어 단수는 전년보다 약 5~10%, 생산량은 약 20% 이상 감소하였음.

3.2. 수출 동향

- 2014년 2/4분기(4~6월) 중국 신선양파의 평균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4% 많은 19만 5,450톤임.
 - － 2/4분기 월별 수출량은 4월 4만 5,087톤, 5월 6만 8,117톤, 6월 8만 2,247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10%, 53%, 14% 증가하였음.
- 2014년 2/4분기 중국 신선양파의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432달러로 전년 동기(513달러)보다 16% 낮은 수준임.
- 2/4분기 대러시아 수출량은 중국 양파에 대한 수요가 많아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만 4,756톤임. 대한국 수출량은 최근 한국 내 양파 공급과잉으로 전년 동기보다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표 4 중국 양파 월별 수출실적

월별	2013년		2014년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4월	24,701	40,974	19,330	45,087
5월	24,738	44,459	31,501	68,117
6월	27,316	71,943	33,247	82,247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표 5 중국 양파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톤, 달러/톤, 천달러

수출국	2013년(4~6월)			2014년(4~6월)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일 본	55,160	625	34,467	31,016	1,111	34,467
베 트 남	26,135	411	10,740	18,170	1,278	23,226
러 시 아	21,519	382	8,216	44,756	346	15,495
태 국	9,679	367	3,556	12,347	299	3,695
한 국	24,269	564	13,677	33	303	10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3.3. 가격 동향

- 6월 말 기준, 황색양파의 톤당 수매가격은 320~400위안, 적색양파는 400~600위안 수준임.
- － 황색양파의 주산지별 수매가격은 강소성 풍현 360~400위안, 산둥성 어대 320~360위안, 산둥성 평도지역이 360~380위안 수준임. 적색양파는 강소성 풍현지역이 400~600위안 수준임.

4 대파시장 동향

4.1. 산지 동향

- 2014년 4~6월 출하되는 산동성 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기상이 양호하고 병충해 피해도 적어 단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함. 생산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6월 말 기준 지역별 출하면적은 안구시가 전년보다 2% 증가한 1,806ha, 찐즈진시는 3% 증가한 1,300ha, 효쇼진시가 2% 증가한 1,230ha
- 대파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은데다, 중국내 소비 침체로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임. 품목 전환 시 당근, 생강 등 품목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높음.

4.2. 수출 동향

- 2014년 4~6월 중국의 대한민국 대파 수출량은 건조대파가 293톤, 신선대파가 212톤, 냉동대파가 8,369톤이며 이를 신선대파로 환산한 총 수출량은 전년 동기(15,341톤)보다 17% 감소한 12,762톤임.
- 건조대파 수출량 전년 동기(372톤) 대비 21% 감소한 293톤
- 신선대파 수출량 전년 동기(2,365톤) 대비 91% 감소한 212톤
- 냉동대파 수출량 전년 동기(7,659톤) 대비 9% 증가한 8,369톤

표 6

중국산 대파의 대한민국 월별 수출실적

월별	2013년		2014년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4월	3,790	5,609	3,267	4,425
5월	3,321	5,284	2,668	3,731
6월	2,933	4,448	3,414	4,606
합계	10,044	15,341	9,349	12,762

주: 대파 수출량 합계 중 건조대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 내 대파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 대파 수출량은 감소함. 특히 신선대파 수출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 수요처가 있는 냉동대파 수출량은 소폭 증가함.

표 7 중국산 대파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출량

단위: 톤, %

월별	2013년 2/4분기			2014년 2/4분기		
	대한국 수출량 (A)	한국 총 수입량(B)	중국산 비중 (A/B)	대한국 수출량 (A)	한국 총 수입량(B)	중국산 비중 (A/B)
건조대파	5,316	5,410	98.3	4,181	4,206	99.4
신선대파	2,365	2,404	98.4	212	227	93.4
냉동대파	7,659	7,862	97.4	8,369	8,556	97.8
합계	15,341	15,676	97.9	12,762	12,989	98.3

주1: 대파 수출량 합계 중 건조대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 대파는 중국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품목임. 금년 2/4분기 한국에 수입된 대파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임.
 - － 건조대파, 냉동대파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신선대파의 경우 미안마 대파 수입이 증가하여 중국산 비중이 감소함.

4.3. 가격 동향

- 금년 2/4분기 대한민국 수출단가는 전년(0.65달러)보다 9% 상승한 kg당 0.73달러(4.5위안)이었음.
 - － 2013년 (4월) 0.68달러(4.2위안) → (5월) 0.63(3.9) → (6월) 0.66(4.0)
 - － 2014년 (4월) 0.74달러(4.6위안) → (5월) 0.72(4.5) → (6월) 0.74(4.6)으로 전년 대비 상승함.
- 한국 내 중국 신선대파의 2/4분기 판매가능가격은 kg당 1,090원 내외로 전년 동기(1,060원)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한국 내 대파가격 약세로 3/4분기 수출량은 2/4분기와 비슷할 전망이다.



정책자료

농촌개혁 심화, 식량생산 지원,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2014년 국가 정책 조치

“삼농”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국무원 판공청의 몇 가지 의견

중국의 2013년 전국 농민공 실태

농촌개혁 심화, 식량생산 지원,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2014년 국가 정책 조치

1. 식량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정책

2014년 중앙재정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곡류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주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각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그 대상을 확정짓는다. 2014년 1월, 중앙재정에서 각 성(구,시)에 미리 배분한 2014년도 식량생산 직접 보조금은 151억 위안에 달한다.

2. 농자재에 대한 종합 보조금 정책

2014년 중앙재정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이 구입, 사용하는 농자재에 대한 종합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은 동태적 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화학비료, 디젤유 등 농자재 가격 변동을 근거로 하고, “가격 보조에 대한 일괄적 계획, 동태적 조정, 감소불가(只增不减)”의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금을 마련, 보충함으로써 식량 생산 농민들이 겪는 농업 생산재 원가 상승을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2014년 1월, 중앙재정에서 각 성(구,시)에 미리 배분한 2014년도 농자재 관련 종합 보조금은 1,071억 위안에 달한다.

3.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2014년 농작물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벼, 밀, 옥수수, 목화, 그리고 동북 및 내몽고(内蒙古) 지역의 콩, 장강(长江) 유역 10개 성과 허난(河南)의 신양(信阳), 산시(陕西) 한중(汉中) 및 안강(安康) 지역의 겨울유채(冬油菜), 티베트 지역의 쌀보리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자 및 땅콩의 경우 주요 생산지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밀, 옥수수, 콩, 유채, 쌀보리의 경우 매 묘(亩)마다 1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신장 지역의 경우 밀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은 15위안이다. 벼, 목화는 매 묘당 15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1, 2등급 감자의 경우, 매 묘당 1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14년 1월 19일 공동명의로 발표한 《전면적인 농촌 개혁 심화와 농업 현대화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전문 번역하였음.

된다. 땅콩 우량종자의 경우 매 모당 5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큰 면적의 경지에서 생산(大田生产)할 경우 매 모당 1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벼, 옥수수, 유채의 경우 현금직접보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밀, 콩, 목화의 경우 현금직접보조 혹은 종자구매에 대한 차액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농민에게 편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성(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4.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정책

2014년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범위는 전과 동일하게 농·축산업이 이루어지는 전국 모든 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리적으로 정책 시행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농어민, 농장(임업장)의 직원, 농민합작사 및 농기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 생산경영주체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12개 대분류, 48개 소분류, 175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성(구, 시)에서 자체적으로 12개 대분류에 속하는 기타 품목(30개 미만)의 농기계를 중앙자금 보조금 지급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앙재정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동일한 유형, 동일한 등급의 농기계에 대해 성 관할구역 내에서 균일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착유기, 건조기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각각 12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고성능 청사료 수확기, 대형 무경운파종기, 대형 콤바인, 대형 벼 침종 및 발아 촉진 프로그램 제어기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각각 2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탕수수 수확기에 대한 보조금은 20만 위안까지 제공될 수 있으나, 광시좡족(广시壮族) 자치구의 경우 이 금액은 25만 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형 목화 수확기에 대한 보조금은 30만 위안까지 제공될 수 있으나, 신장(新疆) 웨이우얼(维吾尔)자치구 및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의 경우 이 금액은 40만 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성내 기업과 여타 지역에 속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차별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농기계를 이용한 심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시범사업도 전개한다.

5.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시범실시 정책

2014년에도 산시(山西),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산둥(山东), 허난, 신장, Ningbo(宁波), 칭다오(青岛), 신장생산건설병단, 헤이룽장(헤이룽장)성의 농지개간사업 총국(农垦总局)에서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시범지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실시되고 있다. 폐기되는 농기계의 종류는 이미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기구(农业机械安全监理机构)에 폐기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폐기 기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폐기 연한을 이미 초과한 트랙터 및 콤바인이 주를 이룬다.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폐기되는 트랙터와 콤바인의 기계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트랙터의 경우 마력에 따라 보조금이 500만 위안에어 1.1만 위안까지 달라질 수 있다. 콤바인의 경우, 수확행수(收割行数)에 따라 보조금이 3,000위안에서 1.8만 위안까지 달라질 수 있다.

6. 곡류작물 등 주요 농산물,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 주요 생산지 등에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중국 정부는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및 농민합작사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및 농민합작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도급된 토지가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려, 지원하고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모델을 발전시킨다. 특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가족농장 등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인증 기준, 등기 방법, 지원 정책 등을 보다 명확히 한다. 소형 가족농장 관련 통계 및 소형 가족농장 경영자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탐색, 추진하도록 한다. 관련 부처는 인센티브, 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소형 가족농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7.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를 높이는 정책

식량 생산에 대한 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곡류작물의 생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곡류작물 주요 생산지에 대한 최저수매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곡류작물의 최저수매가를 적절히 제고하였다. 2014년에 생산되는 밀(3등급)의 최저수매가는 50kg당 118 위안으로, 이는 2013년에 비해 6위안(5.4%) 증가한 것이다. 2014년 생산되는 조생 인디카벼(3등급, 이하 동일), 만생 인디카벼, 메벼(자포니카)의 최저수매가는 각각 50kg당 135위안, 138위안, 155위안으로, 이는 2013년에 비해 각각 3위안(2.3%), 3위안(2.2%), 5위안(3.3%) 증가한 것이다. 한편 옥수수, 유채씨, 설타에 대해서는 임시저장(临时收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8. 곡류 및 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한 장려정책

곡류 및 유지류 생산량이 많은 현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 정부의 농업 중시 및 식량 확보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기 위해서, 중앙재정에서는 2005년 곡류 및 유지류 생산량이 많은 주요 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출시하였다. 2013년 중앙재정은 곡류 및 유지류 생산량이 많은 현에 대한 보조금을 320억 위안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법은 최근 전국 각 현급 행정단위의 곡류작물 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보조금 규모를 추산한 후 해당 현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

정규 식량생산대현(常规产粮大县)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006~2010년 사이의 곡류작물 평균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이며 최종 생산량에서 자체적 식량, 사료용, 종자용 등을 빼고 계산된 상품식량이 5천 톤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상술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식량 생산지역의 생산량 혹은

상품량이 상위 15위 안에 들 때, 그리고 주요 식량 생산지역이 아닌 지역의 생산량 혹은 상품량이 상위 5위 안에 들 때는 정규 식량생산대현으로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술한 이 두 기준 이외에 개별 성에서 발전 잠재력이 크고, 현지 식량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판단되는 1개 현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정규 식량생산대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기초로 하여, 중앙재정은 2006~2010년 사이의 평균 곡류작물 생산량 및 상품식량이 각각 전국 상위 100위에 속하는 생산대현을 슈퍼 식량생산대현(超级产粮大县)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자금은 전과 동일하게 인자분석접근법(因素法)을 통해 배분하는데 이 때 곡물의 상품량, 생산량 및 파종면적에 대해 각각 60%, 20%, 20%의 가중치를 둔다. 정규 식량생산대현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과 성급 재력 상황을 연계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센티브 계수를 적용하도록 한다. 주요 식량생산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은 중앙재정에서 추산한 후 개별 현으로 분배하는데, 이 때 정규 식량생산대현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기준은 500~8,000만 위안이다. 인센티브는 일반성 이전지급의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금 인민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슈퍼 식량생산대현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곡류작물의 생산 및 산업발전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주요 식량생산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재정은 13개 곡류작물 주요 생산지역 중 상위 5위에 속하는 주요 식량 생산성(省)에 대해 중점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성급 재정에서 해당 지역 내 곡류작물의 생산 및 산업발전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유지류 생산대현에 대한 인센티브는 성급 인민정부가 “주요 품종을 부각시키고, 주요 현(시)을 지원한다(突出重点品种、奖励重点县)”는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중앙재정은 2008~2010년 사이 성별 유지작물(일반 유지작물, 콩, 목화씨, 동백씨 포함)의 생산량 및 유지비율을 근거로 하여 각 성(구, 시)별 평균 유지 생산량을 추산한 후, 이를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유채씨의 인센티브 증가계수는 20%이며, 콩은 이미 주요 식량 생산현 인센티브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더해 추가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현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자금은 100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이 인센티브 자금은 모두 유지작물의 생산 및 산업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

2014년 중앙재정은 곡류 및 유지류 생산대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9. 돼지 사육대현에 대한 장려정책

돼지 사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동원하기 위해 2013년 중앙재정은 총 35억 위안의 장려금을 마련하였다. 이는 모두 돼지 생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구체적으로는 규모화된 돼지 사육농가의 축사 개조, 우량종의 도입, 분뇨 처리 비용 및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방역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장려금은 “생산을 유도하고, 보다 많이 선정, 장려하고(多调多奖), 현으로 직접 자금을 지급하며, 양돈 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되 돼지의 전출량, 출하량 및 사육두수에 대해 각각 50%, 25%, 25%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한다. 2014년 중앙재정은 돼지

주요 전출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0. 농산물 목표 가격 정책

2014년 중국 정부는 시장 가격 결정 원칙을 견지하며,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정부 보조금 사이의 연결을 끊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목표 가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시장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때는 가격 차이만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에는 동북부 지역 및 내몽고의 콩, 신장의 목화에 대해서 목표 가격 보조금 제도를 시범실시하며, 곡류작물, 돼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목표 가격 관련 보험에 대해서도 시범실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곡류작물 생산 관련 규모화 경영활동에 대한 대출 역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11. 농업 재해예방을 통한 생산 안정화 및 생산 증가를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보조금 정책

2013년 중앙재정은 농업 재해예방을 통한 생산 안정화 및 생산 증가를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보조금 60.5억 위안을 마련하고, 주요 생산지역에서 밀의 “일본삼방(一噴三防)”¹⁷⁾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용 비닐막 보급 등 밭 농사 관련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동북부의 추곡(秋糧) 및 남부의 벼에 대해서는 종합 시비를 통한 성장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남부의 고온건조 및 농경지 침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생산 회복을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고, 농작물 병충해 관련 통합적 예방 및 대책방안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지역성이 두드러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즉각적으로 만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2014년에도 중앙재정은 관련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 효과가 뛰어난 주요 기술에 대한 보조금 정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 곡류, 면화, 유지류, 설탕 등 4대 작물의 생산량 제고 지원 정책

2013년 중앙재정은 특별자금 20억 위안을 마련하여 전국 12,500만 모에 달하는 시범구역(示范片)을 구축하는 동시에, 5개 성, 81개 현(시), 600개 향(진)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를 통한 생산량 제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4년에도 20억 위안의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곡류, 면화, 유지류, 설탕 등 4대 작물의 생산량 제고를 지원하고, 제도 정비를 통한 생산량 제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곡류작물 생산 확대 모델 상의 난관을 극복하고 있으며, 지역성을 갖춘 표준화된 생산성 증대 기술 모델을 널리 보급하고, 이를 여타 지역으로 파급시킴으로써 여타 지역에서도 균등한 생산

17) 살충제, 살균제, 품질개량제, 화학비료 등을 혼합하여 한 번 살포(一噴)로 병충해 방제(防病虫害), 건조 열풍 피해 예방(防干热风), 쓰러짐 방지(防倒伏) 등을 꾀하는 재배기술

량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3. 원예작물 표준원의 창설 지원 정책

2014년에도 원예작물 표준원(标准园) 창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 기준 자금 규모의 70%가 이미 지방으로 교부되었다. 채소, 과일, 찻잎 등 다양한 표준원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원이 “원(园)”에서 “구(区)”로, 그리고 “생산”에서 “판매”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춘 지역에서 기초 조건이 우수하고 규모가 큰 표준원을 선택하여 규모화 경영, 생산 표준화, 브랜드를 이용한 판매 등을 추진하는 등 그 운용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새로 구축된 표준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 표준화 시범구(示范区)의 구축 노력을 강화한다. 북부 지역 도시의 겨울 시설채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북부, 서북부, 화북지역에서 겨울 채소 자급률이 낮고, 인구가 많으며, 산업 기초 조건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한 후, 북부 도시 겨울 시설채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때 시설 구축 기준 및 생산기술 관련 규범을 함께 제정하여, 시설 표준화 수준 및 기술 규범화 수준을 제고하고, 시설채소 규범의 과학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북부 도시 지역의 대한 겨울채소 공급 능력을 제고한다. 이와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여 시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14. 토양 성분측정에 따른 시비방법(测土配方施肥)에 대한 보조금 정책

2014년 중앙재정은 토양 성분 측정에 따른 시비방법과 관련된 특별자금 7억 위안을 마련하고, 토양 성분에 따라 배합된 복합사료 보급 및 시비 방식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토양 채취 및 성분 측정, 농경지별 비교 테스트 시범사업 등 기초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함으로써 토양 성분 측정에 따른 시비방법의 모바일 정보 서비스 시범실시 사업 및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농가와 기업의 협력 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토양 성분 측정에 따른 시비방법 관련 제도 정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배합 시비법의 실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2014년 농작물 토양 성분 측정에 따른 시비방법 관련 기술의 보급 면적은 이미 14억 묘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곡물에 대한 배합 시비방법 실시 면적은 7억 묘 이상에 달한다. 또한 1.9억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성분 측정에 따른 시비방법 관련 지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시범지역 1묘당 30위안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 토양 유기질 제고에 대한 보조금 정책

2014년 중앙재정은 8억 위안의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현물화, 자금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영주체 및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토양 개량, 지력 향상을 위한 비료 사용 기술 등을 응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동시

에, 농작물의 줄기 등 유기비료 자원의 전환 이용을 촉진시키고, 경지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도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의 줄기가 농경지에서 부식하여 비료가 되게 하는 기술, 녹비 이용 기술 및 콩에 대한 뿌리혹박테리아 접종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널리 보급한다. 이와 동시에, 남부 지역의 벼 생산지 산성화 토양 개량을 위한 비료 관련 종합기술 보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북부 지역의 곡류작물 주요 생산지의 경우 유기비료 사용, 알칼리성 토지가 심각한 지역에서의 토양 개량을 위한 비료 관련 종합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16. 재배, 번식, 보급을 모두 시행하는 종자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2014년 농업부는 관련 부처 및 위원회와 함께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재배, 번식, 보급을 모두 시행하는 종자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종자 관련 프로젝트를 통하여 재배, 번식, 보급을 모두 시행하는 종자기업들이 육종 혁신기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구조의 국가 및 성급 프로젝트 관련 기술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중점실험실 등 산업화 기술 혁신 플랫폼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자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가과학연구계획 및 기업의 상업화 육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현대적 종자산업 발전기금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금융자본이 기업의 상업화 육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과학기술 관련 자원이 기업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공익성 과학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이 국가의 예산 지출을 통해 만들어진 육종 관련 자료, 신품종, 기술 성과 등에 대해 품종권(品种权),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고, 기업 주식매입 및 장내거래 등을 통해 가격이 매겨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과학적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권익 비율을 확정하고, 우선적으로 일부 과학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과학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과학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량종자 관련 과학연구에 나타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협동의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유전물질(种质)의 개발, 품종 선별 육성 등 중요 단계에 존재하는 기술상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한다. 종자산업 관련 연구인력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기업 내 연구자들의 워크 스테이션, 박사후연구원(Post-Doc)들의 워크 스테이션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종자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위조품 제조 판매를 단속하고 지적재산권 및 특허를 보호하는 특별 캠페인을 강화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종자에 대한 생산이력제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민 및 품종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한다. 또한 종자산업의 기초적, 공익적 연구를 강화하여 기업의 상업화 육종에 대한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한다. 품종 심사결정과 관련된 녹색통로(绿色通道) 구축을 가속화하여 품종에 대한 테스트 및 심사 결정

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현행 행정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간의 봉쇄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개방된, 규칙을 갖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자산업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17. 농산물 이력추적체계(追溯体系) 구축에 대한 지원정책

최근 몇 년간, 농업부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농지개간사업 등과 관련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을 위한 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성, 시에서도 현지 생산이력추적체계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의 경험과 성과를 얻어내었다.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이력추적체계 구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국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및 검측 시스템 구축 계획(全国农产品质量安全检验检测体系建设规划)2011~2015년〉에 정식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생산이력제 구축을 위한 총 투자 규모는 4,985만 위안으로, 이 자금은 국가 농산물 품질 안전을 위한 이력추적제 관리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전국 농산물 품질 안전을 위한 이력추적제 관리 정보 시스템의 개발에 전문적으로 사용된다. 프로젝트 구축의 주된 목표는 전국적으로 “삼품일표(三品一标)”¹⁸⁾가 적용된 채소, 과일, 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및 민물고기 등 7가지 유형의 농산품에 대해 “책임주체가 서류 등록을 하고, 생산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제품의 생산이력 및 이동경로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책임을 지고, 감독관리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 농업 생산 표준화 지원 정책

2006년부터 중앙 재정은 매년 2,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마련하여 농업 생산 표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중앙재정은 2,340만 위안의 보조금을 마련하여 농업 생산 표준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전국에 걸쳐 “삼원양장(三园两场)”¹⁹⁾, “삼품일표” 집중도가 높은 현을 선정하여 농업 생산 표준화 시범현 44개를 구축하도록 한다. 보조금은 시범 품종 생산기술 규정 등의 표준에 대한 수집 및 전환, 인쇄 배포, 표준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인재 양성, 핵심 시범구의 구축, 선두적 기업 및 농민합작사의 생산 관련 문서 기록의 생성 및 브랜드 육성 등과 같은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19.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은 총 12억 위안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사육농가에서 우량 종돈 및 종우의 정액을 구입할 때, 혹은 씨반이용 숫양 및 수소를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18) 무공해농산물(无公害农产品), 녹색식품(绿色食品), 유기농산물(有机农产品) 및 농산물 지리적 표시(农产品地理标志)

19) 표준화된 과수원(果园), 채소농장(菜园), 다원(茶园) 및 축산사육장(畜禽养殖场), 수산건강양식장(水产健康养殖场)

지급되었다. 돼지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살펴보면, 수태 가능한 어미돼지 한 마리당 4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젓소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살펴보면, 홀스타인(Holstein), 저지(Jersey), 물소(奶水牛)의 경우 수태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3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기타 품종의 경우 수태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2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육우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살펴보면, 수태 가능한 암소 한 마리당 1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양의 경우, 씨받이용 수양 한 마리당 8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씨받이용 야크(牦牛)의 경우, 씨받이용 수소 한 마리당 2,0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축산업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0. 축산업 표준화 및 사육규모 확대에 대한 지원 정책

중앙재정은 2007년부터 매년 25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전역에 걸쳐 표준화된 규모화 사육이 가능한 돼지 사육농장 건설을 지원해왔다. 2008년에는 2억 위안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표준화된 규모화 사육이 가능한 젓소 사육농장 건설을 지원했으며, 2009년에는 해당 자금을 5억 위안까지, 2013년에는 무려 10.06억 위안까지 자금 규모를 확대하였다. 2012년 중앙재정은 새롭게 1억 위안의 자금을 추가하여 내몽고, 쓰촨(四川), 티베트(西藏),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신장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에 표준화된 규모화 사육이 가능한 육우 사육농장을 건설하고, 전반적인 표준화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조금은 주로 사육농장의 수로 및 전선 개조, 분뇨 처리, 방역, 착유, 품질검측 등 관련 시설 구축에 사용되었다. 2014년에도 중국 정부는 가축 가금류의 표준화된 규모화 사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1. 동물 방역 관련 보조금 정책

중국 동물방역 관련 보조금 정책은 주로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

- 1) 주요 동물 전염병의 강제 면역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 콜레라, 가성우역(티베트, 신장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에 한하여) 등의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해 강제 면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강제면역백신은 성급 정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수의 관련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사육농가에게 무료로 백신을 제공한다. 백신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 재정이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고, 사육농가는 강제면역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2) 가축 및 가금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가성우역 발병 동물 및 같은 종류의 가축, 그리고 브루셀라병, 결핵 양성반응을 보인 젓소에 대해 강제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 및 가금류가 사육농가에 끼친 손실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보조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 3) 기초 동물 방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다. 보조금은 주로 촌급 방역원이 담당하는 가축 및 가금류 강제 면역 등 기초 동물 방역사업에 대한 경비 중 인건비로 사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중앙재정은 7.8억 위안의 보조금을 투입하였다.
- 4) 사육 단계에서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연간 돼지 50마리 이상을 출하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사육 단계에서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한 마리당 8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중앙과 지방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014년에도 중앙재정은 동물 방역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2.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정책

초원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쇠고기나 양고기 등 특색 있는 축산물 공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유목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내몽고, 신장, 티베트, 칭하이, 쓰촨, 간쑤, 닝샤, 윈난(云南) 등 8개 주요 목축 지역과 신장생산건설병단을 대상으로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및 장려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축 금지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여, 생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목초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방목에 적합하지 않는 초원 지대에 대해 방목을 금지하고 정해진 축사 내에서의 사육만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정은 방목이 금지된 초원지 1묘당 매년 6위안씩의 보조금을 유목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5년을 보조금 지급 주기로 우선 확정하였다.
- 2) 두 번째로 초원과 동물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목축 금지 지역 이외의 가용 초원에 대해서는 방목 부담량을 합리적으로 사정하여, 목축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유목민에 대해 중앙재정이 초원지 1묘당 매년 1.5위안씩의 초원-축산 균형발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 3) 세 번째로 유목민에게 생산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축산업 관련 우량종자 보조금, 목초 우량종자 보조금(매년 묘당 10위안), 그리고 축산농가에게 지급되는 생산재 종합보조금(농가당 매년 500위안) 등이 포함된다. 2012년에는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정책의 실시 범위가 산시,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龙江),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등 5개 성 및 헤이룽장 농지개간사업 총국의 목축지역(牧区) 및 반목축지역(半牧区)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총 13개 성(구)의 모든 목축, 반목축 지역이 정책 실시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상기 13개 성(구)에 대해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 159.46억 위안의 보조금이 투입되었다. 2014년에도 중국 정부는 상기 13개 성(구)에 대한 초원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및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3. 낙농업 진흥을 위한 알팔파(苜蓿) 발전 정책

중국 낙농업 생산 및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부와 재정부는 2012년부터 “낙농업 진흥을 위한 알팔파 발전 행동(振兴奶业苜蓿发展行动)”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정은 매년 3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우수한 품질의 알팔파를 생산하는 시범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센터 구축은 3,000묘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1회당 180만 위안(1묘당 6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주로 알팔파 종자 우량화, 표준화 생산기술의 응용, 생산조건 및 알팔파 품질 관리 개선 등에 사용된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낙농업 진흥을 위한 알팔파 발전 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24. 수산업 디젤유 보조금 정책

수산업에 대한 유가 보조금은 당 중앙, 국무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주요 어업지원정책으로, 현재 중국의 수산업 지원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정책이다. 〈수산업 완전품 유가 보조금 특별자금 관리 잠정조치(渔业成品油价格补助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은 관련 조건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국내 해양어획, 원양어업, 내륙어획 및 수산업양식에 종사하는 어민, 그리고 모터가 달린 어선을 사용하는 어민 혹은 수산업 관련 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25.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

2013년 수산자원 보호 및 업종 전환에 대한 이전지급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은 총 4억 위안으로, 이 가운데 수산 생물 증식 및 방류 사업에 3억 600만 위안, 바다목장 시범구 구축에 9,400만 위안이 사용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26. 배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상륙안거(上岸安居) 프로젝트

중앙정부는 2013년부터 배를 집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상륙안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D급 주택 및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 2만 위안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붕괴될 위험이 있는 C급 주택에 살고 있거나, 붕괴될 위험은 없지만 면적이 협소한 주택에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7,500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배를 집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상안안거 프로젝트 보조금 대상은 장기 작업지역에 근거하여 확정되는데,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기부에 등록된 어민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어민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1) 장기간 어선(거주용 선박 및 겸용선 포함)에서 살고 있는 사람, 2) 무주택자 혹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 임시주택, 협소한 주택(1인당 면적 13㎡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현재의 도시주택보장 및 농촌주택개조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다.

배를 집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상륙안거 프로젝트의 실시 기한은 2013~2015년으로, 궁극적

인 목표는 3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를 집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이 육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배를 집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 수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2013년 중앙 예산 내에 5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장쑤, 저장, 안후이, 산둥,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광둥(广东), 광시(广西) 등 8개 성에 대해 배를 집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상륙안거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7. 해양어선 신규 교체 및 개조에 대한 보조금 정책

중국 정부는 2012년 9월부터 42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해양어선의 신규 교체 및 개조에 사용하고 있다. 어선의 신규 교체 및 개조는 어민이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연료소모가 심하고 노후화된 구식 어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어선 신규 교체 및 개조는 지역경제 사회 발전 및 해양어업 생산방식의 전환과 함께 결합하여 비교적 먼 거리의 해역에서의 조업 능력을 결정한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선박당 총 투자액의 30% 이하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선박 투자 보조금의 상한성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우선 선박을 건조하고 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선박 건조의 진행 정도에 따라 분배하여 지불한다. 단, 이 보조금은 체납금 상환이나 해외 설비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저인망(底拖网), 안강망(帆张网) 및 삼각호망(单船大型有囊灯光围网) 등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유형의 선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어선 개조 보조금 혜택을 받은 원양어선은 국내 조업으로 조업방식을 전환할 수 없다. 또한 선주가 병에 걸려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등의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어선 개조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해양어선은 10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며, 판매할 경우 국가 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이 국가에 귀속된다. 2014년에도 동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28. 국가 현대농업시범지구 건설 지원 정책

2014년에도 국가 현대농업시범지구에 대한 정책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러한 시범구들이 중국 현대농업의 선도자 및 농업개혁의 실험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2군(第二批)의 농업개혁 및 건설 시범실시 지역, 그리고 제3군(第三批)의 국가 현대농업시범지구를 인증하고, 시범사업의 범위 및 시범구의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함으로써 시범구의 주도적 역할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2) “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以奖代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입되는 자금의 통합 조정력 강화, 혁신과 그에 따른 조치, 합작조직의 발전, 주도산업의 발전 및 농민 소득 증대 등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농업개혁 및 건설 시범지구에 대해 약 1,000만 위안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3) 중앙정부가 마련한 예산 내에서 특별자금 규모를 3억 위안에서 4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시범지구 내 가물과 장마에 대비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확을 보증하는(旱涝保收) 표준 농경지 구축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4) 시범지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시범지구에서 보다 완벽한 농업 관련 융자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올 한해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시범 구 구축에 대한 대출 잔액이 300억 위안 이하가 되도록 노력한다.

29. 농촌 개혁 시험구 구축 지원 정책

당의 제18기 삼중전회는 농촌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중앙1호 문건 역시 농촌개혁시험지구 사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농촌 개혁 시험지구 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 및 요구를 철저하게 관철하여 실시하는 동시에, 제2군의 농촌 개혁 시험지구 및 실험 프로젝트, 농촌 개혁 시험지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류회의 조직 및 개최, 개혁 실험 프로젝트의 중간 평가 완성 등 세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험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사업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면서, 프로젝트의 조직 및 실행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본 시스템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농업 개혁 발전을 위해 경험을 쌓고 향후 발전 노선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30. 농산물 생산지에서의 일차가공업(初加工) 지원 정책

2013년 중앙재정은 5억 위안의 이전지급 자금을 마련하여 “우선 건축하고 후에 보상지급”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생산지에서의 일차가공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시설의 평균 공사 원가의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액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와 농민합작사가 감자 저장용 토굴, 과일과 채소의 저장창고 및 건조창고 등 3가지 유형에 속하는 19종의 농산물에 대한 일차가공 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정책의 실시 지역은 허베이, 내몽고, 랴오닝, 지린, 푸젠(福建), 허난, 후난, 쓰촨, 윈난, 산시, 간쑤, 닝샤, 신장 등 13개 성과 신장생산건설 병단 등에 포함된 총 197개의 현(시, 구, 기(旗), 단장(团场))이다. 2014년에도 농산물 생산지에서의 일차가공업에 대한 보조금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31. 녹색통로를 이용한 신선농산물 운송 정책

전국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시장공급을 추진하고 유통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료 고속도로(유료 교량 및 터널 포함)를 신선농산물 운송을 위한 “녹색통로(绿色通道)”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합법적으로 신선농산물을 적재, 운송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며, 신선농산물 운송을 위한 “녹색통로” 네트워크에 포함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녹색통로” 전용 도로를 마련하고 “녹색통로” 전용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신선농산물 운송차량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선농산물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우선 신선채소 11개 유형 내 66개 품종, 신선과일 7개 유형 내 42개 품종, 신선수산물 8개 품종, 살아있는 가축 및 가금류 3개 유형 내 11개 품종, 신선한 고기, 계란, 우유

등 7개 품종이 신선농산물에 포함되며, 감자, 고구마(자색고구마, 흰고구마, 마, 토란), 신선옥수수, 생땅콩 등도 포함된다. “합법적 농산물 적재 차량”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품종목록(鲜活农产品品种目录)〉에 포함된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혼합 적재한 차량은 신선농산물을 합법적으로 적재한 차량으로 인정된다. 목록에 포함된 신선농산물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을 혼합 적재했을 경우, 혼합 적재한 기타 농산물이 차량의 적정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혹은 화물칸 용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선농산물 적재 차량으로 인정하여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적재 초과량이 총 적재량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신선농산물 운송 차량 역시 합법적 신선농산물 적재 차량으로 인정하여 규칙을 적용한다.

32. 신선농산물 유통 단계에서의 세금 및 비용 감면 정책

물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기업의 세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소 유통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 때 “채소”란 부식으로 사용되는 초본식물과 목본식물로써 선별, 세척, 절단, 건조, 포장, 탈수, 냉장, 냉동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제품을 말한다. 각종 채소 통조림은 채소를 기초 처리한 후, 통에 담고 밀봉, 살균 혹은 무균포장을 실시하여 완성된 식품을 의미하며, 위에서 언급된 채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1월 11일 발표된 〈유통비용 인하를 통한 유통 효율성 제고 관련 종합 프로젝트 방안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降低流通费用提高流通效率综合工作方案的通知)〉(국판발(2013)5호)는 신선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걸쳐 세수 감면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소 유통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정책을 일부 신선 고기 및 계란 제품에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신선농산물 유통단계에서의 세금 및 비용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33. 농촌 메탄가스 생산 및 이용 활성화 정책

2014년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정용 메탄가스 및 규모화된 메탄가스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농민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할 경우에만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우선적으로 산간 구릉지역, 옛 공산주의 혁명 근거지, 소수민족 거주지, 변방지역, 빈곤지역 및 가스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가정용 메탄가스 개발을 추진한다. 농가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형 메탄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농민합작사, 촌 위원회 및 기업 등이 메탄가스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이 때 메탄가스 찌꺼기(沼渣), 메탄액(沼液) 이용 여부를 프로젝트 입안 심사의 주요 내용으로 삼도록 한다. 대형 메탄가스 생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새롭게 하고, 산업화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메탄가스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메탄가스를 사용한 수출을 확대한다. 공익성(농업)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연구 개발상의 여러 난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새로운 설비를 이용한 개조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메탄가스 관련 프로젝트의 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의 메탄가스 구매 서비스를 널리 보급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며, 메탄가스 관련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한다.

34. 농업자원 보호를 위한 휴양(休養生息) 시범사업 정책

국무원의 관련 계획에 따라, 현재 농업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계획(农业可持续发展规划)(2014~2020년)>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업 특수 환경 관리 종합계획(农业突出环境治理总体规划)(2014~ 2018년)>과 보조를 맞추어 보다 완벽한 농업자원 보호 정책 및 농업 생태환경 보상 메커니즘을 꾸준히 구축함으로써 농업 환경 및 생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계획 상의 농업 환경 관리 조치에는 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 1) 경지 중금속 오염에 대한 관리이다. 남부 지역의 산성 비 생산지역을 중점지역으로 하여, 농산물 내 중금속 함유량 인하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농업 기술에 대한 조치를 핵심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보조 수단으로 삼아, 오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오염된 경지에 대해서는 생산과 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범 농가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 2) 농업 비점오염원(面源污染) 관리이다. 농업 비점오염이 심각하거나 환경이 민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지역을 구축, 운용한다. 양식장, 농작물용 비닐막, 농작물의 줄기 등의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규모화된 축산농가에 대한 오염관리, 농업용 폐비닐 회수 및 재생, 농작물 줄기의 종합적 이용, 수산물 양식장에 대한 오염 관리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3) 지표수의 과도한 개발 및 지하수의 지나친 채취에 대한 관리이다. 지표수가 과도하게 개발되거나 지하수가 지나치게 채취되는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농업 절수 프로젝트 시행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물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업 환경 및 수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4) 경작지를 삼림 혹은 초원으로 환원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것이다. 25도 이상 경사진 경지, 사막화가 심각한 경지 및 15~25도의 중요 수원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경작을 금지하고, 나무 심기에 적합한 곳은 나무를 심고, 풀을 심기에 적합한 곳은 풀을 심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산, 생태, 생활의 유기적 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 5) 농업과 축산업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이미 개간한 초원에 대한 관리이다. 농업과 축산업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개간된 초원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경작을 금지하고 우수한 품질의 목초를 키움으로써 안정적인 인공 초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초원 생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도록 한다.

- 6) 동북지역의 흑토(黑土) 보호이다. 동북 지역에서 흑토층이 얇아지거나, 토양 유기질의 함량이 크게 저하된 지역에 대해, 농업 구조조정, 유기농 비료 사용 확대, 심토경기(深松耕), 비탈진 경지에 대한 보호 시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7) 습지의 회복 및 보호이다. 국가중점생태기능구(国家重点生态功能区) 및 기타 주요 습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 중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국가급 습지자연보호구, 국가습지공원 등에서 습지간척을 통해 생겨난 경지에 대해서는 모두 경작을 금지하고 습지로 환원시키도록 한다.

35. 농촌지역 주거환경 정비 정책

농촌 환경정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농촌 쓰레기 및 오수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현급 지역 농촌 쓰레기 및 오수 관리에 대해 일괄적 규칙, 일괄적 건설, 일괄적 관리를 추진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형 쓰레기 및 오수 처리 시설을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장, 추진하도록 한다. 농촌 지역의 청결 유지 제도를 마련하고, 쓰레기는 지역별로 분리수거를 통한 총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국 도농 환경위생 정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운반 거리가 비교적 짧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 쓰레기는 “가정에서 분리하고, 마을(村)에서 수집하고, 향진(乡镇)에서 운반하고, 현(县)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교통이 불편하고 운반 거리가 비교적 긴 농촌 지역의 경우, 생활 쓰레기가 근방에서 분산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촌급 오수집중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가정용 오수처리시설을 구축한다. 생태 환경 보호형 소유역(小流域)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수로에 대한 종합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대규모 사육 농장과 주민 생활지역이 과학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계의 규모화 발전을 꾀하고, 대규모 사육 농장의 분뇨 종합 관리 및 이용을 지원한다. 농민들이 농작물 줄기를 비료 및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작물 줄기를 이용한 에너지화 이용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농촌에서 죽은 동물을 안전하게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동물 사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약 포장재, 농업용 비닐 등의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폐기물 회수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농촌 환경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각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형 메탄가스 및 가정용 메탄가스 개발을 추진한다. 농촌 지역의 가정용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로의 개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축산농가 등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들의 대규모 생산 수요에 맞추어 건조장, 농기계용 천막 등 생산을 위한 공용시설을 총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 내 도로에서 농작물을 건조시키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현상을 없애도록 한다.

농촌 토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의 집약적 사용을 꾀한다. 농촌 지역 공공장소에 대한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물건을 아무데나 쌓아두고 방치하는 등의 습관을 없애는 한편, 불법 건축물

을 철거하고, 물길을 내고, 시골 지역 공공 조명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유휴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주택 및 관련 시설 등을 개조 구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공 활동장소를 마련한다.

36. 새로운 형태의 전업농(职业农民) 육성 정책

2014년 농업부는 새로운 형태의 전업농 육성 시범사업을 한 단계 더 확대하여, 시범사업 실시 현의 규모를 300개까지 확대하였다. 새로 신설된 200개의 시범사업 실시현의 경우, 현마다 2~3개의 주도산업을 선정하고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 새로운 경영주체들 가운데 선발한 리더 및 핵심농민들로 하여금 주도산업과 관련하여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생산 결정에서 최종 생 phẩm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특히 교육 훈련, 인증 관리 및 정책 지원 등 삼위일체형 제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농업 생산 및 경영자 그룹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대 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농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재를 육성하도록 한다.

37. 기초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 개혁 및 시범현 구축 정책

2014년 중앙재정은 기초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 개혁 및 구축을 위해 26억 위안의 보조금을 마련하였다. 이 보조금은 주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현의 기초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의 개혁, “포촌연호(包村联户)”²⁰⁾를 주요 형식으로 프로젝트 운영 메커니즘 및 “전문가 + 농업기술자 + 과학기술시범농가 +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는 농가(辐射带动户)”로 구성된 서비스 모델의 개선, 과학기술 시범농가 육성,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를 위한 특강규획(特岗计划)²¹⁾, 농업기술자의 재교육 사업, 농민 과학기술 실험과 관련된 시범 네트워크 구축 등에 사용되어 농업 관련 과학기술이 보다 쉽게 농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38. 양광공정(阳光工程) 정책

2014년 중국 정부는 농촌 노동자 양성을 위한 양광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농민의 종합적 자질 및 생산경영 관련 스킬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전문기술훈련, 직업기술훈련 및 시스템 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양광공정은 각 농업 주관부처에서 조직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방송통신학교(农广校), 농업기술보급기관, 농업기계화학교(农机校), 농업직업학교 및 특정 조건을 갖춘 훈련기관 등이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20) 백개의 촌을 포함시키고 만 개의 농가를 연결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包百村 联万户 促和谐 谋发展).

21) 공채를 통해 선발한 대학 졸업생을 농촌지역 의무교육 단계 학교로 파견하여 교직을 맡게 하는 정책. 〈关于实施农村义务教育阶段学校教师特岗计划的通知〉참고

39. 농촌 지역 실용인재 육성 정책

2014년 농촌 지역 실용인재 지도자 및 대학생 촌민위원회 주임(村官) 시범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농촌 지역 실용인재 양성기지를 추가적으로 선발하고, 양성기지에 총 117개의 시범 양성반(示范培训班)을 두고 전문가 특강, 참관조사, 관련 경험 교류 등의 방식을 통해 총 8,700명의 농촌 기초 조직 책임자, 농민전업합작사 책임자, 그리고 3,000명의 대학생 촌민 위원회 주임을 양성해낸다. 이와 동시에 각 성시에서 대규모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도자 및 현대농업경영자를 양성해낸다. 농촌 실용인재 양성을 위한 “중등 전문학교 학생 백만 명 양성 계획(百万中专生计划)”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육과정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학교 운영 수준을 제고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농촌 실용인재의 학력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한편, 농촌 실용인재 인증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실용인재의 인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용인재 인증과 보조금, 프로젝트, 자금 지원, 토지 이용 등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인증의 “실질적 가치(含金量)”를 제고하고,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역량을 이용하여 농촌 실용인재의 창업을 지원하고, 제3군의 “농촌 과학교육 시행촌의 걸출한 지도자 백 명(百名农业科技兴村杰出带头人)”과 제2군의 “전국 우수 농촌 실용인재 프로젝트(全国杰出农村实用人才项目)” 선발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총 50여 명의 우수 농촌 실용인재를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에게는 1인당 5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한다.

40.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 추진 정책

제18기 삼중전회에서는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이전인구를 점진적으로 도시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관련된 정책 조치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1) 호적제도 개혁을 가속화한다. 도시 지역에 통일된 호구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생활할 능력을 갖춘 상주인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민화를 실현하도록 촉진한다. 중소도시에서 호적 등록 상의 제약을 대대적으로 없애고, 중소도시의 호구 제한을 순차적으로 풀어어나가는 동시에 대도시의 호적 등록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초대형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각 지역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관할구역 내 농업이전인구가 현지 도시에서 호적을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 2)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유동인구의 거주증(居住证) 제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거주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실제 거주민들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민공 역시 도시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가 해당 도시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도

시로 이주한 농민들이 도시 주택 및 사회보장시스템에 완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촌에서 가입한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이 도시 사회보장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범화한다.

- 3) 농업이전인구가 농촌 지역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농민공이 도시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고자 할 때, 택지 및 도급받은 경지, 임야, 초원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농민공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적으로 회수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변칙적인 강제회수도 안 된다. 중국 정부는 토지승포경영권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민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농민의 택지 용익물권을 보장한다.

41. 새로운 형태의 농촌 합작금융조직 발전 관련 정책

2014년 중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관리되며, 규범화된 운영이 이루어지고, 파급효과가 큰 농민합작사 및 공급수매합작사를 발전의 기초로 삼아 농촌 합작금융조직의 육성,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농민합작사의 신용합작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금융기관 유형을 다양화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회성을 띤 농촌자금협동조합(农村资金互助组织)의 발전을 지원하며, 이러한 조직들은 반드시 회원제(社员制), 폐쇄성(封闭性)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나 대부금 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 고정수익을 지불해서도 안 된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합작금융조직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보상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농업보험 지원 정책

현재 중앙재정이 농업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품종은 옥수수, 벼, 밀, 목화, 감자, 유지작물, 당료작물, 수태 가능한 어미돼지, 젓소, 식용돼지, 천연고무, 삼림, 청보리, 티베트양, 야크 등 총 15개 품종이 있다. 농작물 보험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중서부 지역의 경우 보험료의 40%, 동부 지역의 경우 35%, 신장생산건설병단, 중앙정부 직속 개간지구, 중국식량비축북방공사(中儲粮北方公司), 중국농업발전집단공사(中国农业发展集团公司) 등 중앙기관의 경우 보험료의 65%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성급(지방)재정 역시 최소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태 가능한 어미돼지, 젓소, 식용돼지에 대한 보험과 관련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중서부 지역의 경우 보험료의 50%, 동부 지역의 경우 보험료의 40%, 중앙기관의 경우 보험료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역시 보험료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림 보험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보험료의 5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흥안령임업집단공사(大兴安岭林业集团公司)의 경우, 보험료의 9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방재정 역시 보험료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림(商品林) 보험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은 보험료의 3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흥안령임업집단공사의 경우 보험료의 55%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방재정 역시 보험료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보험 보험료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 보험 종류를 선정, 결정할 수 있다.

2014년 중국 정부는 농업보험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여, 중앙 및 성급 재정이 주요 곡류작물 보험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높임으로써 점진적으로 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벼, 밀, 옥수수 등 3대 곡류작물의 보험 지원 범위 및 리스크 보장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보험기관이 특색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보험 상품을 개발, 출시하도록 장려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장려로 보조금을 대신하는(以奖代补)”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축산물 및 삼림과 관련된 보험 범위 및 포괄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다양한 형식의 상호 협력보험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43. 촌급 공익사업 일사일의(一事一议)²²⁾ 재정 장려 보조 정책

촌급 공익사업 일사일의 재정 장려 보조는 촌민들이 일사일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장려 및 보조금 지급의 범위는 주로 농민이 직접 이익을 얻게 되는 촌내 소형 수리 시설, 촌내 도로, 경지간 도로, 환경위생 시설, 식수 조림 등 공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중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촌내 도로 경화, 마을 경관 개조 등의 공익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일사일의 재정 장려 및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주로 중앙 및 성급 정부, 혹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시, 현의 재정으로부터 마련되며, 재정 장려 및 보조금은 장려금 지급, 혹은 실물 지급을 통한 보조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재정 장려 및 보조금은 일반특혜제도(普惠制)와 특혜제도(特惠制) 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려 및 보조금 자금이 프로젝트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중앙재정은 이와 관련하여 2013년 238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에는 촌급 공익사업 재정 장려 및 보조 메커니즘을 한 단계 더 개선시키고 재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촌급 공익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44. 소형 가족농장 발전 지원 정책

소형 가족농장은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로써, 가족 구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하고, 농업경영수

22) 농업세 폐지 이후 준조세성 부담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진정부의 예산확정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 과거 수리기초시설, 도로건설, 삼림조성, 농촌종합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던 것을 농업세 폐지와 함께 금지시킨 이후, 이들 재원에 대한 농민 출자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로 향진정부의 예산편성에 농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익을 주요 수입원천이 삼는다. 또한 개별 가정에 도급된 토지를 이용하여 혹은 토지 유통을 통해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된 농업 생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화 경영 및 현대농업 발전의 위한 차세대 유망주자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2월, 농업부는 〈소형 가족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家庭农场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사업 지도, 토지 유통, 실질적인 농업 지원정책의 시행, 사회화 서비스 강화, 인재 양성 등의 측면에서 소형 가족농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소형 가족농장과 관련된 문서를 마련하고, 소형 가족농장 구축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소형 가족농장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토지 유통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 장려한다. 또한 농업 관련 건설 프로젝트, 재정 보조금, 세제 혜택, 신용대출 지원, 담보, 농업보험, 시설용지 등 관련 정책을 현실화함으로써 소형 가족농장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특정 조건을 갖춘 소형 가족농장이 시범 기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과학기술 시범 담당농가가 농업기술 보급 프로젝트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다. 소형 가족농장의 경영자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 특히 농업직업학교 졸업생, 새로운 형태의 농민 및 농촌 실용인재, 건설 및 상업에 종사하다가 귀농한 사람 등이 소형 가족농장을 창립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45. 농민합작사의 발전 지원 정책

당의 제18기 삼중전회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합작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규모화, 전문화, 현대화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정 프로젝트 자금이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사에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보조금으로 형성된 자금이 합작사 소유로 전환되어 관리,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합작사가 신용합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윤택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중앙1호 문건에서도 “전업합작, 지분제합작 등 다양한 형식의 농업합작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운용을 규범화하며,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형식의 합작사가 존재하지만 그 조직이 합작사의 기본적 원칙 및 회원에게 봉사한다는 원래의 취지에만 부합한다면, 그리고 관련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농민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형식의 합작사 모두 장려와 지원의 대상이 된다.

2013년 중앙재정은 농민합작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 18.5억 위안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현재 농촌 토지정리, 농업종합개발, 농경지 수리시설 구축, 농업기술보급 등 농업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합작사를 책임주체로 삼고 있으며, 일부 농업 관련 프로젝트에서 형성된 자산은 이미 합작사가 관리, 보호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존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외에도 농업부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산업기초가 견고하고, 경영 규모가 크며, 파급력이 크고, 신용 기록이 양호한 합작사를 선정하고, 이 합작사들이 신용합작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이 합작사들은 가입회원에 대한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은 유치하되 저축은 유치하지 않

고, 순이익은 배당하되 이자는 배당하지 않는 등 합작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용합작 시범사업 역시 산업 발전에 국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리스크에 대한 통제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6.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 발전을 위한 정책

당의 제18기 삼중전회에서는 “도급경영권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대형농장,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에게 유통되는 것으로 장려하고,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 발전을 장려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중앙1호 문건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춘 농가가 도급된 토지에 대한 경영권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장려하고, 토지 경영권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향·촌의 관련 서비스 및 관리 네트워크를 개선시킨다. 이와 함께 공상기업의 농업용지 유통 리스크에 대한 보장 제도를 탐색, 마련하고, 농업용 용지의 비농업화를 엄격히 금지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토지유통에 대해 장려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토지 유통 및 적절한 규모화 경영은 반드시 현 정세에 기반하며 모색되어야 하며, 농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심화 발전되어야 하지, 단기간의 무리한 활동은 시행해서도 안 되고,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러한 토지 유통은 도시화 추이 및 농촌 노동력의 이전 규모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농촌 과학기술의 진보 및 생산 수단의 개선 정도, 그리고 농업 사회화 서비스 수준의 제고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편 농촌 토지집체소유권이 건지되어야 하며, 농가의 도급권을 안정화하고 토지경영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하되 가정경영, 집체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 등 다양한 경영방식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규모화를 도모해야 한다. 즉, 토지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도 토지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공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 토지 생산성, 자원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기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즉, 토지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촉진하고, 유통의 규범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곡물의 규모화 생산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47. 농업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 개선 정책

2014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농업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을 완벽히 하고, 재정 지원, 세제혜택, 신용대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참여 주체가 다양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사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약식, 주문식, 위탁관리식 서비스 모델을 널리 시행한다. 정부의 서비스 구매 등의 방식을 통해 자질을 갖춘 경영성 서비스 조직이 농업 관련 공익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호 문건에 따라 중국 정부 유관 부처는 각 지역의 경험을 종합하여, 정부의 사회화 서비스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평가 기준 및 운용 방식 등을 명확

히 하고, 자질을 갖춘 경영성 서비스조직이 농업 관련 공익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48. 농촌 토지도급제 개선 정책

농촌 토지도급경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이는 수많은 농민에게 직접 결부된 이익과 관련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중시하고 있으며, 제18회 삼중전회, 중앙농촌공작회의 및 올해 중앙1호 문건 모두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18기 삼중전회에서는 “농촌 토지도급 관계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이고 변하지 않도록 유지한다. 가장 엄격한 경지 보호 제도를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도급된 토지에 대한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유통권 및 도급경영권을 통한 담보권 등을 농민에게 부여한다. 또한 농민이 도급경영권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농업 산업화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105개 현(시, 구)를 선정하여 토지도급경영권 확정 등기 증서 반포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이고 변하지 않는”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확정 등기 증서 반포 사업을 시행하면서, 3개 성을 선정하여 해당 성 전체를 시범 실시 추진 지역으로 삼았으며, 기타 성(구, 시)의 경우에도 적어도 1개 이상의 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 및 토지경영권을 통한 담보, 주식 매입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경영권 담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구체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49. 농촌 재산권 제도 개혁 추진 정책

당의 제18기 삼중전회에서는 “농민에서 더욱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 농민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주식합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농민에게 집체자산 주식 점유권, 수익권, 유상탈퇴권, 담보권, 상속권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중앙1호 문건에서도 “농촌 집체 재산권 주식합작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민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민에게 집체자산 주식 점유권, 수익권, 유상탈퇴권, 담보권, 상속권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농촌 재산권 유통을 위한 거래시장을 구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호 문서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 유관 부처는 새로운 형태의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지위, 재산권 거래, 주식의 유상탈퇴 및 담보, 상속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성, 목표와 임무, 사업의 중점, 핵심 단계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귀속이 뚜렷하고, 권한과 역할이 완전하고, 유통이 원활하며 보호가 엄격히 이루어지는 농촌 집체 재산권 제도를 마련하여, 농민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50. 농촌 및 개간지의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 개조 정책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가 개조 및 개간지의 주택 개조 정책은 중국 정부의 보장성 주택안정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항목이다.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가 개조는 2008년에 처음 시범 실시되었으며, 2012년 전국 농촌 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2014년 중국 정부는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가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조치를 보다 개선시킴으로써 수많은 농촌 빈곤층의 주거조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년에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가 약 260만 호에 대한 개조가 계획되어 있다.

붕괴될 위험이 있는 개간지의 주택 개조 사업은 2008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1년 그 실시 범위가 전국 개간지로 확대되었다. 개간 지역에 호적을 두고 있으며, 개간지역 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 개간사업 관련 직원의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까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개간지역 주택 163만 호에 대해 개조를 실시하였으며, 개간지 주택 개조 및 관련 인프라 건설에 150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4년 중국 정부는 개간지 주택 개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 개간지에 대한 주택 개조 보조금이 각각 6,500위안, 7,500위안, 9,000위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총 24만 호의 주택에 대해 개조를 시행한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개간지 주택 개조와 관련된 난방 및 급수 등 관련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데, 이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주택 1가구당 1,200위안에 달한다.

국무원의 “삼농”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관한 의견²³⁾

농촌 금융은 중국 금융체계의 주요 구성부문이며, “삼농”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농촌금융은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으며,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다양한 단계의 농촌 금융 시스템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 역시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농촌 금융은 여전히 중국 전체 금융시스템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와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會)의 정신 및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철저하게 관철하여 실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의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규모화 경영 및 도농 일체화 발전 등 새로운 추세와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촌 금융서비스의 능력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제고하여 농촌 금융과 “삼농”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1. 농촌 금융시스템의 메커니즘 개혁을 강화한다.

(1) 부문별로 금융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현(縣) 내 법인(法人) 지위를 안정화하고, 시스템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삼농”에 대한 서비스를 견지한다는 세 가지 전제 하에, 농촌소비자신용조합(农村信用社)의 개혁을 심화하고, 농촌상업은행을 적절히 편성 조직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시장주체를 양성함으로써 농업 지원의 핵심역량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소비자신용조합 관리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하고, 성급 연합농업생산협동조합(省联社)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 관리를 줄이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화로운 지도를 최적화하고, “삼농”에 대한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도록 한다. 농업발전은행 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적 시행 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정책성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성 업무의 범위 및 감독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자본금을 확충하고, 보다 완벽한 관리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촌 개발 및 농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장기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형 은행들이 농촌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삼농”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농업은행 “삼농금융사업부서”의 개혁과 관련된 시범실시를 강화하고, 상업금융의 “삼농”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 2014년 1월 3일 〈상무회의 심의통과〉 내용을 번역하였음.

발전 모델을 탐색한다. 우정저축은행(邮政储蓄银行)의 경우, 농촌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도록 장려한다. 촌진은행(村镇银行)을 육성 발전시키고 민간자본의 지주 비율을 높임으로써 “삼농”에 대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 금융 기관들은 2, 3선 중소도시까지 서비스 센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촌에 더욱 가까워지고 또 농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 인민은행(人民银行),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재정부(财政部), 농업부(农业部)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농촌 금융서비스 주체를 다양화한다. 농업 산업투자자금, 농업 사모펀드 투자자금, 농업 과학기술창업투자자금 등의 구축을 장려하고, 특히 “삼농”에 대한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삼는 금융리스크회사의 조직을 지원한다. 정부출자를 위주로 하여 삼농과 관련된 담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현금 융자성 담보기구 및 담보기금의 구축을 장려하고, 기타 융자성 담보기구들 역시 농업생산경영주체를 위해 융자 담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액대출회사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긍정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융자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용조회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관리 정책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농업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농촌합작금융의 발전을 규범화한다. 회원제(社员制), 폐쇄성, 민주적 관리 등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 및 대부금 대출 금지, 고정수익의 비지급 등을 전제로 하는 농업합작금융의 발전을 도모한다. 농민합작사(农民合作社)의 신용합작 업무를 지원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시범 실시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관리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한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합작사 및 공급판매합작사(供销合作社)를 기초로 하여 농촌합작금융조직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한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합작성 촌(村)급 융자 담보 기금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재정부, 농업부, 공급판매합작총사(供销合作总社)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농촌에 널리 이익이 되는 금융을 적극 발전시킨다.

(4) 현금 금융기관의 지점망 분포를 최적화하도록 한다. 대형 상업은행의 현금 지점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각 지점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 총량 규제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농업발전은행(农业发展银行)의 지점 분포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되 주로 중서부 지역

및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새로 지점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현 및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촌진은행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해당 은행들이 향진(乡镇)에도 지점망을 분산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재정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농촌 기초금융서비스가 전국 모든 곳에서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완전한 재정 보조금 정책, 원가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기초로 하여, 벽지 향진 지역에서도 기초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정 조건을 갖춘 행정촌에서는 금융서비스 “촌촌통(村村通)”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실시간 서비스, 셀프서비스단말기(自助服务终端) 등을 비롯하여 예금 인출, 송금, 계좌이체 서비스 및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통해 간단하고 이용이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재정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6) 금융 서비스를 통한 빈민구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정책 금융, 상업 금융 및 협동 금융의 장점들을 하나로 모아 농민공, 농촌 지역 부녀자,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이자지원 및 마이너스 대출 정책을 보다 완벽하게 하고, 농촌 빈곤지역에서 금융기관이 빈민구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 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재정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농업과 관련된 자금 투입 확대를 유도한다.

(7) 자금 원천을 다양화한다. 농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투입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농촌상업은행, 농촌 합작은행, 촌진은행 등에 대해 소액 재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삼농”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 발전 지원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금융기관에서 “삼농”과 관련된 전문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업과 관련된 자산 증권화에 대한 시범실시 사업을 전개한다. “삼농” 금융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현금 농촌상업은행 및 농촌합작사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을 적당히 인하해 주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8) 정책 지도를 강화한다. 현금 은행업 법인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이용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지의 정책을 적용하도록 한다. 상업은행에서 새로 구축한 현금 지점망의 신용대출 제공과 관련하

여 허가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감독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현금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9) 신용대출 메커니즘을 보다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한다. 농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업은행의 독자적인 농촌 관련 신용대출 계획을 장려하고, 대출 심사 및 비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성과 평가시스템을 최적화한다. 이와 동시에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삼농” 관련 신용 대출의 내재적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농촌 금융상품 및 서비스 방식을 새로 개발한다.

- (10) 농촌금융상품을 새로 개발한다. “1회성 평가(一次核定), 필요에 따른 대출(随用随贷), 잔액 통제, 전환 사용, 동태적 조정”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농가 신용대출 모델을 개발·추진하고 대출 한도액, 대출의 진척 상황 및 회수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농촌 지역에서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사슬을 이용한 금융 모델도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농촌 지역에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기관 및 신용대출공장(信贷工厂)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또한 농업용 기계 등과 관련된 금융리스업무 전개를 적극 장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농업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11) 농촌 저당 및 담보 방식을 새로 개발한다.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용한 담보대출 시범실시에 관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비준을 거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농민의 주택 재산권을 이용한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적절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삼림 소유권 담보 등기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개선하여, 삼림 소유권을 담보로 한 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농기계 설비, 각종 운송수단, 간석지에서의 양식권, 도급한 토지의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 방식을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농업과 관련된 신용대출과 농업 관련 보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관련된 보험 가입 여부를 신용공여의 기준 요소로 삼아 농업 관련 보험증권의 저당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

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농업부, 임업국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12) 서비스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 서비스 관련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알기 쉬운 계약문서를 보급하는 동시에 심사 비준 공정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규범화하도록 한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합리적인 조건이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하여 농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유지 보호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주요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13) 농촌 경영방식의 개혁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서 농업 규모화 생산 및 집약화 경영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범 실시하도록 한다. 금융 상품, 이율, 기한, 한도, 이용 과정, 리스크 통제 등의 측면에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형 가족농장, 대형농장, 농민합작사 및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 등 새로운 농업 경영주체들의 금융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농민의 재생산 확대, 소비 수준 제고, 창업 등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농업부,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14) 농업 종합생산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지정리, 농경지 수리시설 구축, 곡류·면화·유지류·설탕 등 4대 농작물의 생산성 제고, 축산업계의 표준화 사육, 수산업계의 표준화 양식, 우량종자의 생산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진보, 현대적 종자산업, 농기계 제조, 시설농업, 농산물 정밀가공 등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및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15) 농업 사회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지 도매시장, 소매시장, 창고 및 물류시설, 프랜차이즈 등 관련 서비스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공급판매합작총사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16)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지원한다. 녹색금융(绿色金融)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절수형 농업, 순

환경 농업, 그리고 생태친화형 농업의 발전을 적극 촉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농업부, 임업국,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지도록 한다.)

- (17) 신도시 발전에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모색한다. 신도시 발전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정책성 금융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 개발과 관련된 융자 방법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이전인구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6. 농업 보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 (18) 농업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 경제, 국민 생활, 국가 식량안전 등과 관련된 주요 농작물에 대한 보험, 주요 축산품에 대한 보험, 주요 “장바구니(菜篮子)” 품목에 대한 보험, 그리고 삼림에 대한 보험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또한 농가의 주택, 농기계, 시설농업, 수산업, 우량 종자 연구 및 제조와 관련된 보험 업무를 널리 보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임업국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19) 새로운 농업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주요 곡물, 돼지 및 채소 가격에 대한 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지역 특산품 관련 보험의 시범사업 추진을 장려한다. 또한 날씨지수, 농촌 소액 신용대출 보증보험 등 새로운 종류의 보험을 연구 개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임업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20)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개선시킨다. 주요 곡물 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중앙정부 및 성급 재정의 보조금 비율을 제고함으로써, 주요 생산지역의 현금 보험료 보조금 부담을 축소시키거나 없애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농업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21) 재정 지원을 받은 농업보험의 리스크 분산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주요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농업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22) 농업 보험과 관련된 기초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농업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제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재정부, 농업구, 임업국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7. 농촌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 (23) 농촌 직접융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관련 기업이 다양한 단계의 자본시장에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채(公司債), 중소기업 사모채 등을 발행하도록 장려한다. 농업 관련 기업이 중소기업 집합어음, 단기 융자권 등 비금융기업 채무융자수단의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금융기관들이 우선주와 2급 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24) 농산물 선물시장의 가격 예시(Price Discovery) 및 리스크 회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산물 선물 중新品种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산품 선물 업무를 확장하도록 한다. 상품 선물교역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며 농민합작사 등 농촌 경제조직이 선물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산물 생산경영기업이 선물시장에서 연계매매(헤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 (25) 농촌 지역의 증권선물서비스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발전시키도록 한다. 농촌 지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증권 선물 관련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고, 농촌 지역 증권 선물 서비스 모델을 구비하도록 한다. 농가, 농기업 및 농촌경제조직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인식 교육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한다.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8. 농촌 금융 인프라를 개선시킨다.

- (26) 농촌 신용 시스템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신용호(信用戶), 신용촌(信用村), 신용진(信用鎮) 구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조회 홍보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출사기, 보험사기를 비롯하여 악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도피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公安부(公安部),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7) 농촌 유통시장과 중개업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각종 교역장의 정리정돈으로 금융 리스크 근절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清理整顿各类交易场所切实防范金融风险的决定)》(국발(2011)38호)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농촌 재산권 교역시장을 건설하여 토지평가와 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중개업체를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농산품 교역시장을 세우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농업부, 재정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8) 농촌 결제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비현금성 결제수단 및 결제정산시스템을 널리 보급하고, 보다 간편한 모바일 결제수단을 안정적으로 보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결제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9) 농촌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농촌 금융 소비자의 민원제소 경로를 원활히 하고, 금융소비 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금융지식을 농촌지역, 지역사회 및 캠퍼스로 전파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금융지식 보급교육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더 많은 농민들이 리스크를 식별하고, 자기보호 의식 및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공안부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9. “삼농” 관련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30) 정부 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책 조율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동시에 목표가 뚜렷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가 엄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농촌금융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삼농”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안정적으로 향후 정책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 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세무총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31)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이 운용하는(政府引导、市场运作)” 원칙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 세수 혜택 등 각종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특히 금융

기관이 농가 소액대출, 새로운 농업경영주체 대출, 농업 및 축산업 대출 및 주요 농산물 보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은행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 송금, 계좌이체 등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적 결제업무를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양적 증대를 장려하고 보유량도 함께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대출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다. 농촌 금융 관련 세수정책을 최적화하고 농가 소액대출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마련한다. 새로 신설된 농촌 금융기관 및 기초 금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신용대출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부터 출자된 농촌 관련 신용대출 리스크 보상기금을 마련한다. 농촌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현금 은행업 법인 기관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예대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삼농”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32) 농업 관련 대출 통계 제도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어업과 관련된 대출, 농가 대출, 농촌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농민합작사의 대출 상황을 전면적,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농업과 관련된 대출 통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금융정책을 제정하고 차별화된 관리감독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33)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조치를 개선하며, 금융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삼농”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 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농업부, 세무총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34) 금융 리스크를 예방한다. 금융관리부문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리스크 식별, 모니터링, 평가, 조기경보 및 통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금융 관리감독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部际联席会议制度)를 조화롭게 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리스크 처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한다. 각 금융기관은 관련 제도를 보다 완벽히 정비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관리감독 규칙에 따라 소액대출회사, 담보회사, 전당포, 농촌자금합작조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의 사건 처리에 대해 조직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마지노선을 지키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등이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35) 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각 지방, 유관 부처 및 관련 금융기관은 국무원의 일관적인 계획에 따라 “삼농” 관련 금융서비스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연구 제정하도록 하고, 농촌 금융개혁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마다 관할 지역 내 “삼농”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 및 건의사항을 마련하여 이듬해 1월 말까지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유관 부처는 맡은 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관련 사업을 철저하게 관철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는 앞장서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각 지역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 파악함으로써 개별 정책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2013년 전국 농민공 실태²⁴⁾

1. 농민공 규모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전국의 농민공 수는 2억6,894만 명으로 전년 대비 633만 명이 증가하여 2.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 중, 이주농민공이 1억6,610만 명으로 274만 명(1.7%) 증가하였고, 현지농민공은 1억 284만 명으로 359만 명(3.6%) 증가했다. 이주농민공 가운데 호적지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1억 3,085만 명으로 124만 명(1.0%)이 증가했고, 가족 전체가 외지로 이주한 농민공은 3,525만 명으로 150만 명(4.4%)이 증가했다.

표 1 농민공 규모

단위: 만 명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민공 총수	22,542	22,978	24,223	25,278	26,261	26,894
1. 이주농민공	14,041	14,533	15,335	15,863	16,336	16,610
호적지 거주 이주농민공	11,182	11,567	12,264	12,584	12,961	13,085
전가족 이주농민공	2,859	2,966	3,071	3,279	3,375	3,525
2. 본지(현지)농민공	8,501	8,445	8,888	9,415	9,925	10,284

2. 농민공의 교육훈련과 취업

기술훈련을 받은 농민공이 32.7%로 전년대비 1.9% 포인트 증가하였다. 각 연령대별 농민공의 교육 훈련 이수 비중은 모두 상승하였다.

24) 자료 : 국가통계국(2014.05.12)

표 2 기술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농민공 비중

단위: %

지표	농업기술훈련 받음		비농업 직업기술훈련 받음		기술훈련 받음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합계	10.7	9.3	25.6	29.9	30.8	32.7
20세 이하	4.0	5.0	22.3	29.9	24.0	31.0
21-30세	6.2	5.5	31.6	34.6	34.0	35.9
31-40세	11.0	9.1	26.7	31.8	32.0	34.1
41-50세	14.9	12.7	23.1	27.8	30.5	32.1
50세 이상	14.5	12.4	16.9	21.2	25.5	25.9

56.8%의 농민공이 2차 산업에 종사하여 전년대비 0.3% 포인트 하락했으며, 42.6%의 농민공이 3차 산업에 종사하여 0.1% 포인트 증가했다. 이주농민공의 61.8%가 2차 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현지농민공의 48.6%는 3차 산업에 취업하고 있다.

표 3 2013년 업종별 농민공 종사자 수 구성

단위: %

지표	합계	이주농민공	현지농민공
제조업	31.4	35.0	27.5
건축업	22.2	23.5	20.8
도소매업	11.3	8.1	14.8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산업	6.3	4.6	8.1
숙박 및 요식업	5.9	7.0	4.7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10.6	9.4	11.9
기타업종	12.3	12.4	12.2

농민공의 지역별 취업 업종을 살펴보면, 동부지구에서는 제조업 위주로, 중부지역에서는 건축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그리고 서부지역에서는 건축업 위주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2013년 지역별, 업종별 농민공 종사자 수 구성

단위: %

지표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제조업	43.1	20.1	13.2
건축업	17.5	28.5	30.0
도소매업	10.2	12.9	13.2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산업	5.3	7.3	8.2
숙박 및 요식업	5.0	6.2	8.1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9	11.1	12.2
기타업종	9.0	13.9	15.1

83.5%의 농민공이 고용 취업을 하고 있으며 16.5%의 농민공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5 2013년 취업방식과 업종에 따른 농민공 수 구성

단위: %

지표	피고용	자영업
제조업	35.8	10.7
건축업	25.6	5.9
도소매업	5.5	39.6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산업	4.5	15.1
숙박 및 요식업	5.3	8.5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10.0	13.1
기타업종	13.3	7.1

3. 이주농민공의 이동 상황 분포

이주농민공 가운데 7,739만 명은 타성(省)으로 이동하였고 8,871만 명은 성 내에서 이동하였는데 전체 이주농민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6%와 53.4%이다. 동부지구의 이주농민공은 성 내 이동 위주이고 중부지구 이주농민공은 성 밖으로의 이동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표 6 2013년 수출지역에 따른 이주농민공 수와 구성

단위: 만 명, %

지표	인 수			구 성		
	이주농민공			이주농민공		
	전체	성 밖 이동	성 내 이동	전체	성 밖 이동	성 내 이동
합계	16,610	7,739	8,871	100.0	46.6	53.4
동부지구	4,936	882	4,054	100.0	17.9	82.1
중부지구	6,424	4,017	2,407	100.0	62.5	37.5
서부지구	5,250	2,840	2,410	100.0	54.1	45.9

동부지구에서 타성으로 유출된 농민공은 882만 명이며, 72.6%는 여전히 동부지구 성으로 이동하였다. 중부지구에서 성 밖으로 유출된 농민공은 4,017만 명이며, 89.9%가 동부지구로 이동하였다. 서부지구에서 타성으로 유출된 농민공은 2,840만 명이며, 그 중 82.7%가 동부지구로 이동하였다. 타성으로 이동한 농민공 가운데 동부지구로 이동한 농민공이 6,602만 명으로 85.3%를 차지하며 중부와 서부지구로 이동한 농민공은 1,068만 명으로 13.8%를 차지한다.

타성으로 이동한 농민공의 대다수는 대·중도시로 유입되었다. 성 내에서 이동한 농민공은 대부분 소도시(小城镇)로 유입되었다.

표 7 2013년 도시 유형에 따른 이주농민공 수와 구성

단위: 만 명, %

지표	합계	직할시	성도 (省都)	현급시 (부성급 포함)	소도시 (小城镇)	기타
이주농민공 수	16,610	1,410	3,657	5,553	5,921	69
- 타성 이동	7,739	1,115	1,749	3,064	1,742	69
- 성내 이동	8,871	295	1,908	2,489	4,179	0
이주농민공 구성	100.0	8.5	22.0	33.4	35.7	0.4
- 타성 이동	100.0	14.4	22.6	39.6	22.5	0.9
- 성내 이동	100.0	3.3	21.5	28.1	47.1	0

4. 이주농민공의 수입, 소비, 거주

이주농민공의 일인당 월평균 수입(숙식 제공 제외)은 2,609위안으로 전년대비 319위안(13.9%)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일인당 월평균 수입은 2,537위안, 건축업 2,965위안, 도·소매업 2,432위안, 교통·운수·창고·우편서비스업 3,133위안, 숙박 및 요식업 2,366위안, 주민서비스·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2,297위안이다.

일인당 월평균 생활 소비지출은 892위안으로, 전년대비 159위안 증가하여 21.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율보다도 7.8%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그중, 일인당 월 주거비 지출은 453위안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표 8 2013년 이주농민공 일인당 평균 월 생계비지출

단위: 위안, %

지표	일인당 평균 월 생계비지출		그중, 일인당 월 주거비지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892	21.7	453	27.0
직할시와 성도	972	23.4	500	25.9
현급시(부성급 포함)	911	20.2	432	34.2
소도시	807	21.5	430	21.5

이주농민공 가운데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농민공은 36.7%로 전년대비 3.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직장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농민공 비중은 전년대비 3.7% 포인트 감소하였다. 농민공의 근무지 소재도 시가 클수록 임차 방식에 의존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표 9 2013년 도시와 주거유형에 따른 이주농민공 수 구성

단위: %

지표	기숙사	공사장 가건물	생산·경영 장소	타인과 공동임차	단독임차	근무지 주택매입	항 외 근무, 귀가거주	기타
합계	28.6	11.9	5.8	18.5	18.2	0.9	13.0	3.1
직할시와 성도	30.4	14.9	5.9	21.6	20.4	0.7	3.2	3.0
현급시	33.0	10.9	5.8	20.5	19.9	0.9	6.4	2.7
소도시	23.0	10.4	5.6	13.9	14.9	1.2	27.3	3.8

고용주나 기업으로부터 무료로 숙소를 제공 받는 농민공 비중은 46.9%로 전년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고용주나 기업으로부터 주택보조금을 받는 농민공 비중은 8.2%로 전년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5. 이주농민공의 권익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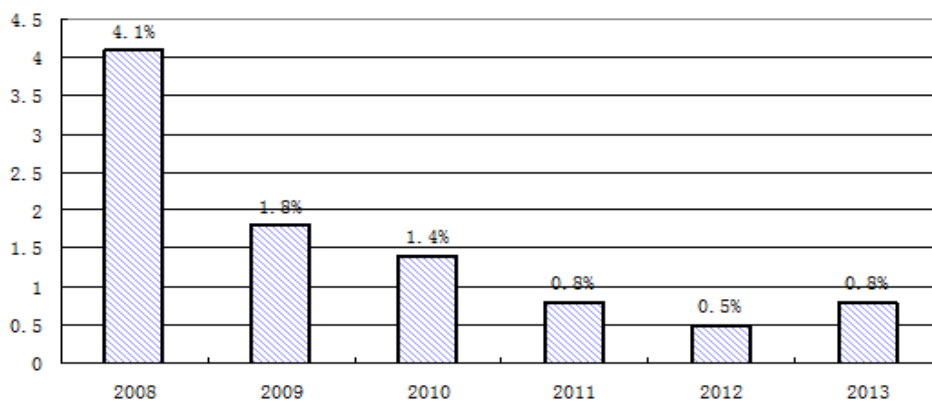
이주농민공의 평균 근무기간은 9.9개월이고 월평균 근무일수는 25.2일이며 일평균 근무시간은 8.8시간이다. 전년에 비해 시간 초과 근무 농민공의 비중이 약간 늘어났다.

표 10 이주농민공의 근무시간과 강도(强度)

지표	2012	2013
연간 이주 근무기간(월)	9.9	9.9
월평균 근무일수(일)	25.3	25.2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7	8.8
일 8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농민공 비율(%)	39.6	41.0
주 44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농민공 비율(%)	84.4	84.7

임금체불을 당한 이주농민공의 비중은 0.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림 1 이주농민공의 임금 체불 비중



고용주 또는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농민공 비중은 41.3%로 전년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그 중, 고정기한 없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농민공 비중은 3.5%포인트 감소하였고, 1년 이하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농민공 비중은 전년도와 기본적으로 같았으며,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농민공 비중은 1%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주농민공의 사회보장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중, 양로보험 참가 비중은 전년대비 1.4%포인트, 상해보험 참가 비중은 4.5%포인트,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참가 비중은 0.7%포인트, 생육보험 참가 비중은 0.5%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표 11 이주농민공의 사회보장 참가 비중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양로보험	9.8	7.6	9.5	13.9	14.3	15.7
상해보험	24.1	21.8	24.1	23.6	24.0	28.5
의료보험	13.1	12.2	14.3	16.7	16.9	17.6
실업보험	3.7	3.9	4.9	8.0	8.4	9.1
생육보험	2.0	2.4	2.9	5.6	6.1	6.6

6. 신세대농민공

1980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신세대농민공은 1억 2528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46.6%를 차지하며, 1980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농촌 취업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5%에 달한다.

표 12 2013년 신세대농민공 규모

단위: 만 명

지표	합계	이주농민공	현지농민공
신세대 농민공	12,528	10,061	2,467
구세대 농민공	14,366	6,549	7,817

□ 신세대농민공의 주요 특징

- 교육수준이 보편적으로 높다. 신세대농민공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자 문화수준 이하는 6.1%에 불과하고, 중졸 학력수준 보유자가 60.6%, 고졸 학력수준 보유자 20.5%,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및 그 이상 학력수준을 갖춘 신세대농민공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구세대농민공에 비해 19.2%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 주로 동부지역 및 대중(大中)도시에 집중 취업하고 있다. 신세대농민공의 취업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8,118만 명이 동부지역에 취업하여 전체 신세대농민공의 64.8%를 차지하며, 중부지역 취업자는 2,217만 명으로 17.7%를 그리고 서부지역은 2,155만 명으로 17.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신세대농민공의 취업 지점을 살펴보면, 현금 이상의 대도시와 중도시 취업자가 6,872만 명으로 전체 신세대농민공의 54.9%를 차지하는데, 구세대농민공의 경우 이 비중은 26%로 신세대농민공이 대도시와 중도시 취업을 더욱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 80% 이상이 외지(이주)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 외지 취업을 선택한 신세대농민공이 1억 61만 명으로 80.3%를 차지하며, 현지취업자는 19.7%인 2467만 명에 불과하다. 신세대농민공이 처음 외지로 나가는 평균 연령은 21.7세이고 구세대농민공이 첫 번째 취업을 위해 외지로 나가는 연령은 35.9세로 나타났다. 신세대와 구세대 농민공을 비교하면 신세대 농민공의 첫 외지 취업을 나가는 연령이 구세대에 비해 14.2세 낮다. 2013년 한 해 동안, 87.3%의 신세대농민공이 어떤 농업생산 노동에도 종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위주로 취업하고 있다. 신세대농민공 가운데 39%가 제조업에, 14.5%가 건축업에, 10.1%가 도·소매업에, 10%가 주민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 구세대농민공은 29.5%가 건축업에, 26.5%가 제조업에, 10.9%가 도·소매업에, 10.6%가 주민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신세대농민공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여 구세대농민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외지 취업 시 현지 소비 경향이 강하다. 외지 취업하고 있는 신세대농민공의 월평균 생계비지출은 939위안으로 구세대농민공 보다 19.3% 높다. 신세대농민공의 2013년 일인당 평균 고향 본가에 송금하거나 가져다주는 현금은 12,802위안이며, 이는 구세대농민공에 비해 29.6% 적다. 외지에 취업한 신세대농민공은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를 살펴보면, 단독 임차 또는 타인과 공동 임차 후 같이 거주하는 방식이 40.4%, 기업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방식 34.1%, 공사장 간이숙소(가건물) 거주 방식 7.3%로 각각 나타났다. 월 주택임차료 지출은 일인당 평균 567위안으로 월평균 생계비지출의 60.4%를 차지한다.

〈주〉

1.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설명

전국 농민공의 규모, 이동, 분포, 취업, 수입과 지출, 생활 및 사회보장 등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통계국이 2008년에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제도를 수립하여 농민공 수출지(배출지)에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범위는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농촌지역, 1,527개 조사현(구)에서 8,930개의 촌과 23만5,000명의 농촌노동력을 표본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한다. 가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계절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2. 주요 명칭 해석

- 농민공: 호적은 농촌에 두고 현지(本地)에서 비농산업에 종사하거나 외지로 나가 6개월 이상 취업하는 노동자를 지칭.
- 현지농민공(本地农民工): 호적소재지 향·진 지역 내에서 취업한 농민공을 지칭.
- 이주농민공(外出农民工): 호적소재지 향·진 지역 밖에서 취업한 농민공을 지칭.
- 신세대농민공(新生代农民工): 1980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농민공을 지칭.
- 구세대농민공(老一代农民工): 1980년 이전에 출생한 농민공을 지칭.
- 전 가족 이주: 농촌노동력과 가족이 원래 거주지를 떠나 호적소재지 외의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것을 지칭.
- 동부지구: 베이징,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푸젠(福建), 산둥, 광둥, 하이난(海南) 등 11개 성(省) 과 시(市).
- 중부지구: 산시(山西),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8개 성(省).
- 서부지구: 네이멍구(内蒙古), 광시(广西), 충칭(重庆), 쓰촨(四川), 구이저우(贵州), 윈난(云南), 시장(西藏), 산시(陕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신장(新疆) 등 12개 성(省) 또는 자치구(自治区).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6	28.7	3,346.9	6.0	239.2	62.4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4	11.1
2003	237.1	33.1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6	3,365.2	10.0	297.9	21.2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2	2,051.0	18.3
2008	536.6	18.7	4,402.8	12.2	374.3	-0.2	2,150.9	17.4
2009	565.2	5.3	4,809.3	11.8	414.8	10.8	2,634.3	15.7
2010	787.4	39.3	5,880.0	13.4	474.3	14.3	3,104.0	15.3
2011	1,189.4	51.1	7,432.0	16.0	572.1	20.6	3,311.8	17.3
2013	1,317.9	553.4	7,875.9	16.7	900.9	232.2	4,023.1	22.4
2014.1	80.7	-50.9	617.4	13.1	61.2	-72.3	329.8	18.6
2014.2	165.7	-7.0	1,226.1	13.5	129.6	-37.2	664.2	19.5
2014.3	286.0	20.6	1,914.3	14.9	215.8	-12.2	1,029.6	21.0
2014.4	389.0	-0.4	2,631.6	14.8	304.4	-3.9	1,399.0	21.8
2014.5	500.1	0.0	3,324.9	15.0	377.9	-5.9	1,773.0	21.3
2014.6	610.3	0.1	4,032.2	15.1	447.6	-3.2	2,136.2	21.0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8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4.3	35.2	11,471.5	20.3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4	12,185.2	22.8	11,477.4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2	-31.4	36,872.5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	3,627.1	-13.1	23,198.6	15.6	4,910.1	-43.7	41,751.8	11.8
2009	3,676.0	1.3	21,240.9	17.3	6,834.5	39.2	43,519.0	15.7
2010	4,323.2	17.6	25,787.2	16.8	6,955.3	1.8	47,177.8	14.7
2011	5,233.6	21.4	33,023.4	15.8	7,392.2	6.4	47,431.3	15.6
2012	5,294.8	183.5	33,415.7	15.8	6,985.1	-19.9	51,361.0	13.6
2013	5,739.1	233.7	34,192.7	16.8	7,707.0	40.0	52,555.0	14.7
2014.1	472.1	-79.7	2,871.2	16.4	576.0	-93.8	4,370.4	13.2
2014.2	805.8	-71.0	5,546.8	14.5	944.3	-91.8	8,679.2	10.9
2014.3	1,284.6	-47.0	8,476.1	15.2	1,527.3	-70.0	13,032.9	11.7
2014.4	1,813.3	-5.8	11,690.0	15.5	2,176.7	-18.7	17,811.0	12.2
2014.5	2,330.3	-4.1	14,695.1	15.9	2,816.9	-16.5	21,989.0	12.8
2014.6	2,871.5	0.2	17,741.4	16.2	3,514.5	-11.1	26,433.0	13.3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4.3	1,003.4	3.8	69.0	46.8	982.7	7.0
2000	59.0	29.4	1,133.5	5.2	91.6	38.3	1,133.5	8.1
2001	68.4	39.2	1,251.9	5.5	114.2	44.1	1,178.1	9.7
2002	95.6	64.0	1,374.5	7.0	126.2	64.1	1,239.2	10.2
2003	116.8	57.9	1,563.2	7.5	144.5	53.3	1,242.9	11.6
2004	151.0	91.8	1,758.5	8.6	157.4	71.2	1,258.9	12.5
2005	184.5	103.5	1,898.8	9.7	175.0	84.7	1,293.5	13.5
2006	216.4	91.3	2,008.2	10.8	172.6	70.2	1,263.9	13.7
2007	257.4	76.1	2,222.5	11.6	208.8	70.1	1,336.5	15.6
2008	268.2	78.9	2,341.2	11.5	162.9	61.0	1,236.2	13.2
2009	326.7	97.3	2,990.8	10.9	211.4	85.8	1,753.7	12.1
2010	446.6	98.8	3,721.7	12.0	269.8	72.0	2,079.2	13.0
2011	625.5	116.6	4,681.5	13.4	355.9	95.1	2,373.6	15.0
2012	654.4	115.8	4,785.6	13.7	351.8	84.8	2,338.0	15.0
2013	675.0	1,167.8	4,741.0	14.2	382.7	1,199.7	2,566.1	14.9
2014.1	50.5	50.6	399.9	12.6	25.8	42.6	208.8	12.4
2014.2	96.1	58.2	783.1	12.3	51.2	48.6	415.8	12.3
2014.3	161.4	69.8	1,210.3	13.3	85.1	56.1	644.2	13.2
2014.4	223.9	57.6	1,670.0	13.4	123.3	40.5	895.1	13.8
2014.5	282.0	56.4	2,107.8	13.4	151.3	40.0	1,143.0	13.2
2014.6	337.6	55.3	2,536.3	13.3	176.5	39.4	1,379.7	12.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8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7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64.0	63.6	6,212.7	28.4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	1,949.7	53.8	13,904.6	14.0	3,572.6	72.8	27,842.8	12.8
2009	1,702.0	46.3	11,753.6	14.5	3,017.2	44.1	25,978.5	11.6
2010	1,945.7	586.8	13,987.7	13.9	2,907.2	553.0	28,850.4	10.1
2011	2,446.8	372.9	18,201.4	13.4	3,311.5	322.5	28,826.8	11.5
2012	2,361.6	228.9	18,711.2	12.6	3,050.3	186.4	31,587.2	9.7
2013	2,747.0	190.9	19,105.8	14.4	3,698.5	160.9	31,784.3	11.6
2014.1	208.0	11.6	1,491.9	13.9	265.1	9.2	2,737.2	9.7
2014.2	364.0	17.2	3,105.9	11.7	482.4	14.0	5,617.4	8.6
2014.3	571.1	23.5	4,602.1	12.4	722.5	18.3	8,182.5	8.8
2014.4	804.0	44.3	6,357.2	12.6	1012.5	46.5	11,047.5	9.2
2014.5	1,028.2	44.1	7,948.8	12.9	1305.8	46.4	13,596.3	9.6
2014.6	1,281.3	44.6	9,614.8	13.3	1644.4	46.8	16,374.9	10.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0.7	0.4	260.0	0.3	0.4	0.3	98.9	0.4
1997	1.9	0.9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5	121.0	2.6	1.0	0.4	86.3	1.2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8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7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4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8	2.0	0.5	93.0	2.2
2008	14.5	2.7	215.1	6.7	3.4	0.9	98.3	3.5
2009	18.6	3.3	139.6	13.3	5.4	1.3	59.7	9.0
2010	23.4	40.5	146.1	16.0	3.3	10.3	59.2	5.6
2011	36.9	37.0	176.3	20.9	5.7	9.4	64.2	8.9
2012	130.5	79.0	395.2	33.0	23.5	22.3	95.5	24.6
2013	145.1	62.7	435.7	33.3	32.3	21.3	126.9	25.5
2014.1	6.1	2.2	27.4	22.3	2.0	1.1	8.2	24.4
2014.2	16.7	5.0	55.4	30.1	4.7	2.2	15.7	29.9
2014.3	31.8	8.0	93.9	33.9	8.0	3.2	25.0	32.0
2014.4	47.2	12.1	136.1	34.7	11.4	3.7	35.8	31.8
2014.5	55.7	11.1	170.2	32.7	13.5	3.6	46.2	29.2
2014.6	69.7	11.4	207.7	33.6	16.7	3.7	55.6	30.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1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2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1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2 (%)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2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3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	85.0	2.3	3,352.2	2.5	35.0	0.7	1,004.3	3.5
2009	42.2	1.1	2,485.1	1.7	15.8	0.2	956.5	1.7
2010	53.3	16.1	3,123.0	1.7	18.6	3.5	1,055.1	1.8
2011	60.3	9.2	5,071.4	1.2	20.9	2.0	1,416.8	1.5
2012	138.3	13.4	4,720.9	2.9	25.1	1.5	1,286.3	2.0
2013	141.6	9.8	4,687.7	3.0	25.8	1.1	1,208.6	2.1
2014.1	8.0	0.4	442.5	1.8	2.3	0.1	107.8	2.1
2014.2	14.8	0.7	824.5	1.8	4.5	0.1	206.3	2.2
2014.3	21.3	0.9	1,248.6	1.7	6.7	0.2	315.1	2.1
2014.4	27.4	1.5	1,713.7	1.6	9.0	0.4	431.8	2.1
2014.5	37.1	1.6	2,156.1	1.7	12.1	0.4	538.3	2.2
2014.6	50.3	1.8	2,606.2	1.9	15.6	0.4	645.9	2.4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60.2	38.6	281.5	21.4	67.6	45.9	144.9	46.7
1997	36.5	18.2	251.2	14.5	36.8	15.4	157.5	2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3	217.5	25.3
1999	49.2	33.0	268.7	18.3	73.5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4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1	17.5	166.9	18.6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5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7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0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4	25.0
2008	31.5	5.9	118.4	26.6	22.7	6.1	77.1	29.4
2009	74.3	13.1	167.7	44.3	106.2	25.6	168.7	63.0
2010	86.2	149.1	214.1	40.3	94.5	296.2	172.5	54.8
2011	62.4	62.5	266.4	23.4	55.5	91.7	187.3	29.6
2012	121.8	73.7	464.8	26.2	356.4	338.5	772.7	46.1
2013	127.4	55.1	547.9	23.3	342.8	226.1	642.8	53.3
2014.1	4.7	1.7	31.6	14.9	24.1	13.2	47.7	50.5
2014.2	11.1	3.3	76.9	14.4	56.7	26.5	114.9	49.3
2014.3	19.8	5.0	125.2	15.8	89.0	35.1	180.3	49.4
2014.4	29.6	7.6	178.5	16.6	127.0	41.7	236.9	53.6
2014.5	40.0	8.0	229.7	17.4	163.8	43.3	297.5	55.1
2014.6	50.2	8.2	281.5	17.8	192.0	42.9	350.1	54.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1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2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1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2 (%)
1996	459.1	45.8	2,635.6	17.4	552.7	26.7	9,882.4	5.6
1997	226.6	14.8	2,497.7	9.1	661.1	12.0	10,248.7	6.5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0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79.9	16.3	1,656.7	16.9	629.6	11.4	9,580.9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5.9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	587.8	16.2	2,863.6	20.5	646.0	13.2	8,880.9	7.3
2009	1,077.9	29.3	4,107.8	26.2	2,882.1	42.2	12,503.7	23.0
2010	1,228.5	370.5	5,219.1	23.5	2,915.8	554.7	12,556.7	23.2
2011	1,476.3	225.0	5,560.7	26.5	2,918.8	284.3	12,342.3	23.6
2012	1,712.2	165.9	6,009.2	28.5	3,090.1	188.9	13,658.2	22.6
2013	1,824.8	126.8	6,505.9	28.0	3,075.8	133.8	14,176.2	21.7
2014.1	151.8	8.4	549.2	27.6	213.1	7.4	1,127.4	18.9
2014.2	246.9	11.6	1,025.5	24.1	309.7	9.0	2,118.9	14.6
2014.3	407.5	16.8	1,592.5	25.6	591.3	15.0	3,384.0	17.5
2014.4	591.3	32.6	2,192.1	27.0	891.7	41.0	4,624.9	19.3
2014.5	771.0	33.1	2,789.7	27.6	1,177.9	41.8	5,848.0	20.1
2014.6	957.4	33.3	3,389.7	28.2	1,474.6	42.0	7,056.3	20.9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2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29.9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7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2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	190.3	35.5	1,448.3	13.1	160.4	42.9	585.3	27.4
2009	145.7	25.8	1,511.2	9.6	91.8	22.1	652.2	14.1
2010	231.2	400.0	1,798.2	12.9	106.7	334.5	793.0	13.5
2011	464.6	465.5	2,307.8	20.1	155.0	256.2	686.7	22.6
2012	372.3	225.4	2,362.0	15.8	126.2	119.8	708.6	17.8
2013	370.4	160.1	2,151.3	17.2	143.1	94.4	687.2	20.8
2014.1	19.3	6.9	159.0	12.1	9.3	5.1	65.1	14.3
2014.2	41.8	12.5	310.7	13.5	17.1	8.0	117.8	14.5
2014.3	73.1	18.5	485.0	15.1	33.8	13.3	180.1	18.8
2014.4	97.4	25.0	647.0	15.1	42.7	14.0	231.2	18.5
2014.5	122.4	24.5	817.2	15.0	49.3	13.0	286.4	17.2
2014.6	152.8	25.0	1,006.7	15.2	62.4	13.9	350.8	17.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6~2014.6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1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2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1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2 (%)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0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1	36.4	465.2	4.1	1,245.5	37.4
2004	910.5	37.6	2,264.2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1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	1,004.6	27.7	3,078.3	32.6	656.5	13.4	4,023.8	16.3
2009	853.8	23.2	2,894.4	29.5	919.4	13.5	4,080.3	22.5
2010	1,095.7	330.4	3,457.2	31.7	1,113.8	211.9	4,715.6	23.6
2011	1,250.2	190.6	4,189.9	29.8	1,140.9	111.1	4,845.4	23.5
2012	1,082.8	190.6	3,974.4	27.2	819.6	50.1	4,829.3	17.0
2013	1,025.7	71.3	3,893.3	26.3	907.0	39.5	5,386.0	16.8
2014.1	104.3	5.8	387.3	26.9	95.5	3.3	398.1	24.0
2014.2	180.7	8.5	681.0	26.5	147.8	4.3	736.6	20.1
2014.3	284.7	11.7	1,031.8	27.6	206.9	5.3	1,151.3	18.0
2014.4	390.5	21.5	1,427.0	27.4	263.5	12.1	1,706.7	15.4
2014.5	493.9	21.2	1,800.5	27.4	321.0	11.4	2,006.3	16.0
2014.6	582.4	20.3	2,130.7	27.3	378.0	10.8	2,355.9	16.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12.1~2014.6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12. 1	198.7	106.9	105.4	200.4	107.8	106.5
2	201.3	105.7	101.3	203.3	106.5	101.5
3	203.3	109.5	101	205.7	111.1	101.2
4	199.9	109.9	98.3	201.2	111.5	97.8
5	199.9	110.2	100	201.1	111.9	100
6	192.8	102.1	96.5	192.5	102.1	95.7
7	191.8	99.1	99.5	191.2	98.5	99.3
8	202.4	103.7	105.5	203.5	103.8	106.4
9	196.9	99.3	97.3	196.7	98.5	96.7
10	186.6	97.7	94.8	184.2	96.5	93.6
11	185	100.3	99.1	182.4	99.7	99
12	196.2	104	106	195.7	104.1	107.3
2013. 1	208.9	105.2	106.5	210.8	105.2	107.7
2	212.6	105.6	101.7	214.9	105.7	101.9
3	197.1	96.9	92.7	196.2	95.4	91.3
4	203	101.6	103	203.4	101.1	103.7
5	199.1	99.6	98.1	198.8	98.8	97.7
6	199.7	103.6	100.3	200	103.9	100.6
7	203.2	106	101.8	204.5	107	102.2
8	209.6	103.5	103.1	212.4	104.4	103.9
9	210.4	106.9	100.4	213.0	108.3	100.3
10	204.6	109.6	97.2	206.0	111.8	96.7
11	199.1	107.6	97.3	199.4	109.3	96.8
12	198.7	101.3	99.8	198.9	101.6	99.7
2014. 1	206.5	98.8	103.9	208.3	98.8	104.7
2	210.3	98.9	101.8	213.0	99.1	102.2
3	206.2	104.6	98.1	208.3	99.4	97.1
4	201.2	99.1	97.6	202.3	99.4	97.1
5	202	101.5	100.4	203.4	102.3	100.5
6	202.7	101.5	100.3	204.2	102.1	100.4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4년 1~3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 2	203.6	204.9	2.25	207.6	209.8
1. 3	203.1	204.2	2.26	208.2	210.5
1. 6	201.9	202.7	2.27	207.6	209.9
1. 7	204.1	205.3	3. 3	207.5	209.8
1. 8	204.6	206.2	3. 4	208.3	210.6
1. 9	205.0	206.4	3. 5	208.1	210.4
1.10	205.3	206.9	3. 6	208.4	210.8
1.14	205.2	206.6	3. 7	207.6	209.8
1.15	204.8	206.6	3.10	207.5	209.6
1.16	205.4	207.0	3.11	207.4	209.7
1.17	204.7	206.2	3.12	207.3	209.5
1.20	206.0	207.8	3.13	207.2	209.4
1.21	206.8	208.5	3.14	206.8	208.9
1.22	207.3	209.1	3.17	206.2	208.4
1.23	207.0	208.8	3.18	206.8	209.0
1.24	207.4	209.4	3.19	206.5	208.6
1.26	208.3	210.2	3.20	205.8	207.8
1.27	209.1	211.4	3.21	205.3	207.3
1.28	210.3	212.8	3.24	204.5	206.3
1.29	212.7	216.0	3.25	204.9	206.7
2. 7	212.7	216.0	3.26	204.5	206.3
2. 8	211.9	215.1	3.27	203.8	205.4
2.10	213.1	216.0	3.28	204.0	205.6
2.11	212.0	214.9	3.31	202.5	203.8
2.12	211.0	214.0			
2.13	210.3	213.3			
2.14	210.5	213.4			
2.17	208.8	211.2			
2.18	209.6	212.2			
2.19	210.3	213.1			
2.20	209.0	211.5			
2.21	209.1	211.6			
2.24	208.1	210.4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4년 4~6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4. 1	202.3	203.6	5.19	203.3	204.8
4. 2	202.5	203.8	5.20	203.1	205.6
4. 3	202.7	204.0	5.21	203.0	204.5
4. 4	201.2	202.2	5.22	202.1	203.4
4. 8	203.1	204.5	5.23	201.9	203.3
4. 9	203.4	204.8	5.26	201.5	202.7
4.10	203.3	204.6	5.27	201.1	202.2
4.11	202.4	203.6	5.28	201.6	202.8
4.14	201.9	202.9	5.29	201.0	202.0
4.15	201.5	202.4	5.30	200.8	201.8
4.16	201.7	202.7	6. 3	200.6	201.6
4.17	201.3	202.2	6. 4	201.5	202.7
4.18	201.1	202.1	6. 5	201.2	202.4
4.21	199.6	200.3	6. 6	201.1	202.3
4.22	199.6	200.4	6. 9	202.0	203.4
4.23	199.8	200.6	6.10	202.3	203.7
4.24	199.4	200.2	6.11	202.3	203.8
4.25	199.4	200.0	6.12	202.2	203.6
4.28	199.8	200.6	6.13	202.3	203.8
4.29	199.9	200.8	6.16	203.3	204.8
4.30	200.2	201.3	6.17	203.3	205.1
5. 4	201.3	202.5	6.18	202.4	203.9
5. 5	201.4	202.5	6.20	202.6	204.0
5. 6	201.2	202.4	6.23	203.4	204.8
5. 7	202.7	204.2	6.24	203.6	205.2
5. 8	203.6	205.4	6.25	203.6	205.2
5. 9	201.9	203.3	6.26	204.1	205.9
5.12	202.5	204.0	6.27	204.9	206.7
5.13	202.4	203.9	6.30	205.5	207.4
5.14	203.9	205.7			
5.15	203.1	204.8			
5.16	202.8	204.3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E 09-2014-02

중국농업동향(여름호) 제7권 제2호/통권26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7. 30.

발 행 2014. 7. 30.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E-mail: seilfocus@naver.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